



제418회국회(정기회)
제 7차 정무위원회

2025년도 국가보훈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 | | | | | |
|---|---|---|---|---|
| ■ | 일 | 반 | 회 | 계 |
| ■ | 특 | 별 | 회 | 계 |
| ■ | 기 | | | 금 |

2024. 11.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제1장 개 요	1
Ⅰ. 총 괄	1
1. 국가보훈부 소관 재정규모	1
2. 2025년도 재정운용 방향	2
Ⅱ. 세입세출예산안	4
1. 일반회계	4
가. 세입예산안	4
나. 세출예산안	5
(1) 총괄	5
(2) 인건비	6
(3) 기본경비	6
(4) 주요사업비	7
2.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23
가. 세입예산안	23
나. 세출예산안	23

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4
가. 세입예산안	24
나. 세출예산안	24
Ⅲ. 기금운용계획안	25
1. 보훈기금	25
가. 수입 운용계획안	25
나. 지출 운용계획안	26
2.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28
가. 수입 운용계획안	28
나. 지출 운용계획안	29
Ⅳ. 성과계획서	30
1. 임무와 비전	30
2. 목표 및 과제 현황	30
제2장 검토의견	33
Ⅰ. 총괄	33
1. 보훈분야 예산 확보 노력 필요: 적극적인 신규사업 발굴 및 예산 확보 노력 필요	33

2.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 성과달성률 제고 필요	45
3. 주요사업비 구조변경 필요 : 보훈단체운영 및선양활동등, 국제보훈교류협력 사업 등	51
(1) 국고보조금 연장평가를 반영한 유사사업 통합 필요	53
(2) 주요사업비 구조변경 필요 : 국제보훈교류협력사업 등	57

II. 일반회계 60

[세입] 60

1. 세입 총괄: 연례적 세입예산 과다계상 부적정	60
2. 기타경상이전수입: 수납 규모를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65

[세출] 70

1. 생활조정수당 : 생계지원금 적정 편성인원 반영 및 추계정확성 제고 필요	70
2. 고엽제환자검진 : 고엽제질병 등록 지연 방지를 위한 사업관리 적극 대응 필요	75
3.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활동 등: 성과지표 추가·변경 필요	80
4. 지방보훈회관 건립 : 연례적 집행 부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 철저 필요	84
5. 교통시설 이용지원 : 시내버스 이용 지원금 미보전액 처리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90
6. 보훈병원 진료 : 보훈병원 진료비 적정 규모 편성 필요	95
7. 위탁병원 진료 : 적정 규모 예산 편성 필요	99

8. 보철구 지급 : 보철용 차량 개조지원 사업 집행률 및 사업효과 제고 필요 ..	102
9. 제대군인의료지원 : 적정 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106
10. 현충시설 건립 : (가칭)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 사업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111
11. 현충시설 건립 : 독립의 전당 예산 2025년 집행가능성 검토 필요	121
12.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127
(1) 계속 사업과 연계한 종합추진계획 마련 필요	128
(2) 성과 측정을 위한 성과지표 설정 필요	133
13. 국립묘지 조성 : 국립연천현충원 착공 지연에 따른 적정 공사비 편성 필요	134
14. 제대군인전직지원금	140
(1) 전직지원금 인상 필요	141
(2) 추계 오류 및 형식적인 예산편성 지양 필요	148
15. 국제보훈교류협력사업 : 미래평화학술회의 사업 예산 재검토 필요	151
II.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158
1. 국가유공자 등 차량지원 : 지원 대상 감소 추이의 합리적 반영을 통한 적정 예산 편성 필요	158
III. 보훈기금	163
1. 기타재산이자외수입 : 88골프장 매각 계획 구체화 이후 매각대금 수입	

계상 필요	163
2. 국가유공자 등 노후복지지원 :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합리적 예산 책정 필요	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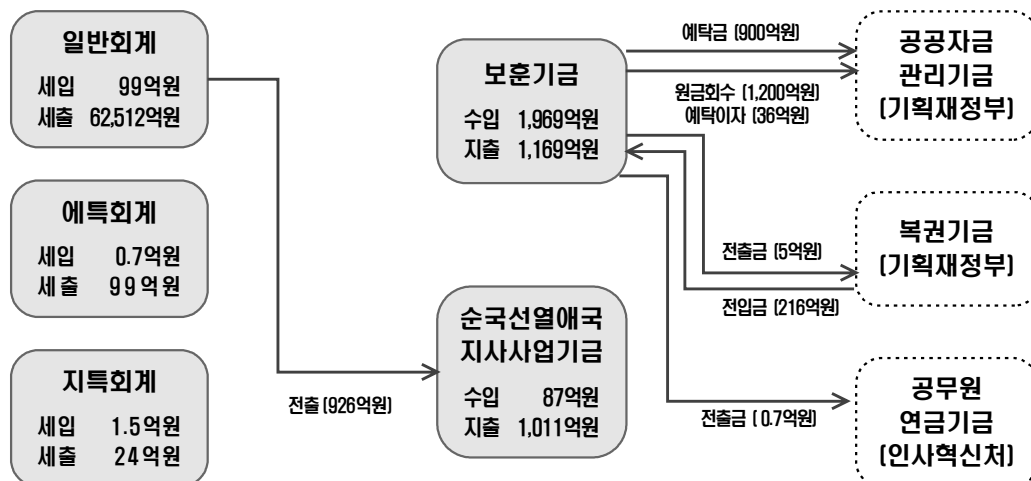
제1장 개 요

I. 총 괄

1. 국가보훈부 소관 재정규모

- 국가보훈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와 2개의 특별회계(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개의 기금(보훈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국가보훈부 소관 2025년도 재정규모를 살펴보면, 총지출 규모는 6조 4,814억원으로 2024년도 대비 1.2% 증가함.
-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6조 2,512억원,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99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4억원, 보훈기금 1,169억원,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1,011억원임.

< 총지출 6조 4,814억원 >



2. 2025년도 재정운용 방향

- 2025년도에 국가보훈부는 보훈정책의 기본방향인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실현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중점과제를 추진할 계획임.

< 2025년도 중점과제 >

- 희생·공헌에 합당한 보상 및 복지 강화
 - 보훈보상·취업(生), 요양(老), 보훈의료(病), 국립묘지 안장(死)
-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알리는 보훈문화 조성사업 추진
 - 독립·호국·민주정신을 국민적·역사적 자산으로 기억·보전
- 국가안보에 헌신한 제대군인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회복귀 지원
 - 제대군인 취·창업 역량 강화 및 존중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감사하며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보장

- 2025년도 국가보훈부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①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체계 정립으로 공정한 보훈 실현, ② 의료·복지서비스 강화로 보훈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③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존중하고 예우, ④ 제대군인과 참전군인의 명예롭고 안정적인 삶 지원, 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분을 기억하는 보훈문화 조성을 핵심전략 목표로 추진할 계획임.
- 국가보훈부 재원의 상당부분은 보훈보상금, 수당, 수시보상금 등 국가유공자의 희생·공헌에 대한 보상(80.8%)에 집중되어 있고 보훈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의료·복지서비스 강화(13.0%)를 위하여 국가

유공자의 고령화에 대응한 첨단화된 의료 인프라 구축, 고품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적정 재원을 배분하였음.

또한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존중하고 예우(2.0%)하기 위하여 정부주도 국가유공자 발굴·포상, 수요자 중심 국립묘지 안장지원 등 예우시책을 지속 추진하고, 제대군인과 참전군인의 명예롭고 안정적인 삶 지원(0.6%)을 위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 및 참전군인에 대한 각종 명예선양 사업을 추진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분을 기억하는 보훈문화를 조성(3.7%)하기 위해 국민 참여와 공감을 기반으로 하는 보훈문화 확산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임.

< 2025년도 전략목표별 자원배분 규모 >

(단위: 억원, %)

구 분	예산액	비중
☐ 전략목표Ⅰ :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체계 정립으로 공정한 보훈을 실현한다	51,305	80.8
☐ 전략목표Ⅱ : 의료·복지서비스 강화로 보훈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한다	8,239	13.0
☐ 전략목표Ⅲ :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존중하고 예우한다	1,258	2.0
☐ 전략목표Ⅳ : 제대군인과 참전군인의 명예롭고 안정적인 삶을 지원한다	382	0.6
☐ 전략목표Ⅴ :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분을 기억하는 보훈문화를 조성한다	2,346	3.7
합 계	63,530	100

Ⅱ. 세입세출예산안

1.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안

-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0.1% 증가한 98억 6,100만원이 편성됨.
-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재산수입은 국립묘지 구내식당 임대료 등으로 2024년과 동일한 6억 7,000만원이고, 경상이전수입은 보상금 과오급금 회수금 등으로 2024년과 동일한 87억 9,100만원이며, 채화 및 용역 판매 수입은 기념관 주차장 수입 등으로 2024년 대비 2.8% 증가한 3억 6,500만원이며, 관유물 매각대는 차량 매각대 등으로 2024년과 동일한 3,500만원이 편성됨.

<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합 계	9,851	9,861	10	0.1
□ 재산수입	670	670	-	-
- 토지대여료	65	65	-	-
- 건물대여료	94	94	-	-
- 기타재산이자수입	511	511	-	-
□ 경상이전수입	8,791	8,791	-	-
- 과태료	88	88	-	-
- 변상금	23	23	-	-

구 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 위약금	28	28	-	-
- 기타경상이전수입	8,652	8,652	-	-
□ 재화 및 용역 판매 수입	355	365	10	2.8
- 면허료 및 수수료	3	3	-	-
- 기타잡수입	352	362	10	2.8
□ 관유물 매각대	35	35	-	-
- 기타고정자산매각대	35	35	-	-

나. 세출예산안

(1) 총괄

-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 예산 대비 1.4% 증가한 6조 3,438억 1,800만원이 편성됨.

<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합 계	6,256,190	6,343,818	87,628	1.4
□ 국가보훈부 운영	6,163,539	6,251,235	87,696	1.4
- 인건비	98,008	106,652	8,644	8.8
- 기본경비	12,115	12,405	290	2.4
- 주요사업비	6,053,416	6,132,178	78,762	1.3
□ 내부거래(기금전출)	92,651	92,583	△68	△0.1

※ 총계기준

- 2025년도 국가보훈부 운영 예산안은 내부거래를 제외한 6조 2,512억 3,500만원으로,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2024년 대비 각각 86억 4,400만원(8.8%), 2억 9,000만원(2.4%) 증가하였고, 사업비는 787억 6,200만원(1.3%) 증액 편성되었으며, 내부거래 예산안은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등 지급을 위한 기금전출 예산으로 2024년 대비 6,800만원(△0.1%) 감액 편성되었음.

(2) 인건비

- 2025년도 국가보훈부 소관 인건비 예산안은 2024년 예산 대비 86억 4,400만원(8.8%) 증가한 1,066억 5,200만원이 편성됨.
이는 본부 및 소속기관(보훈심사위원회,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5개 지방보훈청, 21개 보훈지청, 12개 국립묘지) 공무원 등 인건비임.

< 2025년도 인건비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합 계	98,008	106,652	8,644	8.8
□ 보수(110-01)	94,877	103,123	8,246	8.7
□ 기타직보수(110-02)	2,372	2,718	346	14.6
□ 연가보상비(110-05)	759	811	52	6.9

(3) 기본경비

- 2025년도 국가보훈부 소관 기관운영 기본경비 예산안은 2024년 예산 대비 2억 9,000만원(2.4%) 증가한 124억 500만원이 편성됨.

< 2025년도 기본경비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합 계	12,115	12,405	290	2.4
□ 인건비(110)	189	184	△5	△2.6
□ 운영비(210)	9,356	9,157	△199	△2.1
□ 여비(220)	1,266	1,656	390	30.8
□ 업무추진비(240)	397	487	90	22.7
□ 직무수행경비(250)	793	812	19	2.4
□ 보전금(310)	31	29	△2	△6.5
□ 민간이전(320)	65	65	-	-
□ 유형자산(430)	18	15	△3	△16.7

(4) 주요사업비

-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편성된 주요사업비 예산안은 2024년 예산 대비 787억 6,200만원(1.3%) 증가한 6조 1,321억 7,800만원이 편성됨.

< 2025년도 주요사업비 프로그램별 총괄표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 사업비	6,053,416	6,132,178	78,762	1.3
○ 보훈심사및보상	5,025,545	5,117,384	91,839	1.8
○ 보훈단체지원	38,870	36,281	△2,589	△6.7
○ 보훈의료복지	676,108	671,765	△4,343	△0.6
○ 생활안정지원	29,002	28,952	△50	△0.2

구 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 보훈문화	98,563	97,332	△1,231	△1.2
○ 보훈예우및국립묘지	106,389	125,773	19,384	18.2
○ 제대군인지원	59,188	35,460	△23,728	△40.1
○ 보훈행정	19,751	19,231	△520	△2.6

□ 보훈심사및보상(1100)

- 보훈심사및보상 사업은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수당·수시보상금과 같은 보훈급여금과 등록·신체검사 등을 추진하는 사업 등으로, 2024년 대비 1.8% 증가한 5조 1,173억 8,4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가장 비중이 큰 보상금은 물가상승률 등 사회경제 지표를 감안 5.0% 인상하고, 상이7급 보상은 격차 해소를 위해 추가 2.0% 인상하여 2024년 대비 3.2% 증가한 3조 5,807억 2,300만원이 편성됨.
- 상시·수시개호가 필요한 중상이자 지원을 위한 간호수당은 단가를 5.0% 인상하고 인원 감소분(△6.0%)을 반영하여 2024년 대비 1.0% 감소한 545억 1,300만원임.
- 생계곤란 국가유공자(유족) 등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은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생계지원금 인원 감소분(64.5%)을 반영하여 2024년 대비 5.3% 감소한 847억 5,400만원임.

- 6·25자녀수당은 보상금 인상률과 연계, 단가를 5.0% 인상하고, 신규승계 유자녀는 격차 해소를 위해 8.3%를 추가 인상 반영하여 2024년 대비 6.3% 증가한 4,286억 9,300만원임.
- 고엽제수당은 단가를 5.0% 인상하고 인원 감소분(△2.7%)을 반영하여 2024년 대비 2.1% 증가한 3,162억 6,700만원임.
- 무공영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 4·19혁명공로수당은 월 지급액을 3만원 인상하고, 각각 인원 변동분(△15.1%, △12.5%, +0.8%)을 반영하여 2024년 대비 9.9% 감소한 461억 1,700만원, 6.2% 감소한 5,869억 6,600만원, 7.8% 증가한 14억 3,800만원임.
- 유공자(유족) 사망 시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은 2024년과 동일한 96억 9,400만원이며, 의무경찰 또는 의무소방원 등이 복무 중 사망·상이 시 지급하는 재해보상금도 2024년과 동일한 1억 7,800만원임.
- 보상금 지급관리는 보상금 지급업무 효율성 제고 및 사례연구 등 경비로 2024년 대비 10.0% 감소한 9,900만원임.
- 보훈심사위원회운영은 공무원 등 인건비 인상을 반영하여 2024년 대비 1.6% 증가한 16억 3,600만원임.
- 등록관리는 IC탑재 국가보훈등록증 교체발급사업 종료 등을 감안하여 2024년 대비 50.4% 감소한 33억 3,600만원임.

- 고엽제환자 검진은 검진인원 및 집행 추이 등을 반영하여 2024년과 동일한 26억 6,700만원, 고엽제역학조사는 제7차 역학조사 3차 연도 소요를 반영하여 2024년과 동일한 3억 300만원임.

< 2025년도 보훈심사및보상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 보훈심사및보상	5,025,545	5,117,384	91,839	1.8
○ 보훈보상금	3,468,124	3,580,723	112,599	3.2
- 보상금	3,468,124	3,580,723	112,599	3.2
○ 수당	1,536,117	1,518,748	△17,369	△1.1
- 간호수당	55,045	54,513	△532	△1.0
- 생활조정수당	89,526	84,754	△4,772	△5.3
- 6·25자녀수당	403,289	428,693	25,404	6.3
- 고엽제수당	309,760	316,267	6,507	2.1
- 무공영예수당	51,170	46,117	△5,053	△9.9
- 참전명예수당	625,993	586,966	△39,027	△6.2
- 4·19혁명공로수당	1,334	1,438	104	7.8
○ 수시보상금	9,982	9,971	△11	△0.1
- 사망일시금	9,694	9,694	-	-
- 재해보상금	178	178	-	-
- 보상금지급관리	110	99	△11	△10.0
○ 보훈심사	1,620	1,636	16	1.0
- 보훈심사위원회운영	1,620	1,636	16	1.0
○ 등록심사	9,702	6,306	△3,396	△35.0
- 등록관리	6,732	3,336	△3,396	△50.4
- 고엽제환자검진	2,667	2,667	-	-
- 고엽제역학조사	303	303	-	-

□ 보훈단체지원(1200)

- 보훈단체지원 사업은 보훈단체 인건비 등 운영비 및 지방보훈회관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 등으로, 2024년 대비 6.7% 감소한 362억 8,100만원이 편성됨.
- 보훈단체운영 및 선양활동 등은 보훈단체 선양활동 사업 등을 일부 감축하여 2024년 대비 2.4% 감소한 342억 8,100만원임.
- 지방보훈회관 건립은 2024년 대비 46.7% 감소한 20억원임.

< 2025년도 보훈단체지원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 보훈단체지원	38,870	36,281	△2,589	△6.7
○ 보훈단체지원	38,870	36,281	△2,589	△6.7
- 보훈단체운영및선양활동등	35,120	34,281	△839	△2.4
- 지방보훈회관건립	3,750	2,000	△1,750	△46.7

□ 보훈의료복지(2100)

- 보훈의료복지 사업은 국가유공자 의료·요양 등 복지서비스 사업으로, 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사업 종료를 감안하여 2024년 대비 0.6% 감소한 6,717억 6,500만원이 편성됨.
- 국가유공상이자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시설 이용지원은 무인발매기 및 할인 발권 전산 연계시스템 개발이 완료되어 2024년 대비 5.3% 감소한 107억 2,900만원임.
- 보훈병원 진료는 진료실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차세대보훈병원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반영하여 2024년 대비 0.1% 증가한 3,922억 9,600만원임.
- 위탁병원 진료는 위탁병원 확대, 최근 진료실적을 감안하여 2024년 대비 2.8% 감소한 2,491억 1,300만원임.
- 보철구 지급은 2024년과 동일한 60억 2,600만원임.
- 체대군인 의료지원은 2024년과 동일한 23억 6,500만원임.
- 종합재활체육센터 관리·운영은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한 일상생활 체육지원 프로그램 다각화로 인한 경비 절감으로 2024년 대비 16.9% 감소한 26억 7,800만원임.
- 대구보훈병원 외래시설 개선은 서관동 증축 3년차 사업비를 반영하여 2024년 대비 562.8% 증가한 74억 9,000만원임.

- 보훈병원 의료환경 개선은 중앙보훈병원 및 광주보훈병원 시설확충사업 잔여 설계비를 반영하여 2024년 대비 123.4% 증가한 10억 6,800만원임.

< 2025년도 보훈의료복지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예산(A)	2025년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 보훈의료복지	676,108	671,765	△4,343	△0.6
○ 교통시설이용지원	11,329	10,729	△600	△5.3
- 교통시설이용지원	11,329	10,729	△600	△5.3
○ 의료지원	656,737	649,800	△6,937	△1.1
- 보훈병원진료	392,031	392,296	265	0.1
- 위탁병원진료	256,315	249,113	△7,202	△2.8
- 보철구지급	6,026	6,026	-	-
- 제대군인의료지원	2,365	2,365	-	-
○ 의료환경개선	8,042	11,236	3,194	39.7
- 종합재활체육시설관리운영	3,223	2,678	△545	△16.9
- 보훈병원재활센터 확충	3,211	-	△3,211	순감
- 대구보훈병원외래시설개선	1,130	7,490	6,360	562.8
- 보훈병원의료환경개선	478	1,068	590	123.4

□ 생활안정지원(2200)

- 생활안정지원은 국가유공자의 자립능력과 생활안정 향상을 위한 교육·취업 지원 사업으로, 2024년 대비 0.2% 감소한 289억 5,200만원이 편성됨.
- 보훈대상자 교육비지원 중 수업료면제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교육

지원 사업으로 학령인구 감소 등을 반영하여 2024년 대비 0.4% 감소한 248억 9,300만원이며, 학습보조비도 2024년과 동일한 12억 4,100만원임.

- 취업지원은 직업상담사 인건비 증액에 따라 2024년 대비 1.9% 증가한 28억 1,800만원임.

< 2025년도 생활안정지원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 생활안정지원	29,002	28,952	△50	△0.2
○ 교육지원	26,237	26,134	△103	△0.4
- 보훈대상자교육비지원 (수업료면제)	24,996	24,893	△103	△0.4
- 보훈대상자교육비지원 (학습보조비 등)	1,241	1,241	-	-
○ 취업지원	2,765	2,818	53	1.9
- 취업지원	2,765	2,818	53	1.9

☐ 보훈문화(3100) 및 회계기금간거래(8400)

- 보훈문화 및 회계기금간거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는 보훈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024년 대비 0.7% 감소한 1,899억 1,500만원이 편성됨.
- 독립기념관 운영 및 활성화 사업은 한국 독립운동 인명사전 발간 등 종료 사업 등을 감안하여 2024년 대비 2.5% 감소한 274억 7,900만원임.

- 보훈문화 조성은 보훈문화 확산 진흥 및 국내외사적지탐방, 보훈문화관 건립 연차소요 등을 감안하여 2024년 대비 8.5% 감소한 141억 400만원임.
- 보훈문화콘텐츠 제작 및 지원 사업은 AI 디지털 휴먼, 참여형 프로그램 사업 종료 등을 감안하여 2024년 대비 31.5% 감소한 67억 5,400만원임.
- 현충시설 건립은 용성전승관 건립 등 종료 사업은 감액하고, 독립의 전당 건립 등 연차소요를 반영하여 2024년 대비 9.5% 증가한 77억 5,800만원임.
- 현충시설 관리는 LA홍사단 본부 옛건물 리모델링 사업 연차소요 등을 반영하여 2024년 대비 41.3% 증가한 69억 4,400만원임.
- 기념관 관리운영은 백범김구기념관 등 4개 국가관리기념관의 디지털전시관 조성사업 완료 등을 감안하여 2024년 대비 49.8% 감소한 77억 8,500만원임.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운영은 집행 실소요 등 감안하여 2024년 대비 6.0% 감소한 92억 2,400만원임.
-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지원은 독도의용수비대원 및 유족 사망에 따른 인원 감소 등을 감안하여 2024년 대비 9.8% 감소한 7억 1,600만원임.
- 보훈기념행사는 정부기념행사 거행, 순직경찰·소방공무원 추모행사 등 민간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과 동일한 39억 5,400만원임.
- 호국보훈의달 행사는 소속기관 행사비 및 보훈의 상징 달기 감액 등을 반영하여 2024년 대비 10.0% 감소한 11억 3,000만원임.

- 독립운동 관련 사업 등 지원은 집행 실소요 등을 감안하여 2024년 대비 3.9% 감소한 17억 4,500만원임.
-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범국민 감사캠페인, 국민통합 문화예술축제 등 6개 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97억 3,900만원임
- 순애기금 전출금은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지급 등으로 2024년 대비 0.1% 감소한 925억 8,300만원임.

< 2025년도 보훈문화 사업 및 회계기금간거래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합 계	191,214	189,915	△1,299	△0.7
□ 보훈문화	98,563	97,332	△1,231	△1.2
○ 독립기념관	28,176	27,479	△697	△2.5
- 독립기념관운영및활성화	28,176	27,479	△697	△2.5
○ 보훈문화진흥	25,261	20,858	△4,403	△17.4
- 보훈문화조성	15,407	14,104	△1,303	△8.5
- 보훈문화콘텐츠제작및지원	9,854	6,754	△3,100	△31.5
○ 현충시설	37,307	31,711	△5,596	△15.0
- 현충시설건립	7,083	7,758	675	9.5
- 현충시설관리	4,916	6,944	2,028	41.3
- 기념관관리운영	15,493	7,785	△7,708	△49.8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운영	9,815	9,224	△591	△6.0

구 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 기념사업	7,819	17,284	9,465	121.1
- 독도의용수비대 기념사업회지원	794	716	△78	△9.8
- 보훈기념행사	3,954	3,954	-	-
- 호국보훈의달행사	1,256	1,130	△126	△10.0
- 독립운동관련사업등지원	1,815	1,745	△70	△3.9
- 광복80주년기념사업	-	9,739	9,739	순증
□ 회계기금간거래	92,651	92,583	△68	△0.1
-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 전출금	92,651	92,583	△68	△0.1

□ 보훈예우 및 국립묘지(3200)

- 보훈예우 및 국립묘지는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및 예우 지원, 12개 국립묘지 관리 및 3개 국립묘지 조성 사업 등으로, 2024년 대비 18.2% 증가한 1,257억 7,300만원이 편성됨.
- 독립유공자 등 발굴포상은 전문사료발굴분석단 처우개선 등을 반영하여 2024년 대비 2.7% 증가한 17억 9,500만원임.
- 독립유공자 등 자료수집 관리는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 관련 연구용역 종료, 이달의 독립운동가 온·오프라인 홍보 증액 등을 감안하여 2024년 대비 11.8% 감소한 26억 7,800만원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은 국가유공자 등 사망 시 마지막 예우를 다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 대비 9.7% 감소한 64억 8,400만원임.
- 국립묘지현충선양활동은 국립서울현충원 디지털 미디어월 설치 완료 등을 감안하여 2024년 대비 84.4% 감소한 9억 3,700만원임.
- 국립서울현충원은 보훈부 이관 이후 더욱 품격 있는 안장·추모 서비스 제공, 최적의 참배환경 조성 등 연차소요를 반영하여 113억 3,300만원임.
- 국립대전현충원은 후문 도로 주차장 공사 등 완료, 기와 보수공사 및 차량 차단기 설치 등을 감안하여 2024년 대비 30.4% 감소한 113억 5,200만원임.
- 민주묘지(3개소)는 5·18묘지 개선 타당성 연구용역 종료, 경상경비 감액 등을 반영하여 2024년 대비 2.6% 감소한 26억 400만원임.
- 국립호국원(6개소)은 묘역확충 마무리(영천·임실·이천)를 위한 연차사업비 및 완료(괴산·산청) 감안하여 2024년 대비 11.5% 감소한 497억 5,900만원임.
- 국립신암선열공원은 공무원 등 인건비 공통 인상을 반영하여 2024년 대비 0.6% 증가한 7억 800만원임.
- 국립묘지 조성은 연천현충원 및 황성호국원 조성 연차소요 반영하여 2024년 대비 206.2% 증가한 381억 2,300만원임.

< 2025년도 보훈예우 및 국립묘지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 보훈예우 및 국립묘지	106,389	125,773	19,384	18.2
○ 공훈발굴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11,967	10,957	△1,010	△8.4
- 독립유공자등발굴포상	1,747	1,795	48	2.7
- 독립유공자등자료수집관리	3,038	2,678	△360	△11.8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	7,182	6,484	△698	△9.7
○ 국립묘지 조성 및 관리	94,422	114,816	20,394	21.6
- 국립묘지현충선양활동	6,022	937	△5,085	△84.4
- 국립서울현충원	-	11,333	11,333	순증
- 국립대전현충원	16,320	11,352	△4,968	△30.4
- 민주묘지(3개소)	2,673	2,604	△69	△2.6
- 국립호국원(6개소)	56,251	49,759	△6,492	△11.5
- 국립신암선열공원	704	708	4	0.6
- 국립묘지조성	12,452	38,123	25,671	206.2

□ 제대군인지원(4100)

- 제대군인지원은 제대군인 취·창업지원, 국제교류협력, 참전 관련 기념사업 등으로 2024년 대비 40.1% 감소한 354억 6,000만원이 편성됨.
- 제대군인 사회복지 지원은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 감액 등 감안하여 2024년 대비 4.4% 감소한 179억 1,000만원임.

-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은 단가 인상 반영하여 2024년 대비 5.4% 증가한 73억 8,200만원임.
- 국제보훈교류협력은 국외참전시설 및 현충시설 관련 앱개발 완료, 유엔 참전국 교류사업 등 반영하여 2023년 대비 7.0% 감소한 87억 7,400만원임.
- 국제보훈교류협력 사업은 인빅터스 유치 연구용역 종료,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2024년 대비 10.0% 감소한 79억 9,100만원임.
- 참전기념행사는 참전유공자 명비 건립, 6·25전쟁 영웅 선양사업 종료를 감안하여 2024년 대비 18.7% 감소한 21억 7,700만원임.

< 2025년도 제대군인지원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 제대군인지원	59,188	35,460	△23,728	△40.1
○ 제대군인생활안정	25,748	25,292	△456	△1.8
- 제대군인사회복지지원	18,743	17,910	△833	△4.4
- 제대군인전직지원금	7,005	7,382	377	5.4
○ 참전·제대군인 명예선양	33,440	10,168	△23,272	△69.6
- 국제보훈교류협력사업	8,874	7,991	△883	△10.0
- 참전기념행사	2,677	2,177	△500	△18.7
- 월남참전유공자제복증정 (60주년계기)	21,889	-	△21,889	순감

□ 보훈행정(7100)

- 보훈행정은 청사 시설개선, 기관운영 등 일반행정, 정보화사업 등으로 2024년 대비 2.6% 감소한 192억 3,100만원이 편성됨.
- 청사 유지보수, 사무 및 민원환경 개선, 청관사 임차는 공공부문 경비 절감을 감안하여 2024년 대비 4.9% 감소한 52억 3,600만원임.
- 송무 지원은 의학자문, 패소사건 소송비용 등으로 2024년 대비 11.6% 감소한 3억 9,800만원임.
-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은 청년인턴·2030자문단 운영 등을 포함하여 2024년 대비 1.3% 증가한 15억 300만원임.
- 보훈정책개발은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3년 주기) 용역사업 완료를 감안하여 2024년 대비 38.5% 감소한 12억 7,800만원임.
- 사회복지요원 운용은 국립서울현충원 이관에 따른 사회복지요원 증원을 반영하여 2024년 대비 54.2% 증가한 8억 3,600만원임.
- 보훈정책홍보는 정책 온·오프라인 홍보비 등으로 2024년 대비 27.1% 증가한 10억 9,200만원임.
- 이동보훈팀 운영은 공무원 근로자 인건비 및 고용부담금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2024년 대비 3.1% 증가한 20억 4,400만원임.
- 보훈상담센터 운영은 공공요금, 사무용품비 등 센터 운영경비 절감 등을 감안하여 2024년 대비 9.9% 감소한 2억 3,700백만원임.

- 나라사랑신문발간은 나라사랑신문 발간 용역비, 우편료 등으로 2024년 대비 10.0% 감소한 21억 7,500만원임.
- 정보화사업은 정보시스템·전산장비 유지관리, 통합보훈정보시스템 개선을 포함하여 2024년 대비 6.2% 증가한 44억 3,200만원임.

< 2025년도 보훈행정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 보훈 행정	19,751	19,231	△520	△2.6
○ 청관사임차 및 시설개선	5,504	5,236	△268	△4.9
- 청사유지보수	1,447	1,302	△145	△10.0
- 사무및민원환경개선	835	752	△83	△9.9
- 관사임차	3,222	3,182	△40	△1.2
○ 일반행정	5,412	5,107	△305	△5.6
- 송무지원	450	398	△52	△11.6
- 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	1,483	1,503	20	1.3
- 보훈정책개발	2,078	1,278	△800	△38.5
- 사회복지무요원운용	542	836	294	54.2
- 보훈정책홍보	859	1,092	233	27.1
○ 보훈서비스지원	4,663	4,456	△207	△4.4
- 이동보훈팀운영	1,983	2,044	61	3.1
- 보훈상담센터운영	263	237	△26	△9.9
- 나라사랑신문발간	2,417	2,175	△242	△10.0
○ 정보화	4,172	4,432	260	6.2
- 정보화사업	4,172	4,432	260	6.2

2.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가. 세입예산안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주로 LPG 세금인상분 보조금 부담사용에 따른 국고보조금 환수금으로, 2025년도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024년과 동일한 6,700만원이 편성됨.

< 2025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합 계	67	67	-	-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28	28	-	-
- 기타재산이자외수입	28	28	-	-
○ 기타경상이전수입	39	39	-	-
- 기타경상이전수입	39	39	-	-

나. 세출예산안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는 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 LPG감면, 친환경차량 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4년 대비 25.7% 감소한 98억 5,400만원임.

< 2025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예산(B)	2025년 예산안(A)	증감 (B-A)	증감률 (B-A)/A
국가유공자등차량지원	13,259	9,854	△3,405	△25.7

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가. 세입예산안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국고보조금 정산 반환금으로 2024년 대비 41.3% 증가한 1억 5,400만원이 편성됨.

< 2025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 기타경상이전수입	109	154	45	41.3
- 기타경상이전수입	109	154	45	41.3

나. 세출예산안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운영비로 인건비 증액 등을 감안하여 2024년 대비 3.0% 증가한 23억 8,400만원임.

< 2025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제주보훈업무지원	2,315	2,384	69	3.0

Ⅲ. 기금운용계획안

1. 보훈기금

가. 수입 운용계획안

- 2025년도 보훈기금 수입 운용계획안은 2024년 대비 15.9% 증가한 6,961억 6,800만원이 편성됨.
- 자체수입은 대부원리금, 예탁이자수입, 골프장 운영수입 등으로 2024년 대비 1.8% 증가한 1,969억 3,000만원임.
- 정부내부수입은 복권기금 전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원금회수 등으로 2024년 대비 18.3% 감소한 1,451억 2,700만원임.
- 여유자금회수는 사업비 지출을 위한 회수금으로 2024년 대비 54.4% 증가한 3,541억 1,100만원임.

< 2025년도 보훈기금 수입 운용계획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계획(A)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증감률 (B-A)/A
합 계	600,414	696,168	95,754	△15.9
○ 자체수입	193,414	196,930	3,516	1.8
- 재산수입	126,462	136,119	9,657	7.6
(골프장 매각대금)	(122,700)	(132,000)	(9,300)	(7.6)
- 경상이전수입	7,177	1,016	△6,161	△85.8
- 골프장운영수입	34,399	35,080	681	2.0

구 분	2024년 계획(A)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증감률 (B-A)/A
- 융자원금회수	25,376	24,715	△661	△2.6
○ 정부내부수입	177,680	145,127	△32,553	△18.3
- 복권기금전입금	22,076	21,553	△523	△2.4
- 기금예탁이자수입	150,000	120,000	△30,000	△20.0
- 기금예탁원금회수	5,604	3,574	△2,030	△36.2
○ 여유자금회수	229,320	354,111	124,791	54.4

나. 지출 운용계획안

- 2025년도 보훈기금 지출 운용계획안은 2024년 대비 15.9% 증가한 6,961억 6,800만원이 편성됨.
- 사업비는 노후복지지원 근로자 인원 감소 등으로 인하여 2024년 대비 7.1% 감소한 1,160억 2,000만원임.
- 기금운영비는 기금 사업을 위한 경비로 2024년 대비 0.6% 증가한 8억 4,400만원임.
- 정부내부지출은 타 기금 전출금으로 공자기금 예탁 규모를 축소 반영하여 2024년 대비 24.9% 감소한 905억 4,600만원임.
- 여유자금운용은 사업비 집행 후 여유자금을 연기금투자풀에 예탁하는 것으로 2024년 대비 38.0% 증가한 4,887억 5,800만원임.

< 2025년도 보훈기금 지출 운용계획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계획(A)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증감률 (B-A)/A
합 계	600,414	696,168	95,754	15.9
○ 사 업 비	124,887	116,020	△8,867	△7.1
- 국가유공자등위로격려	1,320	1,320	-	-
- 중상이자보조기기지급	3,294	2,228	△1,066	△32.4
- 국가유공자등노후복지지원	43,047	39,771	△3,276	△7.6
- 기타복지지원	476	-	△476	순감
- 히어로즈패밀리프로그램	617	875	258	41.8
- 보훈트라우마센터설치운영	2,110	1,451	△659	△31.2
- 보훈복지시설건립	3,365	3,783	418	12.4
- 보훈요양및양로지원	7,694	8,372	678	8.8
- 보훈휴양원건립	100	-	△100	순감
- 장학금	438	438	-	-
- 국가유공자등대부(용자)	22,679	22,679	-	-
- 국가유공자등대부관리	10,657	10,657	-	-
- 골프장위탁운영	17,333	17,643	310	1.8
- 골프장시설투자	3,197	4,077	880	27.5
- 재향군인회지원	6,061	-	△6,061	순감
- 참전기념사업지원	456	687	231	50.7
- 제대군인대부(용자)	1,755	1,751	△4	△0.2
- 제대군인대부관리	288	288	-	-
○ 기금운영비	839	844	5	0.6
- 인건비	220	228	8	3.6
- 기금운영비	619	616	△3	△0.5
○ 정부내부지출	120,577	90,546	△30,031	△24.9
- 공무원연금기금전출	14	74	60	428.6
- 복권기금전출	563	472	△91	△16.2
- 공자기금예탁금	120,000	90,000	△30,000	△25.0
○ 여유자금운용	354,111	488,758	134,647	38.0

2.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가. 수입 운용계획안

- 2025년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수입 운용계획안은 2024년도 대비 0.3% 증가한 1,492억 1,300만원이 편성됨.
- 자체수입은 예탁금 이자수입, 친일귀속재산 매각대금, 광복회관 임대료 등으로 친일귀속재산 매각 추이, 광복회관 임대 등을 반영하여 2024년 대비 4.0% 증가한 87억 5,100만원임.
- 정부내부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024년 대비 0.1% 감소한 925억 8,300만원임.
- 여유자금회수는 연기금투자폴 사업비 회수금으로 2024년 대비 0.4% 증가한 478억 7,900만원임.

< 2025년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수입 운용계획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계획(A)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증감률 (B-A)/A
합 계	148,730	149,213	483	0.3
○ 자체수입	8,414	8,751	337	4.0
- 토지대여료	61	67	6	9.8
- 건물대여료	3,703	3,703	-	-
- 기타재산이자수입	1,737	1,737	-	-
- 변상금	-	39	39	순증
- 기타경상이전수입	120	133	13	10.8
- 토지매각대	2,793	3,072	279	10.0
○ 정부내부수입	92,651	92,583	△68	△0.1
- 일반회계전입금	92,651	92,583	△68	△0.1
○ 여유자금회수	47,665	47,879	214	0.4

나. 지출 운용계획안

- 2025년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지출 운용계획안은 2024년 대비 0.3% 증가한 1,492억 1,300만원이 편성됨.
- 사업비는 독립유공자및유족지원 감액 및 독립운동관련문헌발간 증액을 반영하여 2024년 대비 0.3% 증가한 1,010억 1,100만원임.
- 기금운영비는 2024년과 동일한 9,400만원임.
- 여유자금운용은 사업비 지출규모 등을 반영하여 2024년 대비 0.5% 증가한 481억 800만원임.

< 2025년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지출 운용계획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계획(A)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증감률 (B-A)/A
합 계	148,730	149,213	483	0.3
○ 사업비	100,757	101,011	254	0.3
- 독립유공자및유족지원	97,065	96,997	-	-
- 독립운동관련문헌발간	267	589	322	120.6
- 독립유공자묘소관리	398	398	-	-
- 광복회관관리	3,027	3,027	-	-
○ 기금운영비	94	94	-	-
- 인건비	48	50	2	4.2
- 사업운영비	46	44	△2	△4.3
○ 여유자금운용	47,879	48,108	229	0.5

IV. 성과계획서

1. 임무와 비전

- 국가보훈부는 2025년도 임무를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여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한다’로 설정하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실현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만든다’로 비전을 설정하였음.

2. 목표 및 과제 현황

- 국가보훈부는 5가지 전략목표(①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 체계 정립으로 공정한 보훈을 실현한다 ② 의료·복지서비스 강화로 보훈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한다 ③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존중하고 예우한다 ④ 제대군인과 참전군인의 명예롭고 안정적인 삶을 지원한다 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분을 기억하는 보훈문화를 조성한다)와 9개의 프로그램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12개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2025년도 국가보훈부 성과지표 현황 >

전략목표	프로그램 목표	프로그램 목표의 성과지표수	성과지표 성격				정량지표수 (비중)
			투입	과정	산출	결과	
5	9	12	1	-	1	10	6
		100%	8.3%	-	8.3%	83.3%	(50.0%)

< 2025년도 국가보훈부 성과지표 세부 현황 >

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			'25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과 분야		정량/ 정성	성격	
전략목표Ⅰ.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체계 정립으로 공정한 보훈을 실현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상을 실시한다							
보훈심사및보상	①보훈급여금 적정 지급률	1.0	일반 재정	99.95 (%)	정량	투입	
프로그램목표Ⅰ-2. 보상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효율적 행정환경을 조성한다							
보훈 행정	①정보서비스 적기 처리율	0.5	정보화	87 (%)	정량	산출	
	②정보화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0.5	정보화	88 (점)	정성	결과	
전략목표Ⅱ. 의료·복지서비스 강화로 보훈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한다							
프로그램목표Ⅱ-1. 의료·복지 인프라 확충 및 품질 향상으로 보훈의료복지서비스 체계를 혁신한다							
보훈의료복지	①보훈복지서비스에 대한 국가보훈대상자 만족도	1.0	일반 재정	89.96 (점)	정성	결과	기관 대표 지표
프로그램목표Ⅱ-2. 88골프장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국가유공자 등 복지재원 마련에 기여한다							
기금증식	①자기자본 이익률	0.5	일반 재정	72.2 (%)	정량	결과	
	②골프장 1인 객단가	0.5	일반 재정	189.7 (천원)	정량	결과	

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			'25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과 분야		정량/ 정성	성격	
프로그램목표Ⅱ-3. 국가유공자의 취업·대부·교육지원으로 생활안정 기반을 향상시킨다							
생활안정지원	①신규 취업자 고용유지율	0.7	일반 재정	80.0 (%)	정량	결과	
	②대부지원 만족도	0.3	일반 재정	81.5 (점)	정성	결과	
전략목표Ⅲ.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존중하고 예우한다							
프로그램목표Ⅲ-1. 국가유공자 사망 시 예우체계를 확립하고, 정부 주도 국가유공자를 발굴하며 독립운동 유산을 보존·활용한다							
보훈예우 및 국립묘지	①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국민평가	1.0	일반 재정	81.25 (점)	정성	결과	
전략목표Ⅳ. 제대군인과 참전군인의 명예롭고 안정적인 삶을 지원한다							
프로그램목표Ⅳ-1.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참전군인의 명예를 선양한다							
제대군인지원	①제대군인 취·창업률	1.0	일반 재정	67.5 (%)	정량	결과	
전략목표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분을 기억하는 보훈문화를 조성한다							
프로그램목표Ⅴ-1. 국민참여와 공감을 기반으로 하는 보훈문화 활동을 활성화한다							
보훈문화	①보훈문화의식 개선도	1.0	일반 재정	72.6 (점)	정성	결과	기관 대표 지표
프로그램목표Ⅴ-2. 국민과 함께하는 보훈단체 선양활동을 추진한다							
보훈단체지원	①보훈단체에 대한 호감도	1.0	일반 재정	73.0 (점)	정성	결과	

제2장 검토의견

I. 총괄

1. 보훈분야 예산 확보 노력 필요 : 적극적인 신규사업 발굴 및 예산 확보 노력 필요

가. 보훈체계 현황¹⁾

□ 우리나라 보훈 정책은 1950년 「군사원호법」과 「경찰원호법」 제정 이후, 1961년 6·25전쟁 전몰군경유족 및 전상군경 지원목적의 군사원호청이 발족됨으로써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음. 우리나라의 보훈 정책은 독립, 6·25전쟁, 베트남전쟁, 민주화 운동 등 근현대사에 굽적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다양한 분야가 보훈 영역에 포함되어온 특징을 가지고 있음.²⁾

□ 상이 및 전사 군경에 대한 생계지원에서 출발했던 보훈 정책은 유공자들에 대한 자활시책 등의 물질적인 지원과 정신적인 예우를 실현하려는 방향으로 보훈정책이 변화하고 있음.

○ 1985년 시혜적 원호에서 희생·공헌에 대한 예우 업무로 전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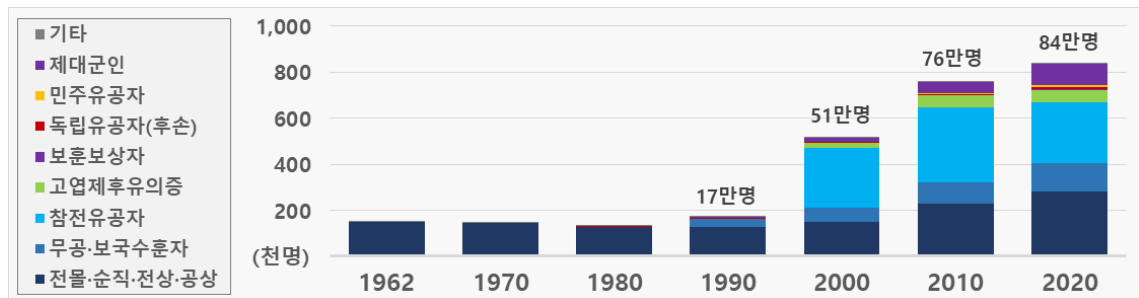
1) 홍익표, '보훈보상체계 개선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21-01 및 제4차 보훈발전기본계획에서 발췌·정리

2) - 60년대: 독립유공자, 4.19혁명 관련자
- 80년대: 순직·공상공무원, 무공·보국수훈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 90년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군인, 제대군인
- 2000년대: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특수임무수행자

호처 - 국가보훈처로 기관명칭이 변경되었으며, 1998년 제대군인지원 업무는 군인보험 지급, 일선장병 위문에서 취업·생활지원, 국립묘지 안장, 전직지원금까지 확대됨.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다양한 보훈대상자가 새로이 진입됨.

- 1993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994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998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2002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005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012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각각 제정됨.

《 보훈대상자 구성 및 규모 추이 》



자료: 국가보훈부

- 2005년에는 「국가보훈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법제화했으며,³⁾ 이를 통해 보훈 정책의 추진방향, 추진과제 및 방법, 보훈관련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등

3) 「국가보훈기본법」 제8조(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11조에 따른 국가보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필요한 사항들을 수립하도록 함.⁴⁾

○ 2012년에는 50여 년 간 이어져온 보훈보상체계가 대폭 개편되었음.

-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국가유공자와 단순히 보상이 필요한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을 시작함.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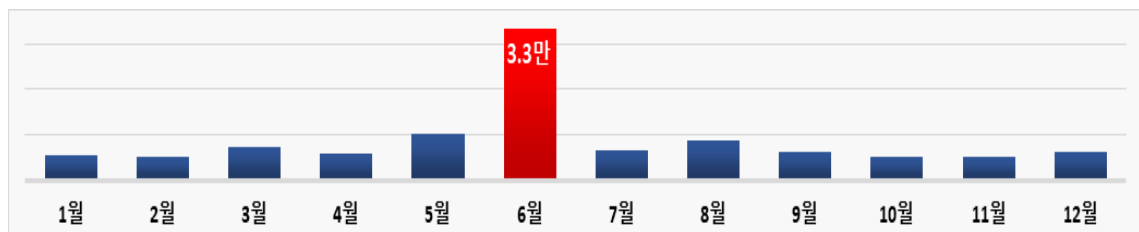
□ 그러나, 아직 보훈이 국민 일상 속 문화로 정착되지 못한 실정이며, 보훈대상자의 만족도와 자긍심은 아직 저조함.

○ 국민은 국가에 헌신한 분들을 존경하는 문화가 아직 부족하다고 인식함.

- 2022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에서 ‘보훈대상자 존경 문화가 잘 정착되었다’는 응답은 31.9%로, ‘그렇지 않다’ 42.1%보다 낮게 나타남.

○ 보훈이 일상 속 문화보다는 특정 시기의 이벤트로 인식되는 경향이 존재함.

《 SNS 등 소셜 빅데이터 분석 : 월별 “보훈” 키워드 언급량('17.~'21. 5년간) 》



자료: 국가보훈부

4) 현재는 제5차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2023-2027)

5) 이는 보훈의 정체성 문제, 보훈과 복지의 경계 문제, 예우와 보상 분류 문제, 보훈 대상의 문제 등(한국법제연구원, 2009)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이에 대한 개선 및 보완책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음

-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책 만족도는 낮은 수준에 정체된 실정이며, 보훈대상자가 자신의 희생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보훈대상자로서의 자긍심이 저하된다고 답하고 있음.
- 보훈정책 만족도 : ('18.) 18% → ('21.) 18.2% / 3년간 0.2%p 상승
- 보훈대상자로서의 자긍심 : ('18.) 63% → ('21.) 51.7% / 3년간 △ 11.3%p 하락
- * 자긍심을 못 느끼는 이유 :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해서” 1위(64.9%)

나. 보훈예산 현황

- 보훈의 영역이 넓어지고, 다양한 보훈정책이 등장함에 따라, 보훈 대상과 보훈예산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임.
- 보훈대상은 1962년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유공자 등 15만 명에 대한 지원을 시작으로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제대군인 지원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2013년에는 80만명, 2024년 83만명으로 3.75%가 증가했음.
- 보훈예산 역시 해마다 증가하여, 2018년 5조원, 2023년 6조원을 각각 돌파하였음.

- 국가보훈부 소관 2025년도 재정규모를 살펴보면, 총지출 규모는 6조 3,948억원으로 2024년도 대비 3.3% 증가하였는 바, 정부 예산안 677.4조원 중 0.94%를 차지하고 있음.

<우리나라 보훈예산과 정부예산에 대한 비율>

(단위: 억원, %)

구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20년	2025년 예산안
정부예산(A)	58,040	226,894	864,740	2,012,835	3,014,172	6,774,374
보훈예산(B)	625	3,742	12,464	34,325	53,186	63,948
B/A	1.08	1.65	1.44	1.71	1.76	0.94

자료: 국가보훈부

- 취업지원 현황을 보더라도 지원의 범위는 매년 넓어지고 있는 추세임. 2011년 약 10만 4천 명의 취업지원자(본인, 유가족)는 2023년 11만 6천 명까지 약 10%가 늘었음.

<보훈대상자 취업 지원 현황>

(단위: 명)

구분		2011	2013	2015	2017	2019	2021	2023
취업 지원	취업지원	104,392	106,677	114,464	115,697	118,215	119,666	116,554
	본인	8,976	9,921	11,337	12,639	13,749	14,686	14,714
	유가족	95,416	96,756	103,127	103,058	104,466	104,980	101,840

자료: 국가보훈부

-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의 보훈예산의 정부예산 점유비율은 80년대 초 약 1.09%를 시작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에는 1.76%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주요

선진국의 정부예산 점유비율(미국 4.6%, 호주 1.2%, 캐나다 1.4%)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 규모가 많이 떨어지는 실정임.

□ 또한, 보훈예산 중 보상금 예산의 비율은 80.5%에 이르고 있음.

<보상금 예산규모>

구분	보훈예산	보훈급여금	구성비율(%)
1990	3,742억원	3,195억원	85.4
2000	1조2,464억원	1조284억원	82.5
2010	3조4,325억원	2조6,449억원	77.1
2020	5조5,078억원	4조3,715억원	79.4
2025(안)	6조3,438억원	5조1,093억원	80.5

자료: 국가보훈부

<보상금 지급현황>

(인원:명,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보상금	191,866	3,059,336	192,964	3,197,518	190,606	3,325,248
간호수당	2,620	55,479	2,503	56,610	2,357	56,243
생활조정수당	9,097	29,798	16,473	42,027	21,365	55,899
6.25자녀수당	27,546	288,573	27,398	299,431	27,952	328,809
고엽제수당	37,273	305,634	35,115	298,384	34,614	310,694
무공영예수당	12,193	59,084	10,668	52,957	10,134	55,163
참전명예수당	162,637	664,623	144,756	608,794	138,010	646,292
4.19혁명공로수당	277	1,166	276	1,196	275	1,323
사망일시금	6,818	8,304	6,818	8,304	7,171	8,748
재해보상금	173	14,802	8	78	8	178

자료: 국가보훈부

다. 검토의견 : 적극적인 신규사업 발굴 및 예산 확보 노력 필요

2025년 예산안은 ‘보훈보상금’을 제외한 모든 단위사업 예산이 삭감되었고, 신규 세부사업은 사실상 없음. 또한, 정부예산 대비 보훈예산 비율은 최근 계속 하락추세이고, 보상금을 제외한 다른 분야 예산은 아직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향후 국가보훈부는 각종 보상금 및 전직지원금 등을 계획대로 지급하고, 의료·복지분야와 같은 서비스예산을 확충하며, 보훈정책 방향 변경에 맞추어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① 2025년 예산안 : ‘보훈보상금’을 제외한 모든 단위사업 예산이 삭감

□ 2025년도 예산안을 프로그램사업과 단위사업 단위로 각각 살펴보면, 프로그램사업 기준으로는 8개 중 ‘보훈심사및보상’과 ‘보훈예우및국립묘지’ 2개 사업을 제외한 6개 사업 예산이 삭감되었고, 단위사업 기준으로는 26개 중 ‘보훈보상금’과 ‘국립묘지조성및관리’ 2개 사업을 제외한 24개의 단위사업 예산이 삭감됨. 그러나, 표면적으로 증액된 ‘보훈예우및국립묘지’ 프로그램사업 내에 ‘국립묘지조성및관리’ 단위사업은 국립현충원이 2024년 7월 국가보훈부로 이관됨에 따른 예산을 제외하고 비교하면 전년에 비해 감액되었음.

□ 국가보훈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6조 4,057억원 대비 757억원(1.2%) 증가한 6조 4,814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보훈보상금’ 예산은 보상금 5% 증액을 위해 1,125억 9,900만원이 증액되었음. 단위사업 단위로 보면, 보훈보상금과 국립서울현충원(113억 3,300만원) 등 2개 사업에 1,239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고, 나머지 단위사업은 482억원 감액됨.

< 2025년도 주요사업비 프로그램별 총괄표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 사업비	6,053,416	6,132,178	78,762	1.3
○ 보훈심사및보상	5,025,545	5,117,384	91,839	1.8
○ 보훈단체지원	38,870	36,281	△2,589	△6.7
○ 보훈의료복지	676,108	671,765	△4,343	△0.6
○ 생활안정지원	29,002	28,952	△50	△0.2
○ 보훈문화	98,563	97,332	△1,231	△1.2
○ 보훈예우및국립묘지	106,389	125,773	19,384	18.2
○ 제대군인지원	59,188	35,460	△23,728	△40.1
○ 보훈행정	19,751	19,231	△520	△2.6

자료: 국가보훈부

< 2025년도 단위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 보훈보상금	3,468,124	3,580,723	112,599	3.2
○ 수당	1,536,117	1,518,748	△17,369	△1.1
○ 수시보상금	9,982	9,971	△11	△0.1
○ 보훈심사	1,620	1,636	16	1.0
○ 등록심사	9,702	6,306	△3,396	△35.0
○ 보훈단체지원	38,870	36,281	△2,589	△6.7
○ 교통시설이용지원	11,329	10,729	△600	△5.3
○ 의료지원	656,737	649,800	△6,937	△1.1
○ 의료환경개선	8,042	11,236	3,194	39.7
○ 교육지원	26,237	26,134	△103	△0.4
○ 취업지원	2,765	2,818	53	1.9
○ 독립기념관	28,176	27,479	△697	△2.5
○ 보훈문화진흥	25,261	20,858	△4,403	△17.4
○ 현충시설	37,307	31,711	△5,596	△15.0
○ 기념사업	7,819	17,284	9,465	121.1
○ 공훈발굴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11,967	10,957	△1,010	△8.4
○ 국립묘지 조성 및 관리	94,422	114,816	20,394	21.6
○ 제대군인 생활안정	25,748	25,292	△456	△1.8
○ 참전·제대군인 명예선양	33,440	10,168	△23,272	△69.6
○ 청관사임차 및 시설개선	5,504	5,236	△268	△4.9
○ 일반행정	5,412	5,107	△305	△5.6
○ 보훈서비스지원	4,663	4,456	△207	△4.4
○ 정보화	4,172	4,432	260	6.2

자료: 국가보훈부

② 신규사업 발굴 필요

- 2025년도 예산안 중 신규 세부사업은 ‘광복80주년 기념사업’과 ‘국립서울현충원’ 등 2개 사업임. 그러나,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은 10년마다 편성되는 사업이며, ‘국립서울현충원’ 사업은 국립현충원이 2024년 7월 국가보훈부로 이관됨에 따라 편성된 사업임을 고려할 때, 사실상 신규 세부사업은 없다고도 볼 수 있음. 2025년도 예산안은 국가보훈부로 승격된 후 사실상 첫 번째로 편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쉬운 결과가 아닐 수 없음.
- 정전 70주년 및 광복 80주년 등 주기적인 기념사업을 제외하고 2016년 예산부터 2025년 예산안까지 총 10년간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단위사업과 세부사업 단위에서는 신규사업이 존재하지 않음. 이를 내역사업 단위로 확장해서 살펴보면, 내역사업조차 신규사업은 총 5개에 불과함.

<최근 10년간 신규 내역사업 목록>

연도	내역사업명	주요내용
2016	순직경찰 소방공무원 추모행사 지원	경찰 및 소방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 중 희생한 분들을 기리는 각종 추모제 행사에 대하여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경찰 및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풍토 조성
2018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손)자녀 지원으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의 영예로운 생활보장

연도	내역사업명	주요내용
2018	국내 산재묘소 유지·관리 지원	국립묘지 외 전국에 산재한 독립유공자의 묘소를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독립유공자 사후 예우 강화
2022	유엔군 참전 및 정전 70주년 기념사업	기념사업 추진단 운영 및 기념사업 기획·대국민 홍보
2023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위로행사	호국보훈의 달 및 광복절을 맞아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초청·격려

자료: 국가보훈부

③ 적극적인 신규사업 발굴 및 예산 확보 노력 필요

□ 앞서 살펴보았듯 정부예산 대비 보훈예산 비율은 2020년 1.76%를 정점으로 계속 하락추세에 놓여 있으며, 미국 4.6%, 캐나다 1.4% 등 주요 선진국의 비율보다 현저히 낮음.

□ 또한, 보상금을 제외한 다른 분야 예산은 아직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 후술한 개별 사업의 검토 내용과 같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과 의료환경개선 관련 사업 등은 실제 소요예산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며, 부족한 예산은 보상금 등에서 이·전용 등을 통해 돌려막기 형식으로 충당해오고 있음.

□ 보훈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의 예산 감액 및 신규사업 부재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 강화를 위해 재정당국과 여러 차례 예산안 협의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정부의 건전재정기조 확립에 따라 예산 증액 및 신규 사업 반영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음.

□ 국가보훈부는 ‘국가보훈 기본계획’과 ‘2024년 국가보훈발전 과제별 실천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부 승격에 맞추어 각종 보상금 및 전직지원금 등을 계획대로 지급하고, 의료·복지분야와 같은 서비스예산을 확충하며, 보훈정책 방향 변경에 맞추어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2.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 성과달성률 제고 필요

가. 사업 개요

□ 2007년 1월 「국가재정법」의 시행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기관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인 성과계획서와 계획 대비 실적을 측정하여 예산편성 등 재정운용에 활용하기 위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음.

각 중앙관서는 2010회계연도부터 인건비·기본경비가 반영된 비재정사업을 제외하고 주요 사업비 예산이 반영된 재정사업에 대해서 성과보고서를 작성해 오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2022회계연도부터 재정사업의 거시적·전략적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성과계획서 작성단위를 사업담당 실무자가 사업의 실적 및 집행을 관리하는 단위인 ‘단위사업’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 재정지출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단위인 ‘프로그램’ 단위로 성과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음.

모든 중앙관서는 프로그램 목표가 추구하는 목적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목표에 대해 성과지표를 설정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목표의 성과지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궁극적 성과에 대한 정량·결과 지표로 설정하여야 함.

나. 검토의견

국가보훈부의 프로그램 목표의 성과지표 달성률을 살펴보면, 2023년도를 포함하여 최근 6년간 평균 달성률이 전체 부처평균보다 저조하므로, 성과지표의 달성률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국가보훈부에서 작성한 ‘2025년도 국가보훈부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기관의 임무를 ‘국가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여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한다’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임무-비전-전략목표(5개)-프로그램목표(9개)-성과지표(12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국가보훈부 성과관리체계도 >

임무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여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한다.	
비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실현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만든다.	
전략목표	전략목표 I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체계 정립으로 공정한 보훈을 실현한다.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목표 1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상을 실시한다.
		프로그램목표 2 효율적인 행정환경을 조성하여 안정된 보상기반을 구축한다.
목표	전략목표 II 의료·복지서비스 강화로 보훈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한다.	
		프로그램목표 1 국가유공자의 의료·복지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킨다.

		프로그램목표 2 88골프장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국가유공자 등 복지재원 마련에 기여한다.
		프로그램목표 3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기반을 향상시킨다.
	전략목표 Ⅲ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존중하고 예우한다.	
		프로그램목표 1 국립묘지 안장 등 사망 시 예우를 확대하고, 독립(국가)유공자 발굴 등 독립운동 유산의 보존·활용을 강화한다.
	전략목표 Ⅳ 제대군인과 참전군인의 명예롭고 안정적인 삶을 지원한다.	
		프로그램목표 1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참전군인의 명예를 선양한다.
	전략목표 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분을 기억하는 보훈문화를 조성한다.	
		프로그램목표 1 국민참여와 공감을 기반으로 하는 보훈문화 활동을 활성화한다.
		프로그램목표 2 단체별 특성에 맞는 선양활동과 민주적이고 투명한 단체운동을 통해 국민에게 존경받고 신뢰받는 보훈단체상을 정립한다.

자료: 국가보훈부

□ 한편 국가보훈부에서 위 성과계획서에 따른 2023년도 재정활동 성과를 측정하여 작성한 ‘2023년도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5개 전략목표의 달성도는 프로그램목표의 경우 75%임.

○ 58개 중앙관서가 재정사업에 대하여 작성한 2023회계연도 성과보고서를 살펴보면, 프로그램 목표의 성과지표 총 1,068개 중 819개(76.7%)가 달성되고 249개(23.3%)가 미달성되었는데, 국가보훈부는 전체 평균인 76.7%보다 낮은 75%를 기록함.

□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 달성률 또한 73.1%로, 같은 기간 전체 부처평균인 75.6%보다 낮은 바, 국가보훈부는 성과지표의 달성률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프로그램 목표 달성 현황>

(단위: 개, %)

	전략 목표	프로그램 목표	성과 지표(A)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달성(B)	미달성	달성률 (B/A)	전체부 처평균
2023	5	9	20	15	5	75	76.9
2022	5	9	20	18	2	90	77.4
2021	5	9	12	10	2	83.3	76.6
2020	5	9	12	9	3	75	68.9
2019	5	9	13	7	6	53.8	76.4
2018	5	8	13	8	5	61.5	77.1
평균	5	9	15.4	11.8	3.6	73.10	75.6

자료: 국가보훈부

○ 최근 5년간 실국별로 개별 성과지표의 달성률을 살펴보면, 보상 정책국(97.68%), 보훈문화정책관(98.98%), 제대군인국(99.95%)은 100%에 미달함.

<성과지표별·실국별 목표 달성 현황>

해당 실국	성과지표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보상 정책국	보훈대상자 요건심사해당률(%)	93.9					97.68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소요기간 단축(일)		106.7	102.0			
	신체검사 만족도(점)				100.1	100.2	
	등록관련 행정소송 패소율 (%)				100.0	84.3	
보훈단체 협력관	보훈단체 지원에 대한 국민호응도(점)	100.3	100.5	102.1			117.95
	보훈단체선양활동 언론보도실적(회)				152.8	117.4	
	지방보훈회관 이용자 만족도(점)				100.1	100.2	
	보훈단체선양활동 참가자수(명)				100.2	170.8	
복지 증진국	보훈병원 의료서비스 만족도(점)	94.7					101.84
	재가복지서비스 만족도(점)	100.1	101.9	101.2			
	보훈의료서비스 수혜율(%)		98.4	100.8	100.0	101.5	
	보훈복지서비스 만족도 (점)				100.2	99.9	
	교육지원 만족도(점)	99.3					
	대부지원 만족도(점)	93.0	105.6	106.3	103.1	101.6	
	취업지원 만족도(점)	105.1	103.4	101.1			
	국가유공자 취업목표 달성율(%)				90.0		
	신규취업자 고용유지율(%)					113.0	
	88CC고객만족도(점)	99.9	97.5	98.3			
	88골프장 내장객수(명)				104.9	98.9	
	자기자본 이익률(%)				110.6	85.1	
	이동보훈팀 지원 실적(건)				102.5	141.5	

해당 실국	성과지표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보훈문화 정책관	보훈선양 정책 인지도 조사(점)	100.0					98.98
	보훈선양 정책 공감도(점)		100.0	0.0			
	보훈정신계승 연수·체험활동 참가인원(천명)				100.6	180.7	
	보훈정신계승 연수·체험활동 참가자 추천도(점)				101.0	100.0	
	보훈문화활동 참여의향도(점)				107.4	100.0	
보훈예우 정책관	독립유공자 포상인원(명)	107.8	117.0	109.3	99.7		104.63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국민평가(점)				102.5	101.2	
	국립묘지 방문자 수(천명)					103.5	
제대 군민국	행사 참여자 한국인식개선도(점)	100.0					99.94
	제대군인 전직지원서비스 및 고용 만족도(점)	100.3					
	정부 주관 참전기념행사 참여자 만족도(점)		100.0	101.8			
	제대군인 전직지원서비스 만족도(점)		96.5	100.0			
	제대군인 취·창업률 (%)				100.3	100.0	
	참전군인에 대한 존경도(점)				100.1	99.8	
정책 기획관	정보화사용자 만족도(점)	97.4	101.3	107.4			101.95
	통합보훈 정보시스템 개선요청 반영률 (%)				103.0	100.8	

자료: 국가보훈부

3. 주요사업비 구조변경 필요 : 보훈단체운영및선양활동 등, 국제보훈교류협력사업 등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보훈단체운영및선양활동등(1238-315)’ 사업은 보훈단체에 인건비 및 복지회관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보훈단체 수익사업의 관리·감독을 수행하며 보훈단체의 각종 선양활동을 지원하는 보훈단체협력관 소관 사업으로,⁶⁾ 2025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8억 3,900만원(2.4%) 감액된 342억 8,100만원이 편성됨.

< 2025년도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활동등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 감 (B-A)	(B-A)/A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활동 등	34,718	35,120	34,281	△839	△2.4

자료: 국가보훈부

□ ‘국제보훈교류협력사업(4161-395)’은 유엔참전용사 재방한 초청을 비롯한 참전국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문화·스포츠 등 국제교류를 활성화 하려는 기획조정실 소관 사업으로,⁷⁾ 2025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8억 8,300만원(10.0%) 감액된 79억 9,100만원이 편성됨.

6) 세부사업: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활동 등(1238-315)

7) 세부사업: 국제보훈교류협력사업(4161-395)

- 동 사업은 ‘제대군인지원’ 프로그램(4100) 내의 ‘참전·제대군인명예선양’ 단위사업(4161)에 속한 세부사업이나, 8개의 내역사업 중 제대군인군 소관 사업은 1개에 불과함. 나머지 7개의 내역사업 중 6개는 기획조정실 소관이며, “문화스포츠등국제교류활성화’ 내역사업은 복지증진국 소관임.

< 2025년도 국제보훈교류협력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소관부서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 감 (B-A)	(B-A)/A
국제보훈 교류협력사업	기획조정실	9,135	8,874	7,991	△883	△10.0
유엔참전용사 등 재방한	기획조정실	3,174	2,302	2,303	-	-
현지참전 기념사업	기획조정실	1,010	1,382	1,121		
유엔참전용사 명예선양	기획조정실	1,146	1,183	963		
유엔참전국 후손사업	기획조정실	2,380	2,673	2,387		
참전국 교류협력강화	기획조정실	312	714	714	-	-
공무직등 인건비	기획조정실	60.4	64	66		
유엔참전 국내기념행사	제대군인국	208	207	187		
문화스포츠등 국제교류활성화	복지증진국	271	350	350	-	-

자료: 국가보훈부

나. 검토의견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활동 등’ 사업의 ‘보훈단체선양활동등’의 내내역사업인 의학적재활과 관련한 상이군경회의 내내역사업 및 ‘국제보훈교류사업’의 ‘문화스포츠등국제교류활성화’ 내역사업은 상호간에 보조사업자가 동일하고 사업 내용이 유사하므로 통폐합을 통해 사업 관리 효율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1) 국고보조금 연장평가를 반영한 유사사업 통합 필요

- 위의 두 세부사업은 민간경상보조(320-021)⁸⁾ 예산을 포함하고 있는데, 2025년 민간경상보조 예산안 규모는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활동등’ 사업에 342억 2,700만원, ‘국제보훈교류협력사업’에 4억 4,900만원임.
-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활동등’ 사업은 2024년 예산에 비해 8억 4,100만원 감소하였고, ‘국제보훈교류협력사업’은 2024년과 동일함.

< 각 세부사업별 민간경상보조 예산안 편성 현황 >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소관 실·국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증감액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활동 등	보훈단체운영	보훈단체협력관	26,002	26,228	226
	보훈단체선양 활동등	보훈단체협력관	5,931	5,031	△900
	복지회관 등 운영	보훈단체협력관 복지증진국	3,135	2,968	△167
	소계		35,068	34,227	△841

8)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등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소관 실·국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증감액
국제보훈 교류사업	유엔참전용사 등 재방한	기획조정실	-	-	-
	현지참전 기념사업		-	-	-
	유엔참전국 후손사업		81	81	-
	참전국 교류협력강화		290	290	-
	유엔참전용사 명예선양		60	60	-
	공무직등 인건비		-	-	-
	유엔참전 국내기념행사	제대군인국	18	18	-
	문화스포츠등 국제교류활성화	복지증진국	-	-	-
	소계		449	449	-

자료: 국가보훈부

-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활동 등’ 사업의 ‘보훈단체선양활동등’의
내내역사업인 의학적재활과 관련한 상이군경회의 내내역사업 및
‘국제보훈교류사업’의 ‘문화스포츠등국제교류활성화’ 내역사업은
2023년까지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2024년부터
는 민간위탁사업으로 편성되기 시작함.

이러한 보조금 예산의 비목전환은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일부 내역사업은 정부가 시행주체
로서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임.⁹⁾¹⁰⁾

□ 그런데, 동 평가에서는 민간위탁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은 각각의 내역사업¹¹⁾에 대해, 상호간에 보조사업자가 동일하고 사업 내용이 유사하므로 통폐합을 통해 사업 관리 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하였음.¹²⁾

<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중 사업 통폐합 필요성 지적 >

-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문제점(376p)
 - 보훈단체선양활동등 내역사업 중 의학적 재활과 관련된 사업은 국제보훈교류사업의 문화스포츠등 국제교류활성화 내역사업과 보조사업자가 동일하고 사업의 내용이 유사함
- 개선사항(377p)
 - 보훈단체선양활동등 내역사업 중 의학적재활과 관련한 상이군경회의 내내역 사업은 국제보훈교류사업의 문화스포츠등 국제교류활성화 내역사업과 통합하여 운영하고 민간위탁으로 비목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료: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보고서 중 발췌

-
- 9) 동 평가에서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활동 등’ 사업의 ‘보훈단체선양활동등’ 내역사업 중 의학적재활과 관련한 상이군경회의 내내역 사업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제44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보훈처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사업이며 「국가유공자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가 대신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바, 보조금 비목을 민간위탁 비목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386p)
- 10) 같은 평가에서 ‘국제보훈교류사업’의 ‘문화스포츠등국제교류활성화’ 내역사업도 「국가유공자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보훈처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사업이며 동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가 대신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바, 보조금 비목을 민간위탁 비목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되었음.(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p.375)
- 11)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활동 등’ 사업의 ‘보훈단체선양활동등’ 내역사업 중 의학적재활과 관련한 상이군경회의 내내역 사업 및 ‘국제보훈교류사업’의 ‘문화스포츠등국제교류활성화’ 내역사업
- 12)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보고서(p.376, p.377, p.381, p.386)

<통폐합 필요 지적 사업 비교>

세부사업	내역사업	주요 사업내용	수행주체	사업 수혜자	비고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활동 등	보훈단체선양활 동 중 의학적 재활과 관련된 사업	국내·외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	상이군경회	상이군경 등	민간위탁 사업 전환
국제보훈 교류사업	문화스포츠등 국제교류활성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선수단의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 (인빅터스 게임, 워리어 게임) 출전 경비 지원	상이군경회	상이군경 등	민간위탁 사업 전환

자료: 국가보훈부

□ 기획재정부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각 사업의 통폐합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사업수행주체와 내용, 수혜자 등이 유사한 사업을 별개의 세부사업에서 진행함에 따른 중복 소지를 해소하고 재정 지출의 비효율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

○ 특히, 보조사업에서 민간위탁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입찰 발주 및 위탁계약, 수탁사업 구분계리, 위탁대상업무 편람작성 등 민간위탁사업비 집행·관리 절차¹³⁾를 이행해야 함을 고려할 때, 별개 사업에서 각각 수행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감안한 개선 요구로 볼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 2025년 예산안은 2024년과 마찬가지로 사업구조 개편 없이 종전과 같이 각각의 세부사업에 해

13)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p.198~p.200, 민간위탁사업비 비목별 지침

당 내역사업들을 별도로 편성하였는바,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 통합방안 및 적정 예산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주요사업비 구조변경 필요 : 국제보훈교류협력사업 등

국가보훈부는 국제보훈교류사업 뿐만 아니라 많은 사업들이 「국가재정법」에 따른 프로그램 예산편성 체계를 따르지 않고 있는 바, 향후 2개 이상의 실·국 내역사업을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통합 관리하는 것을 지양하고 사업의 성격에 맞게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음

- 「국가재정법」 제21조¹⁴⁾는 세출예산을 중앙관서별로 구분한 후 그 내용을 기능별, 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장·관·항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음.

세출예산을 구분하는 이유는 1개의 프로그램에 1개의 ‘실’ 또는 ‘국’이 포함되어 예산편성 및 집행의 책임성과 성과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임.

그러나 국가보훈부의 예산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위의 국제보훈교류사업 뿐만 아니라 많은 사업들이 「국가재정법」에 따른 프로그램

14) 「국가재정법」 제21조(세입세출예산의 구분) ①세입세출예산은 필요한 때에는 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세입세출예산은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소관별로 구분한 후 소관 내에서 일반회계·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③세입예산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성질별로 관·항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기능별·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장·관·항으로 구분한다.
④예산의 구체적인 분류기준 및 세항과 각 경비의 성질에 따른 목의 구분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램¹⁵⁾ 예산편성 체계를 따르지 않고 있음.

- 국가보훈부의 2015년 예산의 경우 38개의 단위사업, 10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나, 2025년 예산안의 경우 32개의 단위사업, 81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그동안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을 많이 통폐합하였음. 그러나 통폐합된 단위/세부사업의 예산안은 다른 세부/내역사업들이 추가됨으로 인해 증가된 금액으로 표시되어 해당 세부사업의 예산규모가 왜곡되어 전달되는 문제가 있음.

국가보훈부는 신규사업을 내역사업 또는 내내역사업으로 편성하는 경우가 많은데,¹⁶⁾ 이 경우에는 그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을 알기 어렵게 됨.

- 또한, 각 세부사업으로 운영되던 사업들이 통·폐합되면서 각 사업들의 과거 예산투입규모, 결산내역, 사업추진 성과 등 사업이력의 추적이 어렵게 되고, 각 사업들의 사업목표가 다르므로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의 설정도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음.

15) 프로그램 예산편성 체계: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일한 정책목표를 지향하는 사업들을 하나의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하는 제도(국가재정법에 따라 도입)

16) 2025년도 예산안에도 '현충시설건립세부사업'내에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 건립, 러시아 이범진 공사 동상 건립, 뉴질랜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 건립 등 3개 내역사업, '국가유공자등노후복지지원세부사업'내에 여가활동지원, 국가유공자 법률구조지원 등 2개 내역사업을 신규로 편성함.

-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향후 2개 이상의 실국 내역사업을 하나의 세부 사업으로 통합 관리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의 성격에 맞게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음.

Ⅱ. 일반회계

[세입]

1. 세입 총괄 : 연례적 세입예산 과다계상 부적정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개요

□ 2025년도 국가보훈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편성규모는 98억 6,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00만원(0.1%) 증액되었음.

< 2025년도 국가보훈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분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 감 (B-A)	(B-A)/A
일반회계 세입	3,497	9,851	9,861		
관유물대여료	139	159	159	-	-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349	511	511	-	-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23	88	88	-	-
변상금 및 위약금	-	51	51	-	-
기타경상이전수입	2,821	8,652	8,652	-	-
면허료 및 수수료	3	3	3	-	-
잡수입	158	352	362	10	2.8
고정자산매각대	4	35	35	-	-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	-	-	-	-

자료: 국가보훈부

- 항목별로는 관유물대여료,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벌금·몰수금 및 과태료, 변상금 및 위약금, 기타경상이전수입, 면허료 및 수수료, 잡수입, 고정자산매각대 등 8개 목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기타경상이전수입이 86억 5,2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87.8%)을 차지함.

나. 검토의견

국가보훈부 일반회계 세입에서 해마다 약 30억원에서 60억원 규모의 세입 결손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3년도도 최근 5년 중 수납률도 제일 낮고 세입예산 오차도 60억원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증액됨.

결산 실적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지 않고 전년도 결산액 또는 예산액을 기준으로 편성하거나 전년도 예산액에서 일정 비율을 기계적으로 증액하는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바, 앞으로 국가보훈부는 각 세입항목의 수납을 추이, 최근 5년간 수납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최근연도 국가보훈부 일반회계 세입 결산을 살펴보면, 2023년도 세입 수납액은 34억 9,800만원으로 예산액 95억 9,800만원 대비 수납률이 36.5%에 그쳤으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도 수납률이 각각 38.3%, 55.9%, 45.6%, 67.7%에 불과함.

< 최근연도 국가보훈부 일반회계 세입 결산 >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수납액(B)	예산 대비 수납률 (B/A)	세입예산 오차 (B-A)
2019년	7,948	3,041	38.3	△3,826
2020년	8,277	4,626	55.9	△3,651
2021년	8,820	4,019	45.6	△4,801
2022년	9,198	6,227	67.7	△2,971
2023년	9,573	3,498	36.5	△6,075

자료: 국가보훈부

- 이처럼 국가보훈부 일반회계 세입에서 해마다 약 30억원에서 60억 원 규모의 세입결손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3년도는 최근 5년 중 수납률도 제일 낮고 세입예산 오차도 60억원을 초과하였음.
- 세입예산은 각 세입항목 수납액의 예상치로서,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전년도 수납실적 즉 결산액은 가장 우선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있음.
- 그런데 최근연도 국가보훈부 세입 결산 및 예산안 편성액을 비교해 보면, 전년도 결산액과 다음연도 예산안 규모의 차이가 36억원~63억원(58.2%~181.9%)에 달함.

< 최근연도 국가보훈부 결산 및 예산안 비교 >

(단위: 백만원, %)

전년도 결산(A)		다음연도 예산안(B)		증감	
				(B-A)	(B-A)/A
2019년	3,041	2021년	8,820	5,779	190.0
2020년	4,626	2022년	9,198	4,572	98.8
2021년	4,019	2023년	9,573	5,554	138.2
2022년	6,227	2024년	9,851	3,624	58.2
2023년	3,498	2025년	9,861	6,363	181.8

자료: 국가보훈부

- ☐ 이러한 결산액과 예산안 간 괴리는 결산 실적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지 않고 전년도 예산액을 기준으로 편성하거나 전년도 예산액에서 일정 비율을 기계적으로 증액하는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2025년 세입예산 편성근거 >

(단위: 백만원, %)

연도	2023년 수납액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2025년 편성근거
토지대여료	52	65	65	전년 수준
건물대여료	37	94	94	전년 수준
기타재산이자수입	178	511	511	전년 수준
과태료	2	88	88	전년 수준
변상금	0.3	23	23	전년 수준
위약금	-	28	28	전년 수준
기타경상이전수입	2,111	8,652	8,912	전년 대비 3% 증액
면허료 및 수수료	3	3	3	23년 결산 수준 반영
기타잡수입	137	352	362	전년 대비 3% 증액
기타고정자산매각대	-	35	35	전년 수준

자료: 국가보훈부

< 최근연도 국가보훈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추이 >

(단위: 백만원,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안)
예산액	7,948	8,277	8,820	9,198	9,573	9,851	9,861
전년대비 증감률	+4.9	+4.1	+6.6	+4.3	+4.1	+2.9	+0.1

자료: 국가보훈부

- ☐ 앞으로 국가보훈부는 단순히 전년도의 예산액 또는 전년 예산액 대비 3% 증액 등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보다는 각 세입 항목의 수납율 추이, 최근 5년간 수납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기타경상이전수입 : 수납 규모를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기타경상이전수입’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국고 보조금 정산 반환금, 광복회관 임차보증금 반납금과 연납 등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억 6,000만원 증가(3.0%)한 89억 1,2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기타경상이전수입	2,111	8,652	8,912	260	3.0

자료: 국가보훈부

나. 검토의견

기타경상이전수입 항목은 결산상 한 번도 달성하지 못한 규모의 예산 편성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바, 국가보훈부는 전년 대비 3% 증액한 금액을 관례적으로 편성하는 것을 지양하고, 연도별 실제 수납액 규모나 수납률을 고려하여 정확한 세입예산을 계상할 필요가 있음

□ 세입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타경상이전수입의 경우 해마다 수납액이 예산액의 절반 수준임에도 2025년까지 꾸준히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5년 예산안 89억 1200만원의 편성 근거도 ‘전년 대비 3% 증액 요구’로 제시하고 있음.

○ 이러한 관행에 따라 기타경상이전수입 항목은 결산상 한 번도 달성하지 못한 규모의 예산 편성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최근연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 및 예산>

(단위: 백만원,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안)
예산액	7,319	7,622	7,851	8,155	8,400	8,652	8,652
결산액	2,509	4,231	3,454	5,430	2,111	-	-
수납률	34.3	55.5	44.0	66.6	25.1	-	-
전년대비 예산 증감률	+3.4	+4.1	+3.0	+3.9	+3.0	+3.0	-

자료: 국가보훈부

<최근 5년간 일반회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구분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율 (C/B)	불납 결손액 (D)	불납 결손율 (D/B)	미수납액 (E)
2023	보훈급여금 과오불	4,700	1,167	24.8	207	4.4	3,326
	국고보조금정산 반납금	925	875	94.6	0	-	50
	교육비지원과오불	133	127	95.5	0	-	6
	광복회관 임차보증금 반납금및이자	729	206	28.3	0	-	523
	의료지원비 과오불 등 기타	644	446	69.3	0	-	198
	계	7,131	2,821	39.6	207	2.9	4,102

연도	구분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율 (C/B)	불납 결손액 (D)	불납 결손율 (D/B)	미수납액 (E)
2022	보훈급여금 과오불	5,854	1,381	23.6	139	2.4	4,334
	국고보조금정산 반납금	3,493	3,443	98.6	0	-	50
	교육비지원과오불	100	94	94.0	0	-	6
	광복회관 임차보증금 반납금및이자	915	214	23.4	0	-	701
	의료지원비 과오불 등 기타	702	297	42.3	17	2.4	388
	계	11,065	5,430	49.1	156	1.4	5,479
2021	보훈급여금 과오불	5,879	1,187	20.2	189	3.2	4,503
	국고보조금정산 반납금	2,106	1,661	78.9	0	-	445
	교육비지원과오불	153	134	87.6	0	-	19
	광복회관 임차보증금 반납금	1,083	206	19.0	0	-	877
	의료지원비 과오불 등 기타	539	267	49.5	4	4	268
	계	9,760	3,454	35.4	194	2.0	6,112
2020	보훈급여금 과오불	3,048	626	20.5	30	1.0	2,393
	국고보조금정산 반납금	3,415	3,284	96.2	0	-	131
	교육비지원과오불	112	106	94.6	0	-	7
	광복회관 임차보증금 반납금	1,031	0	-	0	-	1,031
	의료지원비 과오불 등 기타	253	217	85.8	0	-	36
	계	7,859	4,232	53.9	30	0.4	3,598
2019	보훈급여금 과오불	3,506	1,031	29.4	226	6.4	2,249
	국고보조금정산 반납금	887	837	94.4	0	-	50
	교육비지원과오불	220	215	97.7	0	-	5
	광복회관 임차보증금 반납금	992	38	3.8	0	-	954
	의료지원비 과오불 등 기타	441	388	88.0	4	0.9	48
	계	6,046	2,509	41.5	230	3.8	3,307

자료: 국가보훈부

□ 한편,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저조한 구체적 사유를 보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보훈급여금 과오금금의 경우 납부의무자가 고령·질병으로 생계가 곤란하여 몇 년에 걸쳐 소액 분할 납부하는 경우가 많으며, 광복회관 임차보증금의 경우 '21년도부터 '26년까지 연도별 일정금액(2억 600만원)을 분할납부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연도별 보훈급여금 과오금금 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도별	징수 결정액 (A)	당해연도 신규발생액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2018년	3,893	729	760	2,772	361	19.5
2019년	3,506	874	1,031	2,249	226	29.4
2020년	3,048	632	626	2,392	30	20.5
2021년	5,879	3,514	1,187	4,503	189	20.2
2022년	5,854	2,423	1,381	4,334	139	23.6
2023년	4,700	1,520	1,167	3,326	207	24.8
2024.9월	4,161	1,127	728	3,295	137	17.5

자료: 국가보훈부

< 연도별 광복회관 임차보증금 과오금금 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도별	징수 결정액(A)	당해연도 신규발생액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2018년	958	500	-	958	-	-
2019년	1,011	54	38	973	-	3.8
2020년	1,031	58	-	1,031	-	-
2021년	1,083	52	206	877	-	19.0
2022년	915	384	214	701	-	23.4
2023년	723	22	206	517	-	28.4
2024.8월	534	11	155	379	-	29.0

자료: 국가보훈부

- 이와 같이 수납액의 규모나 수납률에 관계없이 세입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면 실제 세입 규모 측정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규모가 왜곡되어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국회에서 최근 매년 기타경상이전수입의 편성근거에 대해 지적을 받고 있으나,¹⁷⁾ 국가보훈부는 매년 ‘전년 대비 3% 증액’을 편성 근거로 제출하고 있음.

□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전년 대비 3% 증액한 금액을 관례적으로 편성하는 것을 지양하고, 연도별 실제 수납액 규모나 수납률을 고려하여 정확한 세입예산을 계상할 필요가 있음.

17) 2022~2024년 정무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3년 예결위 예산안 검토보고서 등

[세출]

1. 생활조정수당 : 생계지원금 적정 편성인원 반영 및 추계정확성 제고 필요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생활조정수당’은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에게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사업으로,¹⁸⁾ 2025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7억 7,200만원(△5.3%)이 감액된 847억 5,400만원이 편성됨.

< 2025년도 생활조정수당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생활조정수당	53,404	89,526	84,754	△4,772	△5.3
생계지원금	4,204	11,958	4,242	△7,716	△64.5

자료: 국가보훈부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생계지원금’은 보훈 관계 법률¹⁹⁾에 근거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등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참전유공자 등의 생활 안정에

18) 세부사업: 생활조정수당(1133-302)

19)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1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9조의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기여하려는 것으로, 2025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7억 1,600만원
(△64.5%)이 감액된 42억 4,200만원이 편성됨.²⁰⁾

< 생계지원금 사업 개요 >

☐ 지원 대상

- 80세 이상으로서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 대상자, 특수
임무유공자 또는 그 선순위 유족, 5·18민주유공자
- 생활수준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지원 내용 : 매월 10만원 정액 지급(가구당 연 120만원)

나. 검토의견

‘생계지원금’ 사업의 지급인원은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국가보훈부 고시) 개정에 따른 증가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과소 추계되
었으므로,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적정 지급인원이 반영될 필요가 있
으며, 국가보훈부는 보훈급여금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 ‘생계지원금’ 사업은 월 지원금액(지급단가)과 지급인원 추계를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되는데, 2025년의 경우 지급단가는 월 10만원
으로 전년과 동일함에도 지급인원을 전년 9,965명 대비 6,430명
감소한 3,535명으로 추계함으로써, 예산안이 전년 119억 5,800만원

20)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고시」 제8조의3(생계지원금) 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1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9조의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은 생활수준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아래 표의 기준금액의 5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대비 77억 1,600만원 감소하게 되었음.

- 이에 대하여, 국가보훈부는 2023년 국회 결산 심사과정에서 생계 지원비 지급인원의 연례적 과다계상에 대하여 지적받은 바 있으므로,²¹⁾ 2025년 지급인원은 기존 지급실적을 반영하여 추계하였다는 의견임.

< '25년 생계지원금 지급인원 추계 >

(단위: 명, %)

구분	지급인원			'24년 예산편성 인원	'25년 추계인원 (24년 대비)	비고
	'22년	'23년	증감률			
생계 지원금	3,490	3,505	0.4	9,965	3,535 (△6430)	'22~'23년 증감률 반영하여 추계

자료: 국가보훈부

- 동 사업은 2022년 신규 추진된 사업으로, 2022년과 2023년의 경우 편성인원을 과다 추계하여, 결국 각 회계연도의 집행실적이 저조하였음.

< '22년~'23년 생계지원금 사업 집행 실적 >

(단위: 명, 백만원)

구분	편성인원 (A)	지급인원 (B)	차이 (A-B)	예산액 (C)	집행액 (D)	차이 (C-D)	집행률 (D/C)
2022년	5,728	3,490	2,238	6,874	3,851	3,023	56%
2023년	6,770	3,505	3,265	8,124	4,204	3,920	51.7%

자료: 국가보훈부

- 그러나, 2023년 10월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국가보

2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훈부 고시)이 개정(시행일 2024.1.1.)되어,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는 과거 생계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요구하던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을 것’(이하 “부양의무자 요건”이라 함)을 미적용하게 되었고,²²⁾ 2024년 5월 개정에는 부양의무자 요건을 지급 요건에서 삭제하였음.²³⁾

○ 위 개정으로,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자인 참전유공자 등은 80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부양의무자 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히 생계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위 개정 시행일인 2024년 1월부터는 생계지원금 지급인원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 예상되었음.

○ 실제 2024년 생계지원금 지급인원은 7월 기준 6,329명으로, 전년 12월 대비 2,824명이 증가하였음.

22)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제3조(부양능력 등) ③ 부양의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전순위자(수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및 제8조의3의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때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본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3. 65세 이상 노인

23) < 2024년 5월 23일 개정 내용 >

2024. 5. 23. 개정 전	2024. 5. 23. 개정 후
제8조의3(생계지원금) 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의3, 「고엽제후유의증 등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1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9조의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5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은 생활수준조사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아래 표의 기준금액의 50% 이하)이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에게 지급한다. 1.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수권자 기준금액의 100분의 40과 해당 부양의무자 기준금액을 더한 금액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제8조의3(생계지원금) 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의3, 「고엽제후유의증 등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1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9조의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5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은 생활수준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아래 표의 기준금액의 5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 생계지원금 지급인원 변화 >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7월)	2025년 계획인원 (24년 지급인원 대비)
지급인원	3,490	3,505	6,329	3,535
전년대비 증가분	-	15	2,824	(△2,794)

자료: 국가보훈부

□ 그럼에도, 동 내역사업의 2025년 지급인원 추계는, 2024년 지급 대상자 증가를 전혀 고려할 수 없는 ‘22년과 ‘23년의 지급실적만을 고려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산출함으로써, 2025년 ‘생계지원금’ 편성 인원은 실제 지급인원보다 작을 것으로 보임.

○ 과거 보훈급여금과 관련된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것을 수차례 지적받았음에도,²⁴⁾ 이미 발생한 증가 요인을 2025년 지급인원 추계에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은 지급인원 추계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²⁵⁾

□ 따라서 생계지원금이 대상자에게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생계지원금’ 사업에 적정 지급인원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보훈부는 추계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4) 2024년 예산(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 결산(국회예산정책처), 2022년 결산(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25) 국가보훈부는 2024년 동 내역사업의 지급인원 추계 시에는 부양의무자 요건 변화를 고려하여 추계하였음에도, 2025년에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음.

※ 24년 지급인원 추계 방식: 23년 편성인원에 부양의무자 요건 완화 인원 3,195명 가산

2. 고엽제환자검진 : 고엽제질병 등록 지연 방지를 위한 사업관리 적극 대응 필요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고엽제환자검진’의 내역사업인 ‘검진비’는 고엽제피해 질병 등록신청자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 또는 2세 환자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검진을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그 검진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²⁶⁾ 2025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26억 6,400만원이 편성됨.

< 2025년도 고엽제환자검진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고엽제환자검진	2,867	2,667	2,667	-	-
검진비	2,864	2,664	2,664	-	-

자료: 국가보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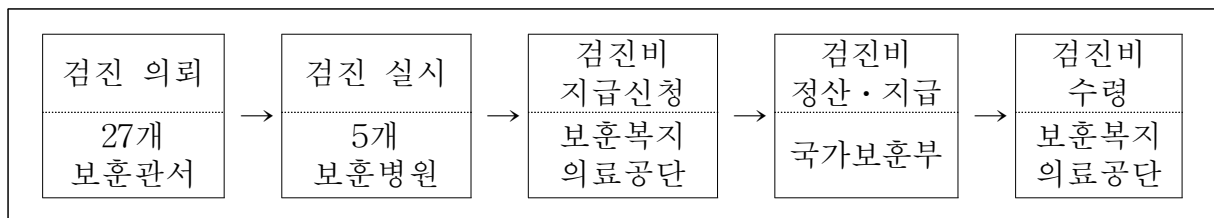
나. 검토의견

고엽제환자 등록을 위한 ‘검진비’ 사업의 2024년도 집행실적이 저조한 바, 국가보훈부는 고엽제환자의 등록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그 선행 절차인 ‘검진비’ 사업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26) 세부사업: 고엽제환자검진(1143-368)

□ ‘검진비’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 신청인 중 각 보훈관서에서 신청 질병에 대하여 검진을 의뢰한 자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검진비용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청구하면, 그 검진비용을 국가보훈부가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임.

< 검진비 사업 집행절차 >



자료: 국가보훈부

□ 동 사업의 최근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2024년 7월말 기준 집행률이 33.9%로 저조한 편이고, 이는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코로나 전담병원 지정 등의 사유로 검진이 축소되었던 2020년~2022년보다 낮은 수치임.²⁷⁾

< 최근 5개년 검진비 사업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A)	이·전용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불용액
2020	2,990	△712	2,278	2,251	75.3	98.8	27
2021	2,990	—	2,990	2,386	79.8	79.8	604
2022	2,990	—	2,990	2,294	76.7	76.7	696
2023	2,664	200	2,864	2,864	107.5	100.0	—
2024(7월말)	2,664	—	2,664	902	33.9	33.9	—

자료: 국가보훈부

27) 2021년 7월말 기준 집행률 38.8%, 2022년 7월말 기준 집행률 36%임.

□ 국가보훈부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에 대하여, 고엽제질병 특성상 만성·복합 질환 및 다수의 질병 신청으로 인하여 다양한 진단·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검사 결과 판독 등에도 다소 시일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2023년과 비교하여도 집행실적이 저조하고, 검진 소요기간이 길어진 것에 비추어 볼 때,²⁸⁾ 2024년의 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고엽제질병의 특수성이 아니라, 전공의 파업으로 보훈병원에 의료공백이 발생하였고,²⁹⁾ 이로 인하여 입원 검진 및 고가의 정밀검사 시행이 전년 대비 부진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특히, 전체 고엽제 검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중앙보훈병원의 신경과 검진이 부진하였음.³⁰⁾

< 고엽제검진 소요기간 >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8월말)
검진 소요기간*	39.8일	39.3일	39.0일	39.8일	54.2일	42.3일	43.6일	43.1일	47일
					(코로나로 인한 검진 축소)				

*검진 소요기간: 검진신청일부터 검진일까지의 기간
자료: 국가보훈부

28) (7월 기준 집행률) 2023년 44% → 2024년 33.9% / (검진 소요기간) 2023년 43.1일 → 2024년 47일

29) https://www.news1.com/view/NISX20240225_0002638536(보훈병원 전공의 66% 사직서 제출...유공자 진료 차질 우려, 2024.2.25.),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17128>(보훈병원, 전공의 53명 임용 포기...“이탈률 95%”, 2024. 3. 19.) 등

30) 국가보훈부는 중앙보훈병원과 협의하여 2024년 9월부터는 신경과 검진을 활성화할 예정이고, 다른 4개 지방보훈병원(부산, 대전, 대구, 광주)도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협의를 계속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 주요 검진 항목별 '23년 및 '24년 검진 시행 건수³¹⁾ >

(단위: 건, %)

주요 질병	주요 검진 항목	2023년 (A)	2024년 8월 말 (B)	감소율 (A-B/A)	비고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초음파-심장-(단순)경흉부심초음파	99	39	60.6	고혈압
파킨슨병	MRI Brain 촬영료[테슬라3.0이상+품질관리적합]	185	69	62.7	뇌경색증 중추 신경장애
	MRI Brain 판독료	195	81	58.5	
	PACS영상저장장치및전송비용/MRI	209	83	60.3	
	뇌 PET CT	654	208	68.2	
	PACS영상저장장치및전송비용/PET	598	170	71.6	
	해동에프다지주사(2-데옥사-2-플루오로-D-글루코스(18F))	98	9	90.8	
	듀캅(비)에프다지-20(2-데옥사-2-플루오로-D-글루코스(18F))	68	23	66.2	
	피디뷰주사(FP-CIT 18F)	139	48	65.5	
뇌경색증	진단초음파-혈관-뇌혈류	546	213	61.0	파킨슨병 중추 신경장애
	DIGITAL 각성뇌파검사-18채널이상	310	77	75.2	
중추 신경장애	진단초음파-혈관-(경동맥)두개외 혈관 도플러	152	45	70.4	파킨슨병 뇌경색증
	CDR치매척도검사	306	99	67.6	
	MMSE간이정신진단검사	338	119	64.8	
말초 신경병	신경전도검사/감각·운동(상·하지,편측)	2,726	895	67.2	다발성 신경마비 등
	신경전도검사/감각·운동(상·하지,양측)	612	98	84.0	
	F파신경전도검사(상·하지 편측)	746	238	68.1	
	F파신경전도검사(상·하지 양측)	283	44	84.5	
	(RM)신경전도검사(하지)감각신경	546	186	65.9	
간질환	ALT (SGPT) [화학반응-장비측정]	189	101	46.6	고지혈증 당뇨병 등
	AST (SGOT) [화학반응-장비측정]	189	101	46.6	
	정밀면역검사-B형간염표면항원(정성)	121	66	45.5	
	정밀면역검사-C형간염항체	121	65	46.3	

자료: 국가보훈부

☐ 그런데, 보훈병원 의료공백이 조기에 해결되지 못할 경우, 고엽제환자

검진 사업의 집행 부진은 2025년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임.

31) 2024년 8월말 기준 2023년 대비 검진횟수 감소율이 45%이상인 경우를 표시함.

< '24년 9월말 기준 보훈병원 전공의 정원 및 현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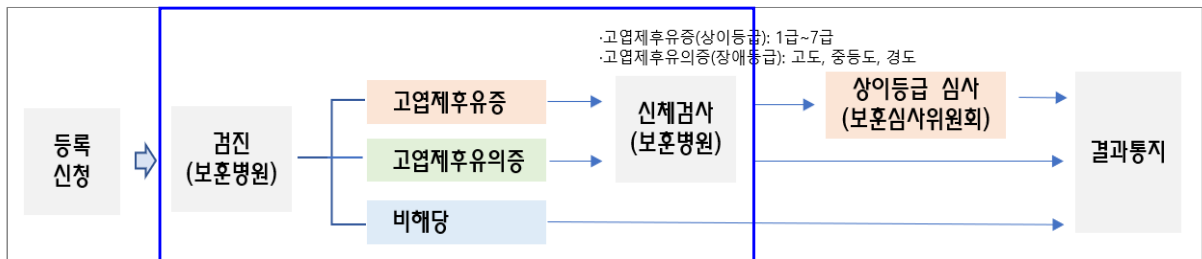
구분	정원	현원	비고
서울중앙보훈병원	110	9	△101
부산보훈병원	26	5	△21
대전보훈병원	12	0	△12
대구보훈병원	12	1	△11
광주보훈병원	23	2	△21

*치과는 제외된 수치임

자료: 국가보훈부

- 동 사업의 집행이 부진할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한 등록 절차가 지연될 수 밖에 없고, 이는 신청인들에 대한 보상 개시 지연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사업의 집행 관리가 보다 철저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 절차 >



* 음영: 고엽제 질병 등록 절차 중 '고엽제 환자검진' 사업으로 수행되는 절차

자료: 국가보훈부

-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동 사업의 집행 저조로 인하여 고엽제환자 등록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적극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 특히, 과거 코로나 담당병원 지정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하여 동 사업의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례가 있었음을 참고할 때, 예상되는 환경적 요인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3.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활동 등 : 성과지표 추가·변경 필요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활동 등(1238-315)’ 사업은 보훈단체에 인건비 및 복지회관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보훈단체 수익사업의 관리·감독을 수행하며 보훈단체의 각종 선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³²⁾ 2025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8억 3,900만원(△2.4%) 감액된 341억 2,000만원이 편성됨.

< 2025년도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활동등’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 감 (B-A)	(B-A)/A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활동 등	34,718	35,120	34,281	△839	△2.4

자료: 국가보훈부

32) 세부사업: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활동 등(1238-315)

나. 검토의견

보훈단체선양활동 세부사업의 성과지표는 일부 내역사업의 성과만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다른 내역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추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과거 실적보다 낮은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는 바, 목표치를 보다 도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운영되던 ‘보훈단체운영’ 사업과 ‘보훈단체선양활동등’ 사업은 2020년 보조사업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세부사업을 통합하여 1개의 사업으로 운영 중임.

□ 동 세부사업은 현재 성과지표로 ‘보훈단체 선양활동 참가자수’만을 측정하여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통합되기 전의 ‘보훈단체선양활동등’에서 활용하고 있던 성과지표임.

○ 통합 전 ‘보훈단체운영’ 사업은 ‘보훈단체에 대한 인식도’와 ‘복지회관 이용자 만족도’를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활용되고 있지 못함.

- 세부사업을 통합한 2021년도에는 성과지표로 ① (총괄) 보훈단체선양활동 참가자 만족도, ② (보훈단체운영) 복지회관이용자 만족도, ③ (보훈단체선양활동등) 보훈선양활동 등 참가자수 등 세 가지의 지표를 활용하였으나, 국가보훈부는 2022년부터는 현

재처럼 ③ (보훈단체선양활동등) 보훈선양활동 등 참가자수만을 활용하고, ①번과 ②번 지표는 삭제함.

□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현 성과지표는 보훈단체선양활동등 내역사업의 성과에 치중되어 있어 보훈단체운영 내역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마련이 필요하며, 보훈단체가 단체별 특성에 맞는 선양활동을 수행하고 투명한 단체운영을 통해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성과지표 마련이 필요함”을 사유로 개선을 권고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

□ 현재 성과지표인 ‘보훈단체 선양활동 참가자수’는 22년 100.2%, 2023년 168.3%의 달성률을 기록하는 등 지표수치가 굉장히 양호함.

<2025년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활동등 성과지표>

성과지표	구분	'21	'22	'23	'24	'25	'25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또는 자료출처)
보훈단체 선양활동 참가자수 (단위: 점)	목표	미설시	18,462	19,000	19,500	20,000	'24년 목표치 감안 전년 대비 약 3%p 상향	보훈단체 주관 보훈선양활동 참가인원 합산	결과 보고서
	실적	미설시	18,499	31,984	-	-			
	달성률	-	100.2	168.3					

자료: 국가보훈부

○ 특히 2023년에는 목표인 19,000명보다 약 22,000명이 많은 31,984명이 참가하였음에도, 2025년 목표치로 20,000명만을 설정함.

○ 이를 종합하면, 국가보훈부는 과거 실적보다 낮은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세부사업 성과목표 달성률을 높이기 위해 달성하기 용이한 성과지표만을 남겨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동 세부사업 중 ‘보훈단체운영 내역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추가적으로 마련하고, 기존 ‘보훈단체 선양활동 참가자수’의 실적을 감안하여 목표치를 보다 도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4. 지방보훈회관건립 : 연례적 집행 부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 철저 필요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지방보훈회관 건립’ 사업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친목도모와 여가선용을 위한 공간인 지방보훈회관 건립을 국가가 일부 지원함으로써 지방보훈회관의 건립을 촉진하려는 것으로,³³⁾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7억 5,000만원(△46.7%)이 감액된 20억원이 편성됨.

< 2025년도 지방보훈회관 건립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B)	증 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지방보훈회관 건립	2,989	3,750	3,750	2,000	△1,750	△46.7

자료: 국가보훈부

□ 동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부지와 지방비를 확보할 경우 국고를 보조하는 매칭펀드 사업으로, 매칭비율은 광역시·도는 총사업비의 50%(15억원 한도 내), 시·군·구는 총사업비의 30%(5억원 한도 내)임.³⁴⁾

33) 세부사업 : 지방보훈회관 건립(1238-321)

34) 「지방보훈회관 건립사업 지원 지침」 제10조(보조금 지원) ① 지방보훈회관 건립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부지와 지방비를 확보할 경우 국고를 보조하는 매칭펀드 사업으로 한다.

② 매칭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매칭비율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재정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지부 15억 원 한도 내에서, 지회 5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부터 건립을 추진한 5개소(화순군, 인천 연수구, 고창군, 진안군, 대구 달서구)에 대한 보조금 12억 7,500만원과 2025년도 신규로 건립을 추진할 3개소³⁵⁾에 대한 보조금 7억 5,000만원으로 구성됨.

나. 검토의견

‘지방보훈회관 건립’ 사업은 사업수행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연례적인 집행 부진과 이월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집행실적 점검, 성과지표 변경 등을 고려하고,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2025년도 예산안 중 12억 7,500만원은 2024년부터 건립 추진 (2025년 완공 계획) 중인 5개소에 대한 것으로, 위 5개소의 2024년 9월 말 기준 사업 진행 현황을 살펴보면, 9,200만원이 실집행된 진안군을 제외한 4개소는 실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화순군을 제외한 4개소는 ‘24년 9월 이후에야 착공이 이루어졌으며, 그 중 진안군의 경우에는 ‘25년 5월이 되어서야 착공이 진행될 예정임.

1. 지부는 국가 50%, 지방자치단체 50%

2. 지회는 국가 30%, 지방자치단체 70%

35) 예산안 확정 시 순창군, 사천시, 이천시가 지원대상으로 임시 결정될 예정임.

* 「지방보훈회관 건립사업 지원 지침」 제7조(지원대상 결정) 국가보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확보와 국고보조금 집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1. 정부 예산안 확정시 부지와 지방비 확보 등 사업수행을 위한 사전 절차이행 여부를 파악 후 지원대상을 임시 결정한다.

< 2025년 지원 예정인 2024년 신규 건립 사업 진행 현황³⁶⁾ >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			2025년	비고
	교부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예산안	
화순군	250	0	0	250	· 설계 용역('20.6.~'23.1.) · 착공 및 준공('23.2.~'25.3.) * 공정률 40%
인천 연수구	250	0	0	250	· 설계 용역('23.12.~'24.7.) · 착공 및 준공('24.9.~'25.12.) * 공정률 10.7%
고창군	250	0	0	250	· 설계 용역('23.7.~'24.8.) · 착공 및 준공('24.9.~'25.10.) * 공정률 6.5%
진안군	250	92	36.8	250	· 설계 용역('24.4.~'25.4.) · 착공 및 준공('25.5.~'26.6.) * 공정률 3.3%
대구 달서구	250	0	0	250	· 설계 용역('23.8.~'24.9.) · 착공 및 준공('24.10.~'25.12.) * 공정률 0%

자료: 국가보훈부

□ 한편, 2023년도부터 건립을 추진하여 2024년도 완공 계획인 7개소의 사업 진행 현황을 살펴보면, 용인시 등 3개소를 제외한 4개소에서 2023년도 예산을 이월하였고, 속초시, 진천군은 2025년도 하반기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므로 2024년 예산도 상당 부분이 이월될 것으로 보임.

36) 24년도 신규 건립 사업이었던 서울 송파구는 지방비 미확보로 사업을 포기하였고, 동해시는 단년도 사업으로 2024년 전액(5억원) 지원되었으나, 실집행액 2억 2,000만원, 공정률 57%로 당초 계획('24년 9월)보다 준공이 지연되었음.

< 2023년 신규 건립 추진 중인 7개소 사업 진행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비고
	예산액	교부액	실집행액	이월액	예산액	교부액	예산 현액	실집 행액	
용인시	250	250	250	0	—	—	—	—	·설계 용역(' 21.1.~ ' 21.12.) ·착공및 준공(' 22.7.~ ' 24.12.) * 공정률 80%
안동시	250	250	250	0	250	250	250	34	·설계 용역(' 23.3.~ ' 24.3.) ·착공및 준공(' 23.12.~ ' 25.2.) * 공정률 57%
김포시	250	250	250	0	—	—	—	—	·설계 용역(' 22.3.~ ' 23.3.) ·착공및 준공(' 24.3.~ ' 25.3.) * 공정률 35.8%
강진군	239	239	2	237	250	250	487	237	·설계 용역(' 22.12.~ ' 23.2.) ·착공및 준공(' 24.5.~ ' 25.1.) * 공정률: 28.8%
속초시	250	250	0	250	250	250	500	286	·설계 용역(' 23.5.~ ' 23.7.) ·감사지적사항 절차 재이행 ·착공및 준공(' 24.8.~ ' 25.8.) * 공정률 15%
진천군	250	250	0	250	—	—	250	150	·설계 용역(' 23.12.~ ' 24.9.) ·착공및 준공(' 24.11.~ ' 25.11.) * 공정률 5.9%
대규모	250	250	0	250	—	—	250	0	· 사업계획 변경(구입⇒임차) 으로 ' 23 국비 반납, ' 24 국비 포기 예정

자료: 국가보훈부

□ 이상을 종합하면, ‘지방보훈회관 건립’ 사업은 지방비 확보 등 사전절차 이행 부족, 보훈단체와의 이견 등으로 인하여 당초 예정되었던 사업 기간의 지연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례적인 집행 부진이 발생하고 있음.

○ 한편,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전년도 실적, 연내 집행 가

능성, 이월금 보유현황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함에도,³⁷⁾ 교부된 금액의 약 68%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월되고 있음.

< 최근 5개년 지방보훈회관 건립 사업 보조금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국가보훈부		지방자치단체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A)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B)	이월률 (B/A)
2020년	2,250	2,000	2,000	1,234	3,234	1,670	1,564	78.2
2021년	1,955	1,955	1,955	1,564	3,519	1,629	915	46.8
2022년	2,605	2,250	2,250	915	3,165	1,649	1,516	67.4
2023년	3,344	2,989	2,989	1,516	4,505	1,980	2,280	76.3
2024년(9월)	3,750	2,500	2,500	2,280	4,780	1,781	—	—

자료: 국가보훈부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지방보훈회관 건립’ 사업은 예산 편성 및 집행 단계에서 부지·지방비 확보 등 사업수행 여건 정도,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고, 집행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등 동 사업의 집행 부진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 2024년도부터 계속 추진 중인 5개소에 대한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전년도 집행실적, 사업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37) 「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18조(보조금 교부방법) ②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 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실적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연내 집행가능한 금액을 편성·교부할 필요가 있음.

○ 2025년도에 신규 추진할 3개소에 대해서는 부지 확보, 지방비 확보 등 사전절차 이행 정도를 면밀히 점검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사업 전체적으로는, 집행 단계에서 사업계획에 따른 집행실적을 조기에 점검하고, 보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고려하여 볼 수 있으며, 성과지표 자체를 실집행률, 공정률과 같은 기준으로 변경하여 사업 진행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³⁸⁾³⁹⁾

□ 국가보훈부는 이상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지방보훈회관 건립’ 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연례적인 집행 부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할 것으로 보임.

38) ‘재정비축진사업지원’ 사업(국토교통부, 자치단체자본보조, 국고보조율 10~50%)은 전년도 교부금의 실집행률이 50% 미만인 경우 실집행률에 따라 교부금액을 삭감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지원’ 사업(국토교통부, 자치단체자본보조, 국고보조율 50%)은 ‘연간 추진계획 대비 기반시설 공정률’을, ‘종교문화시설건립’ 사업(문화체육관광부, 자치단체자본보조, 국고보조율 정액·30%)은 ‘당해년도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액’을 각각 성과지표로 활용하고 있음.

39) 반면, 동 사업은 현재 ‘지방보훈회관 이용자 만족도’(건립지원지역 보훈회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자체 표본 설문조사 활용)를 성과지표로 활용하고 있음.

5. 교통시설 이용지원 : 시내버스 이용 지원금 미보전액 처리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교통시설이용지원’은 애국지사 및 상이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등의 교통권 보장과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교통시설의 운임을 보전하는 사업으로,⁴⁰⁾ 2025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억원(5.3%) 감액된 107억 2,9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교통시설이용지원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교통시설이용지원	10,793	11,329	10,729	△600	△5.3
· 민영버스	8,359	8,484	8,484	-	-
· 고속철도	2,163	2,163	2,163	-	-
· 내항여객선	82	82	82	-	-
· 교통이용실적 DB 등	74	-	-	-	-
· 무인발매기 개발 등	-	600	-	△600	순감

자료 : 국가보훈부

40) 세부사업: 교통시설이용지원(2139-318)

나. 검토의견

시내버스 이용요금을 대신 납부해 준 ‘교통복지카드 사업 수행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미보전액이 계속 누적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고 예산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이 사업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⁴¹⁾ 등의 법률 및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국가보훈부 훈령)」에 근거하여 상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교통시설 이용요금을 지원하는 것임.

<교통시설이용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국가보훈부 훈령 별표)>

수송시설의 종류	이용지원 대상	지원내용
철 도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5.18민주부상자	연간 6회 무임 7회 이후 50% 할인 * 애국지사 및 1~2급상이(장해)자 동반보호자1인포함
지 하 철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5.18민주부상자	무임 * 애국지사 및 1급상이(장해)자 동반보호자1인포함
고속버스	애국지사, 상이1~5급, 1~7급 5·18부상자	50% * 애국지사 및 1급상이(장해)자 동반보호자1인포함
	상이6~7급, 8~14급 5·18부상자	30%

4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수송시설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輸送施設)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경우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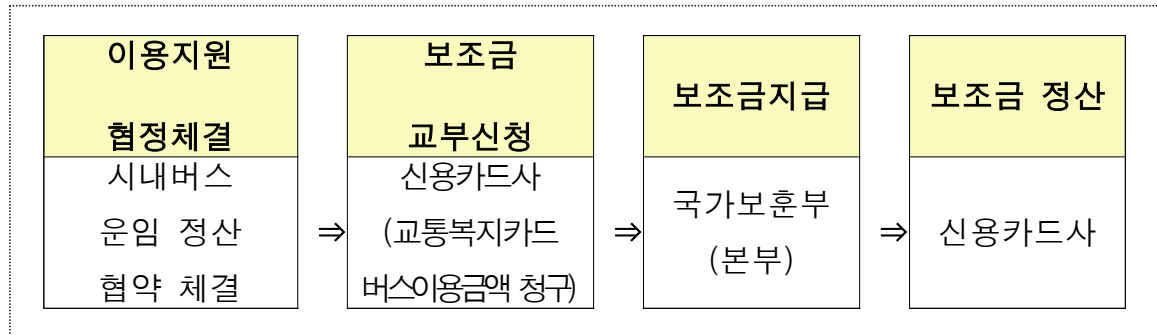
수송시설의 종류	이용지원 대상	지원내용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애국지사, 상이국가유공자, 5·18부상자	무임 * 애국지사 및 1급상이(장해)자 동반보호자1인포함
시외버스	애국지사, 상이1~5급, 1~7급 5·18부상자	70% * 애국지사 및 1급상이(장해)자 동반보호자1인포함
	상이 6~7급, 8~14급 5·18부상자	30%
내 항 여 객 선	애국지사, 상이국가유공자(1~5급) 5·18민주부상자 (장해1~7등급)	무임 * 애국지사 및 1급상이(장해)자 동반보호자1인포함
	상이국가유공자(6~7급) 5·18민주부상자 (장해 8~14등급)	50%
국 내 선 항 공 기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5·18민주부상자	50%
	기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30%

□ 이 중 ‘민영버스’ 내역사업은 교통시설이용지원 대상자의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등 이용 운임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 예산안은 전년과 같은 84억 8,400만원이 반영되었음.

□ 그런데, 시내버스 이용 지원금에 대한 미보전액이 계속 누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에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문제가 있음.

○ 국가보훈부는 2022년에 64억 2,800만원이 투입된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2023년부터는 교통복지카드 이용금액을 통해 지원 대상자의 시내버스 이용실적이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음.

<시내버스 이용 사업 집행절차>



자료: 국가보훈부

- 이에 따라 시내버스 이용요금을 대신 납부해 준 ‘교통복지카드 사업 수행자⁴²⁾’에 대해 국가보훈부가 대납액을 정산해 주어야 하는데, 국가보훈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시내버스 무임 탑승에 따른 대납액 111억 5,400만원 중 실제 보전이 이루어진 금액은 72억 6,200만원에 불과함.

<2023년 민영버스 요금 대납·할인액 및 보전액>

(단위: 백만원)

교통수단별	대납·할인액	예산편성액 (보전율)	실집행액 (보전율)	미보전 금액 처리 방안
시내버스	11,154	7,262 (65.1%)	7,137 (63.9%)	'24년 예산에서 집행
시외·고속버스	1,222	1,222 (100%)	1,222 (100%)	-
고속철도	6,217	2,163 (34.8%)	2,163 (34.8%)	예산의 범위 내 보조금 지급
내항여객선	197	82 (41.6%)	197 (100%)	-

주) 2023.1.1.부터 전국호환교통복지카드 사업 시행으로 시내버스 이용요금 실제 대납액 산출 가능

자료: 국가보훈부

42) 2024년 기준 사업 수행자는 신한카드(주)임.

○ 그리고 나머지 40억 1,700만원은 2024년 예산으로 2024년 6월 3일에 보전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4년에 이용한 시내버스 요금에 대한 지원금 예산 잔여액은 31억 8,300만원에 불과하여, 2024년 1분기 사용액(31억 2,000만원)만 정산하더라도 대부분 소진됨.

○ 따라서 2023년에 약 40억원 규모였던 미보전금액이 올해는 80억원 이상(2, 3, 4분기 요금 대납액 대부분 미보전 예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산안대로라면 내년 말에는 120억원 이상 규모의 미보전액이 누적될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이 전년도 사용분에 대해 보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차년도 또는 차차년도 예산으로 충당하는 집행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⁴³⁾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추후 대규모 재정이 한꺼번에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을 유발한다는 점에서도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교통시설이용지원’ 이용지원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시내버스 이용 지원금 미보전액 누적 문제에 대한 해결 대책을 논의하고, 이를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3)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6. 보훈병원 진료: 보훈병원 진료비 적정 규모 편성 필요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보훈병원 진료’는 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를 국가가 지원하고 보훈병원정보시스템을 통합·재구축하는 사업으로,⁴⁴⁾ 2025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억 6,500만원(0.1%) 증가한 3,922억 9,6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보훈병원 진료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보훈병원 진료	429,261	392,031	392,296	265	0.1
· 보훈병원 진료비	429,080	387,148	385,278	△1,870	△0.4
· 차세대 보훈병원 정보시스템 구축	181	4,883	7,018	2,135	43.7

자료: 국가보훈부

나. 검토의견

보훈병원 진료비는 해마다 예산이 부족하여 대규모 이·전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2025년 예산안은 올해 예산 대비 18억 7,000만원 감소한 금액이 편성되었는바,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44) 세부사업: 보훈병원 진료(2150-365)

□ ‘보훈병원 진료비’ 내역사업은 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8억 7,000만원(0.4%) 감소한 3,852억 7,800만원이 편성됨.

□ 그런데, 최근연도 보훈병원 진료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해마다 예산액 대비 집행액의 차이가 상당액 발생하여 대규모 이·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2023년에는 당초 예산액 대비 초과 집행액(예산부족액)이 393억 8,500만원에 달했음.

<최근연도 보훈병원 진료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5개년 평균	2024년 (7월말)	2025 예산안
본예산 (A)	409,597	381,735	385,503	385,475	389,695	390,401	387,148	385,278
예산현액	400,592	379,018	395,011	384,067	429,080	397,554	387,148	
집행액 (B)	387,988	379,018	395,011	383,634	429,080	394,946	326,000	
과부족 (A-B)	21,609	2,717	△9,508	1,841	△39,385	△4,545	-	-

자료: 국가보훈부

□ 그런데, 2024년 예산은 직전 연도인 2023년 예산·결산 규모와 2019~2023년 5개년 평균 예산·결산 규모에 비해 낮은 수준인 3,871억 4,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7월말 기준으로 이미 3,260억원이 집행(집행률 84.2%)되어 2023년보다 더 큰 규모의 예산

이·전용이 불가피한 상황임.

<2023년 및 2024년 7월말 기준 집행 실적 비교>

(단위: 백만원)

구분	본예산	7월말 기준 집행액 및 집행률
2023년	389,695	236,500 (60.1%)
2024년	387,148	326,000 (84.2%)

자료: 국가보훈부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훈병원 진료비 2025년 예산안은 올해 예산 대비 18억 7,000만원 감소한 금액이 편성되었는바, 예산안 편성 규모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 한편, 본 사업에서는 올해 2회에 걸쳐 55억 9,600만원 규모의 예비비⁴⁵⁾를 배정받아 집행하고 있는데, 동 예비비는 보훈병원 전공의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인력 인건비 용도로 집행 중임.

<2024년 예비비 배정액 및 집행 용도>

(단위 : 백만원)

구분	배정액	용도
1차('24.3월)	3,085	▶ 보훈병원 전공의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인력 인건비 - 전공의 대신 투입되는 전문의 당직비 - 전공의를 대체할 의사, 의료행위를 보조할 간호사 인력 채용비
2차('24.5월)	2,511	
계	5,596	

자료: 국가보훈부

45)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보건복지부 2,003억 9,800만원, 국가보훈부 55억 9,600만원의 예비비가 배정됨.

□ 2024년 10월말 기준 예비비 집행액은 45억 5,700만원으로 3월 최초 배정 이후 8개월간 집행률은 81.4% 수준이며, 연말까지 집행기간이 10개월임을 감안할 때 연도 내에 예비비는 대부분 소진될 것으로 전망됨.

<2024년 예비비 배정액 및 집행 현황>

(2024.10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A)	교부액(B)	실집행액(C)	집행률(C/A)
예비비	5,596	5,596	4,557	81.4%

자료: 국가보훈부

□ 따라서, 의료공백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예상된다면, 보훈병원 인력 공백 방지를 위한 예산을 면밀히 산출하여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7. 위탁병원 진료 : 적정 규모 예산 편성 필요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위탁병원 진료’는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를 국가에서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진료비를 보전하는 사업으로,⁴⁶⁾ 2025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2억 200만원(2.8%) 감소한 2,491억 1,3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위탁병원 진료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위탁병원 진료	275,385	256,315	249,113	△7,202	△2.8
· 위탁병원 진료	272,987	253,932	246,715	△7,217	△2.8
· 위탁진료관리비	2,383	2,383	2,383	-	-
· 우수위탁병원인증제	15	-	15	15	순증

자료: 국가보훈부

나. 검토의견

해마다 예산이 부족하여 대규모 이·전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2025년 예산안은 올해 예산 대비 72억 200만원 감소한 금액이 편성되었는바,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46) 세부사업: 위탁병원 진료(2150-366)

□ 최근연도 동 사업의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해마다 예산액 대비 집행액의 차이가 상당액 발생하여 대규모 이·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예산액 대비 초과 집행액(예산부족액)이 연평균 107억 3,800만원에 달했음.

○ 이와 같이 예산 부족으로 인한 이·전용이 발생하여 다른 사업의 집행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반복됨에 따라, 국회는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적정 진료비를 편성하여 예산편성 목적에 맞는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결산 심사과정⁴⁷⁾에서 지속적으로 시정요구하였음.

<최근연도 위탁병원 진료 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5개년 평균	2024년 (7월말)	2025 예산안
본예산 (A)	247,893	226,806	234,985	252,556	267,441	245,936	256,315	249,113
예산현액	255,994	251,995	250,511	252,556	275,385	257,288	256,315	
집행액 (B)	255,994	251,995	250,511	249,484	275,385	256,674	193,666	
과부족 (A-B)	△8,101	△25,189	△15,526	3,072	△7,944	△10,738		-

자료: 국가보훈부

□ 그런데, 2024년 예산은 2023년 예산·결산 규모와 2019~2023년

47) 2019회계연도 결산, 2020회계연도 결산, 2021회계연도 결산

5개년 평균 집행액보다 낮은 수준인 2,563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7월말 기준으로 이미 1,936억 6,600만원이 집행(집행률 75.6%)되어 2023년보다 더 큰 규모의 예산 이·전용이 불가피한 상황임.

<2023년 및 2024년 7월말 기준 집행 실적 비교>

(단위: 백만원)

구분	본 예산	7월말 기준 집행액 및 집행률
2023년	267,441	148,880(55.7%)
2024년	256,315	193,666(75.6%)

자료: 국가보훈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병원 진료 사업의 2025년 예산안은 2024년보다도 대비 72억 200만원 감소한 2,491억 1,300만원이 편성되었는바, 예산안 편성 규모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8. 보철구 지급 : 보철용 차량 개조지원 사업 집행률 및 사업효과 제고 필요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보철구 지급’은 상이 국가유공자에게 손상된 신체부위를 보완해 주고 생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보철구 또는 차량 보조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⁴⁸⁾ 2025년 예산안은 전년과 같은 60억 2,6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보철구 지급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보철구 지급	6,064	6,026	6,026	-	-
· 보철구 지급 및 수리	5,997	5,845	5,845	-	-
· 보철구 담당자 교육	6	6	6	-	-
· 보철용 차량 개조지원	61	175	175	-	-

자료: 국가보훈부

나. 검토의견

보철용 차량 개조지원 사업의 집행 실적이 저조하므로, 대상자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적극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집행률 및 사업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48) 세부사업: 보철구 지급(2150-371)

□ ‘보철용 차량 개조지원’ 내역사업은 신체 장애가 있는 상이 국가 유공자 등이 본인의 신체 조건에 맞는 보조장치 장착 등 보철용 차량을 개조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부터 신규로 편성되었음.

□ 그런데, 2023년 결산에 따르면 예산액 2억 5,000만원 중 6,164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24.7%에 그쳤으며, 2024년에도 9월말까지 집행액이 4,737만원(예산액 1억 7,500만원의 27.1%)에 불과한 상황임.

<‘보철용 차량 개조지원’ 내역사업 연도별 편성·집행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안)
예산액	250,000	175,000	175,000
집행액	61,640	47,370 (1~9월)	-
집행률	24.7	27.1	-

자료 : 국가보훈부

□ 2024년 9월까지의 월평균 집행액(526만원)을 적용하여 연말까지의 집행액을 예상해 보면, 2024년 집행 예상액은 약 6,316만원(집행률 36.1%), 불용액은 약 1억 1,184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2024년 ‘보철용 차량 개조지원’ 내역사업 집행 실적 예상>

(단위: 천원, %)

연도	9월까지 월평균 집행액(A)	예상 집행액 (A×12)	예상 불용액	예상 집행률
2024년	5,263	63,160	111,840	36.1

자료 : 국가보훈부

□ 이와 같이 내역사업 신규 추진 이후 예산액에 크게 못미치는 집행실적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는 동 내역사업의 2025년 예산안을 전년과 같은 1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바, 이는 합리적인 예산 편성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특히, 국가보훈부는 예산안에 대한 산출근거를 1,500만원×12명으로 제시하였는데,⁴⁹⁾ 건당 집행액이 2023년의 경우 294만원, 2024년의 경우 249만원으로 나타났음에도 지나치게 높은 금액으로 건당 지원금액을 설정하였음.

<‘보철용 차량 개조지원’ 내역사업 집행액 및 집행건수>

(단위: 천원, 건)

구분	2023년	2024년(9월말 기준)
집행액(A)	61,640	47,370
집행건수(B)	21	19
건당 집행액(A/B)	2,935	2,493

자료 : 국가보훈부

49) 2024년 예산의 경우에도 동일한 산출식을 적용함.

□ 따라서, ‘보철구 지급’ 세부사업의 2025년 예산안에 대해서는 ‘보철용 차량 개조지원’ 내역사업에서 최근 집행 추세에 비해 과다하게 산출된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후, 이를 로봇의족·의수 등 첨단 보철구 지급 및 품질 개선 추진을 위한 예산⁵⁰⁾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 내역사업을 새롭게 추진한지 이제 3년차를 맞이하는 시점임을 감안하여, 상이 국가유공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대상자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적극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집행률 및 사업효과를 제고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50) 국가보훈부는 동 세부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자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에 “로봇의족·의수 등 첨단 보철구 지급 및 품질 개선 추진을 위한 예산 반영”을 부처 건의사항으로 제시함(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P.270.)

9. 제대군인의료지원 : 적정 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제대군인 의료지원’ 사업은 전·공상을 입고 전역하였으나 상이등급 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진료비·보철구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23억 6,5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제대군인의료지원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 감 (B-A)	(B-A)/A
제대군인의료지원	4,649	2,365	2,365	-	-

자료: 국가보훈부

나. 검토의견

제대군인 의료지원 사업은 2018년 이래 매년 과소계상으로 인한 부족분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국가보훈부는 예산 편성과정에서 관행적으로 동일한 예산규모와 추계방식을 고수하여 예산 편성 시 동일한 금액을 계상하고 있음.

향후 국가보훈부는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강화하는 등 국회 지적사항을 조속히 수행하여 적정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제대군인 의료지원 사업은 2018년 이래 매년 과소계상으로 인한 부족분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예산 편성 시 동일한 금액을 계상하고 있음.
- 2018년부터 6년간 보훈병원 진료사업에서 내역변경을 3번하였고, 나머지는 각각 고엽제수당 세부사업/보상금 세부사업/참전명예수당 세부사업에서 1번씩 이용하는 등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에서 이·전용 등이 반복되고 있음.
- 2024년 또한 7월 기준 집행액이 18억 800만원으로, 2024년도 부족분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부족분은 타 사업에서 이·전용 등으로 충당해야 할 것으로 예상됨.

<연도별 제대군인 의료지원 사업 예산액 및 부족분 발생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A)	집행액(B)	부족분(B-A)	이·전용 등
2018	2,365	5,316	2,951	보훈병원 진료사업에서 내역변경 2,951
2019	2,365	3,269	904	보훈병원 진료사업에서 내역변경 904
2020	2,365	3,275	910	고엽제수당 세부사업에서 이용 910
2021	2,365	3,649	1,284	보상금 세부사업에서 이용 1,284
2022	2,365	3,773	1,408	보훈병원 진료 세부사업에서 내역 변경 1,408
2023	2,365	4,649	2,284	참전명예수당 세부사업에서 이용 2,284
2024.7	2,365	1,808		

자료: 국가보훈부

□ 최근 5년간(2020-2024년) 본예산 산출내역을 보면, 매년 실적단가의 반영 비율을 임의로 조정하여 총액을 동일한 금액(23억 6,500만원)으로 산출하고 있으며, 이는 2025년도 예산안도 마찬가지임.

○ 국가보훈부는 2023년부터 보훈병원 진료비는 최근 3년간 평균액을 반영한 반면, 위탁병원 진료비는 예산액 23억 6,500만원 중 보훈병원 진료비와 보철구 지급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편성하고 있음.

<2020-2025년 예산규모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본예산	산출내역
2020	2,365	▶ 보훈·위탁병원 진료비 2,299 - 2018년 실적단가에 최근 3년 진료단가 평균증감율 반영(단, 위탁병원 약제비 인원은 7.3%만 반영)
2021	2,365	▶ 보훈·위탁병원 진료비 2,300 - 2019년 실적단가 반영(단, 위탁병원 약제비 인원은 25.2%만 반영)
2022	2,365	▶ 보훈·위탁병원 진료비 2,301 - 2019년 실적단가 반영(단, 위탁병원 약제비 인원은 25.2%만 반영)
2023	2,365	▶ 보훈·위탁병원 진료비 2,301 - 2019~2021년 실적단가의 평균값(단, 위탁병원 단가는 53% 수준 반영)
2024	2,365	▶ 보훈·위탁병원 진료비 2,301 - 2020~2022년 실적단가의 평균값(단, 위탁병원 단가는 53% 수준 반영)
2025	2,365	▶ 보훈·위탁병원 진료비 2,301 - 2021~2023년 실적단가의 평균값(단, 위탁병원 단가는 45% 수준 반영)

자료: 국가보훈부

<2025년 예산안 산출근거>

(1) 보훈병원 진료 : 1,062백만원(전년 대비 +61백만원, +6.1%)

○ 보훈병원 진료비 소요액 : 1,062백만원

- 2021~2023년 결산인원 및 단가의 평균값 적용

구분	인원(명)				단가(원)				①×② 2025예산 (백만원)
	2021	2022	2023	① 2025인원	2021	2022	2023	② 2025단가	
계	6,801	6,619	7,307	6,909	154,001	141,798	164,142	153,745	1,062
입원	636	320	839	598	378,620	337,683	316,867	344,390	206
외래	6,165	6,299	6,468	6,311	130,829	131,847	144,331	135,669	856

(2) 위탁병원 진료 : 1,239백만원(전년 대비 △61백만원, △4.7%)

○ 위탁병원 진료비 소요액 : 1,239백만원

- 2021~2023년 결산인원 및 단가의 평균값을 적용하되,
인원을 실소요의 일부만 반영(입원/외래인원은 45%, 약제비 인원은 41.2%)

구분	인원(명)				단가(원)				①×② 2025예산 (백만원)
	2021	2022	2023	① 2025인원	2021	2022	2023	② 2025단가	
계	25,572	27,813	32,965	12,953	99,196	99,601	102,715	95,656	1,239
입원	3,864	4,212	5,436	2,027	101,507	101,674	78,855	94,012	190
외래	21,708	23,601	27,529	10,926	31,566	30,973	35,673	32,737	358
약제	21,708	23,601	27,529	10,000	67,218	68,258	71,754	69,077	691

(3) 보철구 지급 : 64백만원(전년 동일)

자료: 국가보훈부

<최근 3년 간 위탁병원 진료 내역사업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액 (A)	내역	집행액 (B)	집행률 (B/A)
2021	1,237	▶'19년 진료인원 및 단가 반영 * 단, 약제비 인원은 외래인원의 25.2%만 반영	2,537	205.1%
2022	1,237	▶'19년 진료인원 및 단가 반영 * 단, 약제비 인원은 외래인원의 25.2%만 반영	2,770	223.9%
2023	1,186	▶'19~21년 진료인원 및 단가의 평균값으로 반영 * 단, 단가는 53% 수준으로 반영	3,386	285.5%
2024	1,300	▶'20~22년 진료인원 및 단가의 평균값으로 반영 * 단, 입원 및 외래단가는 66.3% 수준, 약제비 단가는 40.7% 수준으로 반영		

자료: 국가보훈부

□ 매년 같은 금액이 예산에 계상되기 시작한 2018년 이래 국회는 2019·2020·2021·2022 및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통해 매년 동사업 예산추계의 부정확성을 시정·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음. 이에 국가보훈부는 조치사항으로 “대상별 진료인원 및 단가 등 진료실적의 추이 및 과거 진료비 결산치 등을 고려하여 적정 진료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매년 밝히고 있으나, 몇 년째 개선되고 있지 않음.

○ 국가보훈부는 예산 편성과정에서 관행적으로 동일한 예산규모와 추계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매년 동 사업 예산이 부족함에도 이·전용 등으로 충당이 가능하다는 것은, 국가보훈부의 단위사업별/세부사업별 예산안 편성이 촘촘하지 않고 엉성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함.

○ 부족분을 지급하기 위해 타 사업예산을 이용 또는 전용하는 것은 적절하게 편성된 타 사업의 목적 달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할 수 있음.

□ 향후 국가보훈부는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강화하는 등 국회 지적사항을 조속히 수행하여 적정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동 사업 외에도 전체 사업 전반에 관하여 적정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검토하여 단위/세부사업별로 예산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10. 현충시설 건립 : (가칭)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 사업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현충시설건립 세부사업의 내역사업 중 하나인 “(가칭)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 건립사업은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모든 독립운동이 균형감 있게 계승될 수 있도록 독립운동계열 중심으로 기념관을 조성하여 독립운동에 대한 공감·소통의 장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4억 3,9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됨.
- 국가보훈부는 동 기념관의 추진배경으로 광복 80주년 계기, 국내에서 일어난 교육·문화·계몽·학생운동 등 다양한 독립운동을 선양·홍보하여 국내 독립운동의 활동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미래세대의 보훈의식을 고취시켜 일상 속 보훈문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힘.

<2025년도 (가칭)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 감 (B-A)	(B-A)/A
현충시설건립	12,458	7,083	7,758	675	9.5
(가칭)국내민족 독립운동기념관	-	-	439	439	순증

자료 : 국가보훈부

< 사업개요 >

○ 사업위치 : 수도권 등
○ 사업기간 : '25~27년(3년)
○ 소요예산 : 245억원
○ 사업규모 : 지하 1층 ~ 지상 2층(연면적 5,000㎡)
○ 사업내용 : 다목적교육장, 전시실, 회의실 등

자료 : 국가보훈부

- 동 사업의 총 예산은 245억원으로, 이 중 2025년도 예산안은 기본
조사설계비 3억 9,900만원과 시설부대비 4,000만원 등 총 4억
3,900만원으로 편성됨.

< 연도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원)

구 분		'25년	'26년	'27년
설계비	1,330	399	931	-
공사비	20,600	-	6,180	14,420
감리비	2,370	-	711	1,659
시설부대비	200	40	40	120
합 계	24,500	439	7,862	16,199

자료 : 국가보훈부

< 사업비 세부산출내역 >

구분	세부산출기준
총사업비	24,500백만원
설계비	○ 설계비 : 1,330백만원 - 총공사비 20,600백만원×0.0451 ≒ <u>930백만원</u> - 보상비, 인·허가 용역비 등 = <u>400백만원</u> * 공사비×건설부문요율 * '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세부지침(실시설계요율) <추가비용> ① 설계공모 보상비: 200백만원 ② 인허가 등 비용 : 200백만원
공사비	○ 공사비 : 20,600백만원 - 건립공사: 3,118,522원/㎡ × 5,000㎡ ≒ <u>15,600백만원</u> * <조달청 유형별(전시시설)공사비 현황> ① 호남호국기념관 건립: 연면적 4,898.62㎡, 공사비 135억원(2,743,749원/㎡) ② 해양생태과학관 건립: 연면적 7,776.83㎡, 공사비 211억원(2,707,495원/㎡) ③ 한국가스안전공사 체험교육관 건립: 연면적 2,153.8㎡, 공사비 346억원(3,456,770원/㎡) ④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연면적 17,318.88㎡, 공사비 618억원(3,566,071원/㎡) → 단위면적당 공사비 평균값 적용 : 3,118,522원/㎡ ※ 현재 공사비는 낙찰률이 적용된 금액임 - 전시공사: 500평(1,650㎡) × 10백만원 = <u>5,000백만원</u> * 평당 단가 기준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전시관 구성 단가(10백만원)
감리비	○ 감리비 : 2,370백만원 - 총공사비 20,600백만원×0.0897 ≒ <u>1,849백만원</u> - 조달청 맞춤형 서비스 수수료 = <u>521백만원</u> * 공사비×건설부문요율 * '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세부지침(감리비 요율) * 기획·설계관리 맞춤형서비스 수수료 : 214,200,000원 40,000,000,000 * 0.0042 = 168,000,000 10,000,000,000 * 0.00462 = 46,200,000 * 시공관리 맞춤형서비스 수수료 : 306,900,000원 40,000,000,000 * 0.00598 = 239,200,000 10,000,000,000 * 0.00677 = 67,700,000
시설부대비	○ 시설부대비 : 200백만원 - 총공사비 20,600백만원×0.0023 ≒ <u>50백만원</u> - 토지측량, 개관식, 착공식 등 기타 비용 = <u>150백만원</u>

자료: 국가보훈부

나. 건립 배경

- 국가보훈부는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가칭) 건립 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음.⁵¹⁾
- 동 사업은 2025년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이전에도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계기 사업으로 대한민국의임시정부기념관 건립을 추진한 바 있음. 또한, 기존 기념관들은 독립운동가(인물) 중심으로 되어 있어,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 활동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문제제기와 독립운동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독립기념관과의 관람을 연계시킴으로써 더 많은 국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동 기념관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 이에, 특정 독립운동가(인물) 중심이 아닌 국내에서 일어난 교육, 문화, 계몽 및 학생운동 등 다양한 독립운동 분야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후대에 계승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으며, 전시 내용은 독립운동 분야별로 국민들이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체험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할 계획임.
- 사업부지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으며, 현재 다양한 후보지를 검토 중에 있음.

51) '보훈부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가칭) 건립은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 알리기 위한 것"',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024.9.30

다. 검토의견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가칭)의 건립공사비는 과소계상된 측면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건립공사비가 증가하게 되면 총공사비에 연동되어 설계비와 감리비도 증가하게 되는바, 국가보훈부는 총사업비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국가보훈부는 사업부지가 확정되지 않는 등 사업 추진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지 못한 상황에서 현충시설 건립 추진을 최대한 지양할 필요가 있음

① 총사업비 관리 철저

- 국가보훈부는 동 기념관의 건립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해 호남호국기념관, 해양생태과학관,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 가스안전 체험교육관, 국립인천 해양박물관 등 4개 전시시설의 단위면적당 공사비 평균값인 m²당 3,118,521원을 적용함.

<국가보훈부 공사비 산출근거 전시시설>

공사명	발주년월	연면적	m ² 당 공사비
호남호국기념관	2017.10	4,898.62m ² ,	2,743,749
해양생태과학관	2022.03	7,776.83m ²	2,707,495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 가스안전 체험교육관	2021.08	2,153.8m ²	3,456,770
국립인천 해양박물관	2021.07	17,318.88m ²	3,566,071
평균			3,118,521

자료: 조달청 공사비 정보광장

□ 그러나 국가보훈부가 적용한 4개 기관 중 호남호국기념관은 2017년 10월, 국립인천 해양박물관은 2021년 7월,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 가스안전 체험교육관은 2021년 8월에 각각 발주되었고 연면적 또한 2,153.8㎡~17,318.88㎡으로, 그동안의 공사비 상승 및 연면적에 따라 평균 금액이 상이함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실제로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발주한 박물관 및 기념관의 ㎡당 건립공사비를 살펴보면, 2022년 4개 시설 평균 3,615,486원, 2023년 3개 시설 평균 4,369,475원, 2024년 1개 시설 3,740,663원으로, 8개 시설의 전체 평균 ㎡당 공사비는 3,913,879원으로 나타남.⁵²⁾

<2022~2024년 박물관·기념관 공사비 현황>

연도	공사명	발주년월	연면적	㎡당 공사비(원)
2024	국립충주박물관	2024.04	8,964.51㎡	3,740,663
2023	국립소방박물관	2023.10	4,772.29㎡	4,042,584
	진주 실크박물관	2023.04	2,932.31㎡	4,829,161
	국토녹화 50주년 기념관	2023.03	3,841.23㎡	4,236,680
	2023년 평균			4,369,475
2022	국립광주박물관 도자문화관	2022.12	7,137.15㎡	3,386,313
	국립나주박물관 디지털 복합문화관	2022.10	4,392.57㎡	4,222,225
	임당유적전시관	2022.09	4,942.25㎡	3,679,034
	달성 화석박물관	2022.04	5,915.68㎡	3,174,370
	2022년 평균			3,615,486
전체 평균				3,913,879

자료: 조달청 공사비 정보광장

52) 연면적이 4,000~5,999㎡인 4개 전시시설의 평균 ㎡당 공사비는 3,779,553원임.

□ 한편, 동 기념관의 후보지인 수도권 중 서울시의 「2022년 공공 건축물 건립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연면적 5,000㎡의 전시·박물관을 신축하는 경우 면적당 공사비는 460만원/㎡임.⁵³⁾ 경기도는 서울시의 가이드라인과 조달청 공사비 정보광장의 유형별 예상공사비(2022~2024년 평균 ㎡당 공사비 3,779,553원)를 참고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2022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전시·박물관)>

(단위: 천원/㎡)

구분	신축	증축(수평)	증축(수직)	비고
3,000㎡ 미만	4,811	4,571	4,137	전시물 및 전시대 설치비 제외
3,000㎡~5,000㎡	4,646	4,454	-	
5,000㎡~10,000㎡	4,578	4,363	-	
10,000㎡초과	4,519	4,293	-	
평균	4,598	4,366	-	

자료: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2022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 동 기념관의 건립공사비는 과소 계상된 측면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건립공사비가 증가하게 되면 총공사비에 연동되어 설계비와 감리비도 증가하게 되는바, 국가보훈부는 총사업비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 건립공사비 외에도, 국가보훈부는 토지매입비는 계상하고 있지 않은

53) 서울시 가이드라인 또한 2022년에 작성된 것으로, 2025년 실제 건립공사비와는 괴리가 있을 수 있음.

바, 토지매입비 비용도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함.

② 사업 지연 우려

- ☐ 국가보훈부는 2025년 1월~2월에 공모 계획 수립 및 사전 절차(건축심의 등) 이행을 완료하고, 2025년 3월~7월에 설계 공모 및 계약을 완료한 후 2025년 8월부터 11개월간 기념관 설계 및 인허가 절차를 수행하며, 2026년 7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기념관 공사 및 준공을 할 계획이라고 밝힘.

< 추진계획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5.1~2월) 공모 계획 수립 및 사전 절차(건축심의 등) 이행○ ('25.3~7월) 설계 공모 및 계약○ ('25.8~26.6월) 기념관 설계 및 인허가 절차 수행○ ('26.7~27.12월) 기념관 공사 및 준공 |
|--|

자료 : 국가보훈부

- ☐ 현재 국가보훈부는 사업부지는 확정된 바 없으며, 현재 다양한 후보지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힘.

그러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세부지침」 및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르면, 사업부지가 확정되지 않으면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른 기획업무⁵⁴⁾가 완료될 수 없음. 기

획업무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본조사설계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5년도에 계상된 기본조사설계비의 집행이 가능할지에 대해 의문이 존재함.

- 국가보훈부는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 사업, ‘독립의 전당 건립’ 사업 및 ‘양산시 보훈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할 때에도 건립 부지를 확정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 사업 모두 첫 해 예산이 거의 집행되지 못함.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 사업은 건립 부지 미확보로 인해 2016년에 예산 10억원 중 2,000만원만을 집행(집행률 2.0%)하였고, 2017년에는 예산 10억원 전액을 불용하였으며, 2018년에는 예산 66억 3,000만원 중 3억 9,200만원만을 집행(집행률 5.9%)함. 설계 공모는 2018년 2월 5일에야 완료되었고, 이후 공사 진행도 계획보다 지연되어 2022년이 되어서야 개관함.
- ‘독립의 전당 건립’ 사업 또한 2016년부터 추진하였으나, 건립 부지 문제⁵⁴⁾로 인해 2016년 10억원 및 2017년 20억원이 전액 불용되었고,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바 있음.
- ‘양산시 보훈공원 조성’ 사업은 예산이 편성된 2017년 부지 미확정

54) 기획업무는 건축물의 규모 검토, 현장조사, 설계지침 등 건축설계 발주에 필요하여 발주자가 사전에 요구하는 설계업무로서 공간계획(법규검토, 개략배치도, 대지종원단면도, 개략평면도, 개략단면도), 현장조사(대지 및 주변현황 확인, 대지 및 주변현황 분석, 사용자 조사, 기존 시설물 분석), 설계지침서, 프로젝트 공정표, 기존 유사건물조사 비교 등의 내용이 포함됨.

55) 부지가 문화유산보호구역·공원 내에 위치하여 문화유산현상변경 승인 및 도시계획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에 따라 건립이 지연됨.

으로 인해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되어 예산액 2억원 중 2,700만원만 집행(집행률 13.5%)됨.⁵⁶⁾

- 국가보훈부는 향후 사업부지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건립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는 등 사업 추진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지 못한 상황에서 현충시설 건립 추진을 최대한 지양할 필요가 있음.

56) 집행액도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것임.

11. 현충시설 건립 : 독립의 전당 2025년 예산 집행가능성 검토 필요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현충시설건립’사업은 현충시설 건립을 통하여 독립유공자 및 국가 유공자의 공훈과 희생을 기리고 국민의 보훈의식을 함양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보다 6억 7,500만원(9.5%) 증가한 77억 5,800만원이 편성됨.

○ 동 세부사업의 내역사업 중 하나인 “독립의 전당” 건립사업은 독립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들의 정신을 기릴 위패봉안관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8억 8,800만원이 증액된 70억 3,4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현충시설건립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 감 (B-A)	(B-A)/A
현충시설건립	12,458	7,083	7,758	675	9.5
독립의 전당	421	4,146	7,034	2,888	70.0

자료 : 국가보훈부

□ 독립의 전당 건립 사업은 2008년 기존 서대문독립공원 내 독립관의 ‘순국선열 위패봉안관’이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하여 순국선열에 대한

예우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추진된 사업으로, 2015년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으로 선정된 후 2016년 예산에 사업예산이 최초로 반영되었음.

그러나 당초 선정한 부지가 문화유산보호구역·공원 내에 위치하여 문화유산현상변경 승인 및 도시계획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에 따라 건립이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편성된 예산 10억원과 20억원은 전액 불용되었음.

2018년부터는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있다가, 2022년부터 다시 예산이 편성되어 2025년에 시설이 완공될 예정임.

<독립의 전당 사업 개요>

- 사업시행주체 : 국가보훈부
- 사업위치 : 서대문독립공원 내(서대문구 현저동 101번지)
- 사업기간: 2022~2025년(4년)
- 사업규모: 지하1층, 지상1층, 연면적 2,552㎡
- 주요시설 : 위패봉안실, 체험 교육장, 사무실, 편의시설 등
- 총사업비 : 11,900백만원(전액 국비)

자료: 국가보훈부

<독립의 전당 연도별 편성 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연 도	2022		2023		2024	
구 분	예 산	집 행	예 산	집 행	예 산	집 행
금 액	226	152	494	373	4,146	-

자료: 국가보훈부

- 2025년도 예산안 70억 3,400만원은 잔여 공사비(2년차) 60억 5,600만원, 감리비 9억 5,800만원, 시설부대비 2,000만원으로 구성됨.

<2025년 독립의 전당 내역사업 예산안 편성 내역>

- 독립의 전당 건립 : 70억 3,400만원
 - (공사비) 공사비 배분(4:6)에 따른 2년차 공사비 60억 5,600만원
 - (감리비) 건설사업관리를 위한 2년차 감리비 9억 5,800만원
 - (시설부대비) 조달수수료 등 2,000만원

자료: 국가보훈부

나. 검토의견

독립의 전당 건립 사업은 주요 인·허가 심의에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당초 계획 대비 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국가보훈부는 동 사업의 지연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2025년 예산의 집행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독립의 전당 사업은 2024년 9월말 기준 예산현액 41억 9,500만원 중 40만원이 집행(집행률 0.02%)되었음. 집행액은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관련 조경 분야 자문 수당’임.

집행 부진 사유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독립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공원조성계획 심의에 기간이 소요되어 집행실적이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2022~2024.9. 독립의 전당 사업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2022	226	-	-	226	152	69	5	67.3
2023	494	69	-	562	421	49	93	74.9
2024.9.	4,146	49	-	4,195	1	-	-	0.02

자료: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는 2024년 9월 문화유산위원회 허가사항에 대해 변경 허가가 결정되었고, 독립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관련 주요 인·허가 협의가 완료된 상황이므로 2024년 11월까지 인·허가 관련 최종 조치 의견을 실시설계에 반영한 후, 공사 관련 계약을 2024년 12월에 실시할 계획이라는 입장임.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2024년 예산액 41억 4,600만원 중 14억 6,800만원을 연내 집행하고, 21억 7,300만원은 이월하며 5억 500만원을 불용할 예정이라고 밝힘. 또한, 연내 착공 및 선금 지급 검토 등을 통해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2025년의 경우 연차계약 2년차에 대한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집행을 완료하겠다고 설명함.

<2024년 예산액 집행예상액 및 이월·불용예상액>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집행예상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공사비(420-03목)	3,404	1,191	1,788	425
감리비(420-04목)	638	223	335	80
시설부대비(420-05목)	104	54	50	-
계	4,146	1,468	2,173	505

자료: 국가보훈부

□ 그러나,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 입찰공고의 기간을 고려하면 연내에 공사 관련 계약 체결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임.

○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 입찰공고를 거쳐 낙찰자를 선정·계약하고 착공해야 하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⁵⁷⁾에 의하면 입찰공고만 최소 5~40일이 소요됨. 입찰공고 기간 외에 조달청에 입찰을 협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낙찰자 선정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11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한다고 가정해도 연내에 공사 관련 계약 체결은 시간이 촉박함.

□ 당초 국가보훈부는 2023년 실시설계 완료를 전제로 2024년 상반기 이후 공사 착공을 감안하여 공사비를 2개년에 걸쳐 편성함.

5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2020. 5. 1.>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⑤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독립의 전당 건립 사업 공사비 및 감리비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	2025	합계
공사비	3,404	6,056	9,460
감리비	638	958	1,596

자료: 국가보훈부

<독립의 전당 건립 추진계획 대비 집행현황>

구분	계획	현황
실시설계 착수	2022.12.	2022.12.
국가유산청 협의	2023.3. ~ 2023.6.	2023.3. ~ 2023.6.
도시공원위원회 협의	2023.10. ~ 2023.12.	2023.10. ~ 2024.8.
실시설계 완료	2023.12.	2024.11. 목표
공사 계약	2024. 상반기	2024.12. 목표
착공	2024. 상반기	2024.12. 목표
완공	2025. 하반기	미정

자료: 국가보훈부

- 이를 종합하면, 동 사업은 2024년 내에 공사비 집행이 어려워 이월액이 큰 규모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국가보훈부는 동 사업의 지연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야할 것으로 보이며, 사업 지연을 감안하여 2025년 예산의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12.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함께 참여하고,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현재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신규 세부사업으로,⁵⁸⁾ 2025년도 예산은 97억 3,900만원이 편성됨.

○ 동 사업은 ① 분야별 독립운동의 가치 및 순국선열의 희생·헌신을 전국민이 기억·감사하는 ‘기억·감사 계기행사’사업, ② 숭고한 정신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 갈등을 넘어 국민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 ‘화합·평화 계기행사’사업, ③ 분야별 독립운동의 가치 및 순국선열의 희생·헌신이 미래세대에게 전승될 수 있는 ‘미래·희망 계기행사’사업 등 총 3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2025년도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 감 (B-A)	(B-A)/A
광복80주년 기념사업	-	-	9,739	9,739	순증

자료: 국가보훈부

58) 세부사업: 광복80주년기념사업(3147-419)

나. 검토의견

(1) 계속 사업과 연계한 종합추진계획 마련 필요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은 전국 단위의 행사 위주인 대규모 선양사업으로 기획·구성된 바, 독립운동 수집사료 분석, 학술연구 활성화 등 계속사업과 체계적으로 연계한 종합 추진 계획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가보훈부는 구체적인 사업예산 편성에 대해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은 대국민 제안 공모 등을 통해 보훈부가 기 추진 중인 계속사업과 차별화되는 전국 단위의 대규모 선양사업으로 기획하고 구성”하였다고 밝힘.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예산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명	사업 예산	주요사업 산출내역
기억·감사 계기행사	독립운동가 및 순국선열 감사캠페인	2,220	▶ 공약광고 등 제작·홍보: 1,214백만원, TV 프로그램 제작·편성: 1,000백만원
	광복 80주년 계기 특별전	900	▶ 독립기념관 내 특별기획전: 290백만원, 5개 대도시 특별기획전: 584백만원
화합·평화 계기행사	‘광복 2025’ 국민통합 문화예술축제	1,380	▶ 공연단체 섭외 700백만원, 행사 운영 674백만원
	빛으로 하나 된 대한민국	2,339	▶ 대형 태극기 등 제작·설치(17개 시도): 504백만원 미디어 파사드 전시 및 불빛쇼 1,800백만원
미래·희망 계기행사	광복 80주년 경축 드론쇼	2,530	▶ 행사장 구성비(드론, 무대 등): 1,250백만원, 프로그 램 운영: 750백만원, 기타운영(홍보 등): 524백만원
	광복 80주년 기념 키트 및 타임캡슐 제작	370	▶ 키트 제작: 120백만원, 타임캡슐 제작 지원: 224백만원

자료: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는 지난 2월 5일부터 3월 8일까지 약 한 달간 국민제안을 공모함. 대국민 공모는 ▲기억·감사 ▲국민통합 ▲미래비전 등 세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고, 총 246건이 접수됨. 기억·감사는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를 계승·발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국민통합은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함양하고 일상에서 보훈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사업으로, 미래비전은 광복 100주년의 비전과 대한민국이 나아갈 좌표를 제시하는 내용으로 아이디어가 모임.

□ 그러나, 동 사업 예산 97억 3,900만원 중 광복 2025 국민통합 문화예술축제(13억 8,000만원), 빛으로 하나 된 대한민국(23억 3,900만원), 광복 80주년 경축 드론쇼(25억 3,000만원) 등의 사업은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함양하고 일상에서 보훈문화를 조성하고, 광복 100주년의 비전과 대한민국이 나아갈 좌표를 제시”하는 목적을 위한 최선의 수단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존재함.

2019년에 편성된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총 예산 50억원)’ 및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총 예산 63억 3,200만원)’과 비교해보면, 이는 더 극명히 대비됨.

○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은 항일독립운동의 핵심적인 입증자료인 일제강점기 수형기록 조사, 독립운동 e-아카이브 구축, 국제 학술포럼, 교육홍보자료 제작 등의 사업을 수행함.

-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은 남북공동 사료발굴 전시, 학술회의 3회 개최(미·중 지역 항일독립운동 재조명, 남북공동 학술회의, 한인 독립운동과 러시아), 남북공동 안중근의사 생가복원·기념관 건립, 생존애국지사 구술채록 자료집 발간, 해외 수집 독립운동 사료 전시회, 한·중 항일투쟁 역사 기록물 등 특별 교류전, 독립운동가 인명사전 편찬 등 행사 위주가 아닌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함.

<2019년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예산내역>

(단위: 백만원)

내역 사업명	예산액	사업내용
합 계	5,000	
· 기념사업추진위원회	1,345	’18년 1월 출범 예정인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임차·시설비 등
· 3·1운동관련 지역별 수형기록 발굴수집	258	항일독립운동의 핵심적인 입증자료인 일제강점기 수형기록을 전수 조사·수집·분석하여 포상대상 발굴
· 독립운동 e-아카이브 구축	402	독립기념관, 국사편찬위원회, 국가기록원 등에 산재되어 있는 독립운동 및 독립운동가들의 관련 자료를 3·1운동 100주년을 계기로 손쉽게 검색, 활용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이버 공간 마련
· 인류역사에 길이 남을 3·1운동 100주년 국제 학술포럼	400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포럼
· 100주년 관련 교육홍보자료 제작	195	3·1절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에 대한 역사적 의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 과정, 활약상 등을 IT기술과 접목된 VR(가상현실) 콘텐츠를 제작하여 청소년들과 국민들의 관심 제고
· 100주년 기념음악 제작 발표 ‘위대한 유산’	1,000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순국선열·애국지사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는 헌정음악을 제작하고, 콘서트 개최 및 방송 프로그램 편성을 통해 국민과 공유
· 대한민국 독립의 역사를 담은 문화콘텐츠 제작	500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역사적 의미를 알리기 위한 다큐멘터리 제작
· 천만 릴레이 3·1만세운동 재연행사 ‘독립의 횃불’	800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3·1독립만세운동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구성하여 애국 선열의 정신을 전 국민에 확산
· 애국선열 추모 대국민 온라인 캠페인	100	애국선열에 대한 감사와 추모에 전 국민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캠페인 추진

자료: 국가보훈부

<광복 70주년 기념사업 예산내역>

사업명	예산액	사업내용
합 계	6,332	
독립 명예의 전당 건립	-	독립유공자 2만여명의 위패를 모시는 독립의 전당 건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
독립운동가 인명사전 편찬 상해·중경	700	독립운동가의 생애와 활동, 발자취 등을 정리·보존
임시정부청사 재개관	467	노후화된 상해(9월), 중경(11월) 임시청사 리노베이션, 재개관
한·중 항일투쟁 역사 기록물 등 특별 교류전	331	‘독립기념관’과 ‘광동혁명역사박물관’이 항일운동 공동 역사 기록물에 대한 공동 교류전 개최
창작 오페라 「박상진」 공연	149	대한광복회(100주년) 설립자이자 독립운동가인 박상진 의사의 삶을 오페라를 통해 재조명
광화문 광장 내 대형 태극기 구현	400	광화문 광장에 유명 설치 작가와 함께 ‘태극기’를 새롭게 해석하는 조형물 구현 및 기념행사 실시
무명 애국자의 삶 공모전	100	국민공모를 통해 70개의 무명애국자의 삶과 광복 관련 스토리 를 테드엑스(TEDx)화 추진 등
대한민국 70일간의 여정 프로젝트	662	현충일 6.25, 정전기념일(7.27), 광복절 등 계기행사로 선열들에 대한 존경·감사, 평화 그리고 통일의 꿈을 보여주는 행사
광복절 해외 경축행사 지원	661	해외 독립운동 관련 지역에서 열리는 기념식을 통해 한민족의 하나됨을 과시, 정부대표단 파견
광복70년 경축음악회	325	광복70년을 맞아 독립기념관에서 국내 3대 소프라노(조수미, 신영옥, 홍혜경)가 협연하는 품격있는 연주회 개최
2030세대 독립과 미래창조 순례단	120	2030세대들의 애국심·자긍심 고양을 위해 日동경, 美서부·동부 의 외교 독립운동 유적지를 순례
한·중 청년 자전거 대장정	402	언론(조선일보)과 함께 한·중 청년 20명을 공모하여 독립운동 의 현장인 중경 → 상해까지 자전거 대장정(1,881km)
청년세대 분단극복 프로젝트	400	분단 미극복 원인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국제포럼 개최, 독 일 현장방문·청년교류를 통해 통일 한반도를 현장체험한 후 전 과정을 KBS 디큐로 방영

사업명	예산액	사업내용
청소년 나라사랑 탐방단	500	청소년과 함께하는 中동북3상·러시아·국내지역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과 광복 페스티벌을 통해 청소년의 역사의식과 나라사랑 정신 고취
한인독립운동과 러시아 (학술대회)	45	잘 알려지지 않은 러시아 지역에서의 한인독립운동 재조명
미·중 지역 항일독립운동 재조명 (학술대회)	150	미·중 지역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 고찰
대학생 통일희망 캠퍼스	150	주요 대학의 정규과정을 활용, ‘분단극복 우리 힘으로’를 주제로 대학생들이 직접 통일관련 콘텐츠 제작 기획 * 한양·숙명·청주대 등 10개 학교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행사	130	국외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6개국 25명)을 초청하여 광복절 경축식 참여 및 현충원, 독립기념관 등 방문
해외 수집 독립운동 사료 전시회	30	미국, 프랑스 등에서 수집한 공개되지 않은 사료 전시회 실시 (광화문, 독립기념관)
생존애국지사 구술채록 자료집 발간	110	생존 애국지사의 삶을 직접 구술 채록하여 가치있는 자료로 제작 및 발간 (11명 대상)
남북공동 안중근의사 생가복원 기념관 건립	-	안중근 의사 고향인 황해도에 안중근의사 생가복원 및 기념관 건립 사업 실시(‘15~’19년) * (총리실) ‘16년부터 예산 반영
남북공동 학술 회의·사료발굴	500	남북 함께 독립운동 사료발굴 및 교류전시, 학술회의 개최

□ 국가보훈부는 지난 3월 19일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대통령 업무보고)’ 및 4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을 발표하면서 무장, 외교, 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독립운동 수집 사료를 분석하고 학술연구를 활성화

화해 학문적 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 공적을 재평가하고 추가 발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 전국 단위의 대규모 선양사업인 광복 80주년 기념사업만으로는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함양하고 일상에서 보훈문화를 조성하고, 광복 100주년의 비전과 대한민국이 나아갈 좌표를 제시”하는 목적 달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독립운동 수집사료 분석, 학술연구 활성화 등 계속사업과의 체계적인 연계를 고려한 종합 계획 수립·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성과 측정을 위한 성과지표 설정 필요

- 국가보훈부는 동 세부사업에 대해 별도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지 않았음.
- 그러나 동 사업은 예산액이 약 1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의 행사사업인 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참가자 만족도 등 동 사업의 추진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별도로 설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13. 국립묘지조성 : 국립연천현충원 착공 지연에 따른 적정 공사비 편성 필요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국립묘지조성’ 사업은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른 안장수요 증가로 국립묘지 안장 여력이 부족해짐에 따라 국립묘지를 추가 조성하여 안장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⁵⁹⁾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56억 7,100만원(206.2%) 증가한 381억 2,300만원이 편성됨.

< 2025년도 국립묘지조성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B)	증 감 (B-A)	(B-A)/A
		본예산	추경(A)			
국립묘지조성	16,687	12,452	12,452	38,123	25,671	206.2
연천현충원조성	3,702	3,797	3,797	38,111	34,314	903.7

자료: 국가보훈부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연천현충원조성’ 사업은 50,000기 규모의 봉안시설 및 부대시설을 확충하고자 2019년 시행되었고, 당초 2025년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2023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하게 되어, 사업 기간이 연장되어 2026년 공사가 완료될 예정임.

59) 세부사업 : 국립묘지조성(3250-364)

< 국립연천현충원 조성사업 개요 >

- 사업시행주체 : 국가보훈부
- 사업부지 :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산 120번지 외 939,200㎡(28.4만평)
- 연면적 : 12,917㎡(지하 1층, 지상 3층)
- 사업기간 : 2019년 ~ 2026년(7년)
- 주요시설 : 50,000기 규모 봉안시설 및 부대시설(봉안당 2만5천기, 봉안담 2만기, 자연장 5천기)
- 총사업비 : 1,263억원(2019년 980억원 → 2022년 1,020억원 → 2024년 1,263억원)

자료: 국가보훈부

나. 검토의견

국립연천현충원 조성사업은 당초 공사 계획 대비 실제 추진 일정이 지연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공사 일정 및 계획 대비 추진 가능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적정 공사비를 산정할 필요가 있음.

- ‘연천현충원조성’ 사업의 초기부터 2022년까지의 공사 추진 일정은 2023년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완공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공사비는 총공사비를 3개년에 2:4:4의 비율로 배분한 금액이었음.

< 연천현충원조성 사업 초기 공사 계획 >

(단위: 백만원)

연도	공사기간	총사업비 중 공사비 부분				비고
		합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19년 2022년	23-25	74,216 (배분비율)	14,844 (0.2)	29,686 (0.4)	29,686 (0.4)	

자료: 국가보훈부

□ 그런데, 동 사업은 2023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하게 되면서 설계용역이 중지되어, 2023년 공사비로 편성되었던 예산 112억 3,200만원 중 1억 1,800만원을 제외한 111억 1,400만원을 불용하게 되었고, 2024년 공사비는 연내 착공이 불가능하여 36억 1,100만원의 예산만을 공사비로 편성⁶⁰⁾하였으나, 2024년 9월 기준 이월액 1억 1,800만원만을 집행하였음.⁶¹⁾

< 연천현충원조성 사업 공사 계획 변동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공사기간	총사업비 중 공사비 부분						
		합계	2023년	2024년(9월 기준)			2025년	2026년
			기투자액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예산안	계획
2024년	24-26	98,696	118 (이월)	3,611	3,729	118	36,023	58,944

자료: 국가보훈부

□ 한편, 동 내역사업의 2024년 공사의 계획 대비 추진 실적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국가보훈부의 2024년도 국가보훈발전 과제별 실천계획(2024. 1.)은, 국립연천현충원 조성공사를 ‘24년도 착공하여 ‘26년도 완공하는 것으로, ‘24년도 각 분기 세부 추진 일정은 1/4분기 계약요청, 2/4분기 용역계약, 3/4분기 공사 착공, 4/4분기 공사 진행으로 계획되어 있었음.

60) 국가보훈부 2024년 확정예산 설명자료에 따르면, 2023년 공사비 이월분 112억 3,200만원을 감안하여 2:5:3의 비율로 배분한 금액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2023년 이월금액은 36억 1,100만원임.

61) 1억 1,800만원은 연천현충원 진입도로 공사로 집행되었고, 2024년 예산 36억 1,100만원은 공사 계약 선금으로 집행할 예정이라고 함(국가보훈부).

○ 그러나, 2024년도 3월 입찰공고가 유찰(6월)되어 6월 20일 재공
고가 이루어짐에 따라(개찰일시 10월 22일), 조성공사 계약은
계획 대비 최소 5개월이 도과한 '24년도 11월 말에 되어서야 체
결될 예정임.

< 국립연천현충원 조성사업 계획 대비 추진 현황 >

내역사업	시기	계획	실제 추진 현황
국립연천현충원 조성사업	계약 요청 (입찰공고)	'24년 1분기	'24년 3월(유찰)
			'24년 6월 21일
	계약 체결	'24년 2분기	'24년 11월 말 ('24년 10월 22일 개찰)
	착공	'24년 9월	-
	완공	'26년 12월	-

자료: 국가보훈부

□ 또한,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⁶²⁾에 따르면, 추정가격 10
억원 이상인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최소 20일의 착공 준비기간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국립연천현충원 조성공사의 착공은 '25년도 1

62)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80호)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규모·난이도·성격을 고려하여 착공일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일자 이전의 날짜로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해복구 등 긴급하게 착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공사계약 및 장기계속공사의 1차 계약 이후 연차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호에서 정한 일자 이전의 시점으로 착공일을 결정할 수 있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월이 되어서야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입찰공고서상 공사기간⁶³⁾을 고려할 때, 완공은 '27년도 4월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즉, 국립연천현충원 조성 공사는 계획 대비 계약 체결과 착공 지연, 관련 규정 및 공사기간 등을 고려할 때, 2025년도 기준 잔여기간이 3년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이상을 종합하면, 연천현충원조성 공사는 사업 초기부터 공사기간을 3개년으로 계획하여 진행되었고,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이행 및 입찰계약 지연으로 인하여 2023년 및 2024년 공사 착공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이므로 공사기간을 2027년까지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 그런데, 동 내역사업의 2025년도 공사비 예산은, 2026년 완공을 전제로 공사비 잔액을 4:6의 비율로 2개년 배분한 금액으로 산출된 금액을 편성하였음.

< 국립연천현충원 조성사업 2025년도 공사비 산출 근거 >

- (공사비) 공사진행에 따른 공사비 잔액 2개년 배분(4:6)

* 공사비: 36,023백만원=98,696 × 36.5%

자료: 국가보훈부

63) 입찰공고서 1. 공사개요 1.5.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840일

□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잔여기간이 2년인 경우 공사비를 연차별 5:5로 배분하되, 소규모 건축사업(공사기간 2년)은 4:6의 비율로 배분하도록 하고 있으나, 잔여기간이 3년인 경우에는 3:4:3의 비율로 배분하도록 하고 있음.

< 공사비 연차별 투자배분 기준 >

잔여기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1년	100						
2년	50	50					
3년	30	40	30				
4년	20	20	30	30			
5년	15	15	20	30	20		
6년	10	10	15	20	25	20	
7년	10	10	10	15	15	20	20

* 소규모 건축사업(공사기간 2년)은 잔사업비 40:60으로 배분

자료: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277

□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동 내역사업의 실질적인 공사 착공이 '25년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당초 계획보다 착공이 지연된 연천현충원 조성사업의 추진계획 및 공사기간을 면밀히 점검하고, 계획 대비 추진 가능성에 따른 적정 공사비 금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음.

14. 제대군인전직지원금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제대군인전직지원금’은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 안정 도모와 취·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구직급여 명목으로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⁶⁴⁾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억 7,700만원(5.4%) 증가한 73억 8,2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제대군인전직지원금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 감 (B-A)	(B-A)/A
제대군인전직지원금	9,135	7,005	7,382	377	5.4

자료: 국가보훈부

- 동 사업 예산안의 세부 내역을 보면, 중기복무자 전직지원금은 1인당 월 지급액이 전년 대비 3만원 증가한 58만원으로, 장기복무자 전직지원금의 경우 1인당 월 지급액은 전년 대비 4만원 증가한 81만원이 편성되었고,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⁶⁵⁾

64) 세부사업: 제대군인전직지원금(4160-391)

65)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하고, "중기복무 제대군인"이란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함.

<2025년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예산안 세부내역>

구 분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합 계	70억 500만원	73억 8,200만원
중기복무자	55만원 X 6개월 X 1,705명 X91.5%= 51억 4,800만원	58만원 X 6개월 X 1,705명 X91.5%= 54억 2,900만원
장기복무자	77만원 X 6개월 X 454명 X88.5% = 18억 5,600만원	81만원 X 6개월 X 454명 X88.5%= 19억 5,300만원

자료: 2024년 및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재구성

나. 검토의견

(1) 전직지원금 인상 필요

제대군인 전직지원금과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간 지원금액 및 지원일 수 등에 차이가 존재함에 따라 전직지원금과 고용보험 구직급여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구직급여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음

☐ 연도별 보훈대상자 현황을 살펴볼 때, 참전유공자는 고령화로 인하여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고엽제 관련자,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등은 더 이상 대상자가 큰 폭으로 확대될 여지가 적어

추후 보훈대상자의 증가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부분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되므로,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역량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연도별 중기, 장기 제대군인 현황>

연도	계	중기복무 제대군인	장기복무 제대군인
2018	6,392	2,851	3,541
2019	5,681	2,704	2,977
2020	5,664	2,132	3,532
2021	7,278	2,840	4,438
2022	8,701	2,830	5,871
2023	9,420	3,256	6,164
2024.9월	9,715	3,197	6,518

자료: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는 제대군인의 성공적인 사회복귀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 사업 및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군 인사체계의 특수성으로 비자발적 조기전역을 해야 하나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 및 직업능력개발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

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전직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음.⁶⁶⁾

전직지원금은 제대군인에게 구직급여일액의 최고액에 30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월별로 지급하되, 전직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수급 기간 중에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00분의 50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그런데 장기복무자 전직지원금은 2008년 구직급여(상한액 월 120만원)의 41.7% 수준인 50만원에서 지급을 시작하였으나 2022년에 이르러서야 70만원으로 인상된 후 2024년 77만원까지 인상되었고, 중기복무자 전직지원금의 경우도 2014년부터 25만원이 지급되었으나 2021년까지 지급단가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어오다 2022년에 50만원으로 인상된 후 2024년에 55만원으로 인상되었음. 반면, 고용노동부의 구직급여는 2008년 월 120만원에서 2018년부터는 65% 인상된 월 198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현재 장기복무자의 1개월 전직지원금은 구직급여 월 상한액의 38.9%, 중기복무자의 전직지원금은 구직급여 월 상한액의 27.8%에 불과함.

6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전직지원금) ① 국가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직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전직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의 최고액에 30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월별로 지급하되, 전직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수급 기간 중에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00분의 50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전직지원금과 구직급여 비교>

구 분	국가보훈부 전직지원금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관련규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고용보험법」 제4조
대상자	비연금 중장기복무자 중 미취업자 ※ 중기자 평균연령 29.1세	180일 이상 근무 후 실직자
지급신청 기간	전역후 6개월 이내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지급액	중기 : 55만원(구직급여 27.8%) 장기 : 77만원(구직급여 38.9%)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 상한액 월1,980천원
지급 상한기간	미취업기간 6개월	연령 및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
중도취업자 지원	일시금 : 잔여지급액의 1/2	조기재취업수당 : 잔여급여일수 1/2이상자의 잔여지급액 1/2
고용보험가 입여부	미가입	가입

자료: 국가보훈부

< 고용부 구직급여 상한액 (천원) >

구분		'08~'13	'14	'15	'17	'18	'19	'20	'21	'22	'23	24
전직 지원금 월지급액	중기복무자	-	250	250	250	250	250	250	250	500	500	550
	장기복무자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700	700	770
구직 급여	월 상한액	1,200	1,200	1,290	1,500	1,800	1,980	1,980	1,980	1,980	1,980	1,980
	증가율(%)	-	-	7.5	16.3	20	10	-				-

자료: 국가보훈부

- 특히, 중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평균연령은 31세로 장기간 사회와의 격리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취업·교육·의료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는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달리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을 지원하는 데 그쳐 그 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중·장기복무자 제대군인 지원 비교>

구분	지원분야	지 원 내 용
중기복무 제대군인 (5년~9년)	채용시험응시 상한연령연장	■ 2년 이상 복무 : 3세 ■ 1~2년 복무 : 2세 ■ 1년 미만 복무 : 1세
	군경력 인정	■ 호봉, 임금결정시 군복무 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 * 취업지원실시기관 권장사항
	의 료 지 원	■ 군복무중 부상(질병)으로 신체검사 등급미달 판정을 받은 경상이자 대상으로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상이처에 한함)
	취 업 알 선	■ 진로지도·직업상담, 취업알선, 구인·구직 만남의 행사
	직 업 훈 련	■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사이버교육 실시,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급
	취 업 알 선	■ 진로지도·직업상담, 취업알선, 구인·구직 만남의 행사
	법률구조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변호사비용, 인지액, 송달료 등 소송비용 지원 (군인연금 대상자 제외)
	전직지원금 지급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자로 전역 후 6개월 이내 신청 ■ 중기(월 55만원), 장기(월 77만원) 최장 6개월간 지급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취 업 지 원	■ 국가기관, 공기업,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추진 ■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교 육 지 원	■ 본인 : 대학 입학금·수업료의 50%까지 감면 * 전역 후 3년 이내자

구분	지원분야	지 원 내 용
		■ 자녀 : 고교 재학 자녀 수업료 전액 보조 * 생활수준 조사결과 기준 이하자
	의료지원	■ 보훈병원(본인부담 진료비의 50% 감면) ■ 군병원 : 응급처치 및 외래진료(본인부담 진료비의 50% 감면)
	대부지원	■ 주택구입, 아파트분양, 임차, 사업, 농토구입, 생활안정, 학자금 - 금액 : 300~8,000만원, 상환기간 : 3~20년(연리3.5~4.5%)
	주택분양	■ 「공공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무주택 장기복무 체대군인 포함('07.8월, 주택공급규칙 개정)
	공공시설의 이용	■ 고궁 및 공원 등 공공시설 감면(무료) 이용 - 전쟁기념관(무료), 고궁·능원·국립민속박물관(50% 감면)
	안 장 지 원	■ 국립호국원 안장(10년 이상) ■ 국립현충원 안장(20년 이상)

자료: 국가보훈부

- 한편,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지급하는 구직급여의 경우 지급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이에 ‘구직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2019. 10. 1. 시행)으로 구직급여 지급기간이 90일~240일에서 120일~270일로 확대되고, 지급 수준도 평균임금의 50%에서 평균임금의 60%로 상향되었음. 따라서 50세 미만 중 피보험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자가 실업을 한 경우 1일 하한액(60,120원)을 기준으로 하여도 약 721만원의 구직급여를 받게 됨.

< 구직급여의 급여일수 >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현재 연령	50세 이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자료: 국가보훈부

- ☐ 위와 같이 전직지원금과 구직급여간 지원금액 및 지원일 수 등에 차이가 존재함에 따라 전직지원금과 고용보험 구직급여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을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음.

(2) 추계 오류 및 형식적인 예산편성 지양 필요

전직지원금이 인상된 2022년도부터 매년 예산이 부족함에 따라 이·전용등을 통해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으며, 전직지원금을 신청한 중기 및 장기복무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에도 국가보훈부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시 신청인원을 ‘2021~2023년 3년 평균 신청자 수’가 아닌 ‘2020~2022년 3년 평균 신청자 수’를 기준으로 예산을 과소 편성함.

향후 국가보훈부는 전직지원금 지급 대상자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그에 맞는 적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국가보훈부는 전직지원금이 인상된 2022년도부터 매년 예산이 부족함에 따라 2022년과 2023년에는 ‘보상금’에서 각각 9억 1,500만원과 30억원을 이용하여 부족분을 충당함. 2024년에도 9월말 기준 이미 예산현액을 초과 집행하였고,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이미 42억 8,300만원을 이·전용 증액함.

< 2022년~2024년 전직지원금 예산액 및 부족분 발생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A)	집행액(B)	부족분(B-A)	이·전용 등
2018	2,407	3,529		1,125
2019	3,314	3,313	-	
2020	3,314	3,314	-	
2021	3,314	3,314	-	-
2022	6,172	7,087	915	915
2023	6,172	9,135	2,963	3,000
2024.9	7,005	8,712	1,707	4,283

자료: 국가보훈부

(단위: 명, %, 백만원)

연도	중기 및 장기 전역자(신청대상)		신청자	신청률	예산액
2019	중기	3,563	1,764	49.5	3,314
	장기	1,039	360	34.6	
2020	중기	3,121	1,631	52.3	3,314
	장기	1,147	403	35.1	
2021	중기	2,821	1,569	55.6	3,314
	장기	834	399	47.8	
2022	중기	2,999	1,916	63.9	6,172
	장기	1,103	559	50.7	
2023	중기	4,061	2,536	62.4	6,172
	장기	1,266	712	56.2	
2024.9	중기	3,969	2,506	63.1	7,005
	장기	1,677	801	47.8	

자료: 국가보훈부

□ 위와 같이 전직지원금을 신청한 중기 및 장기복무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시 신청인원을 ‘2021~2023년 3년 평균 신청자 수’가 아닌 ‘2020~2022년 3년 평균 신청자 수’만을 적용하는 등 과소계상하여 2025년 집행시에도 이·전용등으로 충당할 것이 우려됨.

□ 국가보훈부는 2024년 2월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업무계획」을 통하여 “국가 미래를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보훈으로 패러다임 전환”의 목적으로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 강화’를 명시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전직지원금을 구직급여(198만원)의 50% 수준(99만원)으로 인상하고, 지급기간도 상응하게 조정(중

기복무자 : 6개월 →7개월 / 장기복무자 : 6개월→8개월)하겠다고 밝힘. 또한 지난 3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 강화’ 및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직지원금을 인상하겠다고 한 바 있음.

- 전직지원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국가보훈부는 지원액 상향에 앞서 현재 기준으로도 매년 과소계상되어 예산부족분이 발생하는 문제를 시정하는 노력부터 경주해야 할 것임.
- 또한, 전직지원금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의무지출로, 부족분을 지급하기 위해 타 사업 예산을 이용 또는 전용하는 것은 적정하게 편성된 타 사업의 목적 달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국가보훈부는 전직지원금 지급 대상자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그에 맞는 적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15. 국제보훈교류협력사업 : 미래평화학술회의 사업 예산 재검토 필요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국제보훈교류협력사업(4161-395)’은 유엔참전용사 재방한 초청을 비롯한 참전국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문화·스포츠 등 국제교류를 활성화 하려는 사업으로,⁶⁷⁾ 2025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8억 8,300만원(10.0%) 감액된 79억 9,100만원이 편성됨.

○ 동 사업은 8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개 내역 사업 중 하나인 ‘참전국 교류협력 사업’은 ① 국제보훈컨퍼런스, ② 미래평화학술회의, ③ 주한참전국대사관워크숍 등 3개의 내내역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 중 ‘미래평화학술회의 사업’은 한미동맹 세미나 지원 등을 통하여 참전국과의 미래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상호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내내역사업으로, 2025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2억 9,000만원이 편성됨.

< 2025년도 ‘국제보훈교류협력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 감 (B-A)	(B-A)/A
국제보훈 교류협력사업	9,135	8,874	7,991	△883	△10.0
미래평화학술 회의 사업	290	290	290	-	-

자료: 국가보훈부

67) 세부사업: 국제보훈교류협력사업(4161-395)

나. 검토의견

‘미래평화학술회의 사업’은 기존 한미동맹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해오던 한미동맹 콘텐츠 사업에 보훈 관련 콘텐츠를 추가한 것으로, 사업의 주제 및 참석 대상이 기존 한미동맹재단에서 수행한 사업과 유사하며, 보조사업 연장 평가 결과에서 지적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미래평화학술회의 사업’은 2021년에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인 한미동맹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해오던 한미동맹 콘텐츠에 보훈 관련 콘텐츠를 추가하여 민간경상보조(320-01)로 지원하고 있음.
- 미래평화학술회의 사업은 기존에 비영리단체에서 회비(기부금)로 운영하던 사업에 대해 2021년부터 보조금을 지급하여 운영하고 있음. 2021년에는 3억 9,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2023년부터는 2억 9,0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2021년 예산 편성 전에도 한미동맹재단에서는 한반도 안보와 평화유지에 기여한 주한미군장병을 격려하고 한미동맹의 가치와 중요성을 전파하기 위하여 서울과 워싱턴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여 왔음. 예산 편성 전의 세미나 내역을 살펴보면, 2019년에 SCM/MCM 한미대표, 주한미대사, 역대 연합사령관 등 한미주요직위자, 한미 모범장병, 카투사 대표, 후원사 대표 등 400여명을 초청한 바 있음.

- 한미동맹재단의 수입은 대체로 회비(기부금)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예산이 지원되기 전인 2019년의 경우 서울과 워싱턴에서 세미나 개최에 8,900만원을 지출함.

< 2019 한미동맹재단 서울/워싱턴 세미나 집행 내역 >

(단위: 천원)

구분	집행내역	참석인원	비고
세미나 및 만찬 (11.14. 서울)	59,436	대통령 축전, 이낙연 국무총리 축사, SCM/MCM 한미대표, 주한미대사, 역대 연합사령관 등 한미주요 직위자, 한미 모범장병, 카투사 대표, 후원사 대표 등 400여명	집행내역은 행사비용으로 국외 참여자 여비 제외(국외 참여자 여비는 주한미군전우회에서 지출)
세미나 및 만찬 (12.4. 워싱턴)	29,455	미 국방부, 국무부, 합참 등 주요 직위자 참여 (재단이사장, 회장 등 4명 출장)	참석인원 통계 없음 집행내역은 국내 출장자 여비로 행사비 제외(행사비는 주한미군전우회에서 지출)

자료: 한미동맹재단

- 2019년 ‘한미동맹재단의 서울/워싱턴 세미나 집행내역’과 2025년
‘미래평화학술회의 사업의 국제학술평화세미나’의 예산 편성 내역

을 비교해보면, 2019년 한미동맹재단의 경우 세미나 행사비로 서울에서는 약 5,900만원을, 워싱턴에서는 약 2,900만원을 지출하였으나, 2025년 국가보훈부의 국제학술평화세미나에서는 국내의 경우 약 1억 2,000만원을 편성하고, 국외(미국)의 경우 약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여 한미동맹재단에서 편성해오던 예산보다 확대하였음을 알 수 있음.

< 2025 국제학술평화세미나 편성 내역 >

(단위: 천원)

구분	예산	참석인원	비고
서울	120,000	300명 예상	국고보조사업으로 연초 공모과정을 통해 사업자가 선정
미국	170,000	200명 예상	

자료: 한미동맹재단

< 세미나(1회) 예산 비교 >

(단위: 천원)

구분	한미동맹재단	국가보훈부
서울	59,436	120,000
워싱턴	29,455	170,000

자료: 한미동맹재단 및 국가보훈부

□ 예산 편성 당시 기존부터 사업을 수행해오던 한미동맹재단에 비용만 지원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기존 한미동맹재단에서 해오던 사업과는 주제, 참석대상, 개최 기간 등을 차별화하여 개최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그러나,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세미나의 제목이 ‘한미동맹 컨퍼런스’로 동일하는 등 기존의 한미동맹 컨퍼런스가 사업의 주요내용으로 계속 포함되어 있으며, 참석대상도 기존의 한미동맹 컨퍼런스와 유사하는 등 차별점을 찾기가 어려움.

< 2021~2023년도 추진실적 >

구분	기간(장소)	주제	참석자
(2021년) 한미동맹 컨퍼런스	1차 : '21. 7. 28.(수)(워싱턴D.C.), 2차: '21. 11. 30.(화)(서울), 3차: '21. 12. 15.(수)(하와이)	한반도 평화정착 및 동맹발전 방안, 한미 외교·국방 협력 방안	美 국무부 차관보, 전 연합사령관, 전현직 유엔사 및 주한미군 복무장병, 양국 학계 전문가 등
(2022년) 한미동맹 컨퍼런스	1차 : '22. 7. 25.(월) ~ 7. 29.(금)(워싱턴D.C.) 2차 : '22. 10. 25.(화)(서울)	보훈외교 및 한미동맹 지원 방안, 유엔사 및 주한미군 복무장병 예우	美 국방부 산하 DPAA 국장, 전 연합사령관, 전현직 유엔사 및 주한미군 복무장병, 양국 학계 전문가 등

구분	기간(장소)	주제	참석자
(2023년) 한미동맹 컨퍼런스	1차: '23. 10. 6.(금) ~ 10. 7.(토)(조지아), 2차 : '23. 10. 13.(금)(서울)	한미동맹 강화 및 보훈외교 발전방안, 유엔참전용사의 유산을 잇는 유엔사 복무장병	전 연합사령관, 전현직 유엔사 및 주한미군 복무장병, 양국 학계 전문가 등

자료: 국가보훈부

- 동 사업은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도 “이전에는 보조사업자인 한미동맹재단의 재원으로 사업의 운영이 충분했던 사업이며, 보조금사업으로 전환 이후에도 한미동맹재단 기존의 한미동맹 콘텐츠도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 계속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기조로 강도 높은 재정 정상화를 통한 재정체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보조사업 정비를 추진하였으며, 보조사업의 재정비 기준으로 ①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및 외부 지적 등을 반영, ② 유사중복이나 집행 부진 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적합한 사업 등은 전달체계를 재구조화, ③ 부정수급 또는 회계관리 미흡 등 부적절하게 집행된 사업 구조조정 등을 제시하였음. 이에 의하면, 동 사업은 “①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및 외부 지적 등을 반영”에 해당함.

- 이를 종합하면, 2025년 “미래평화학술회의” 예산은 기존에 비영리재단법인인 한미동맹재단에서 자체 회비로 해오던 사업이고, 사업의 주제 및 참석 대상이 한미동맹재단에서 수행하던 사업과 유사하며,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에서 지적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민간보조사업은 ‘자체수입 및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으로 충당이 가능한지 여부’를 고려하여 예산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음.
 - 동 사업은 2020년까지 한미동맹재단에서 자체수입으로 충분히 운영하고 있던 세미나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Ⅲ.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1. 국가유공자 등 차량지원 : 지원 대상 감소 추이의 합리적 반영을 통한 적정 예산 편성 필요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국가유공자 등 차량지원’은 상이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LPG 차량에 대한 LPG 연료의 개별소비세 인상분과 친환경차량(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및 충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⁶⁸⁾ 2025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4억 500만원(△25.7%) 감소한 98억 5,400만원이 편성됨.⁶⁹⁾

<2025년도 국가유공자 등 차량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국가유공자 등 차량지원	9,520	13,259	9,854	△3,405	△25.7
·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8,964	12,525	9,120	△3,405	△27.2
· 친환경차량지원	556	734	734	-	-

자료: 국가보훈부

68) 세부사업: 국가유공자 등 차량지원(2158-380)

69) 2024년 예산은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2158-380)’, ‘친환경차량지원(2158-381)’ 등 2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는데, 2025년 예산안은 이를 ‘국가유공자 등 차량지원’ 사업으로 통합하였음. 예산안 규모의 전년 대비 비교는 2024년 2개 세부사업 합산 금액 기준임.

나. 검토의견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내역사업은 해마다 대규모의 예산이 불용되고 있으므로, 지원 대상 차량 수를 보다 합리적으로 재산출하여 적정 예산 규모로 조정·편성할 필요가 있음.

-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내역사업은 2001년 7월부터 유종간 가격구조 형평성 제고를 위해 LPG 개별소비세가 대폭 인상됨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세금부담 완화 방안으로 세금인상분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보다 34억 500만원 (27.2%) 감소한 91억 2,000만원임.
- 국가보훈부는 2009년 9월부터는 월 300ℓ⁷⁰⁾를 사용한도로 국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리터당 지원액은 세제 변화를 반영하여 변동되며 2024년 7월부터는 리터당 160원씩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음.

<LPG차량 세금 인상분 리터당 지원액 변화 추이>

기간	'09.1.1. ~'18.11.5	'18.11.6. ~'19.5.6	'19.5.7. ~'19.8.31.	'19.9.1. ~'21.11.11.	'21.11.12 ~'22.4.30	'22.5.1. ~'22.6.30.	'22.5.1. ~'24.6.30.	'24.7.1. ~'24.10.31.	'24.11.1. ~
지원액	220원	190원	200원	220원	180원	160원	150원	160원	170원

자료: 국가보훈부

- 동 사업의 최근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수혜자의 고령화와 친환경 차량으로의 대체 등 요인으로 지원 차량 수 및 1대당 연간 LPG

⁷⁰⁾ 추가 승인 시 350ℓ까지 지원

충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간 집행액은 매년 감소하는 추이를 보임.

<최근연도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대상 및 집행 현황>

(단위: 대, ℓ, 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월평균 지원 차량 수 (실지원 인원)	51,819	48,759	45,821	43,295	39,913
대당 연간 LPG 충전량	1,792	1,584	1,559	1,534	1,501
집행액	18,725	17,085	15,303	11,130	9,520

자료: 국가보훈부

□ 이러한 집행액 감소 추세에 따라 해마다 대규모의 예산이 불용되었으며, 국가보훈부의 추산에 따르면 2022년 이후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70% 미만의 집행률 및 50억원 내외의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최근연도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편성·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추정)
예산액(A)	20,831	19,789	17,860	16,990	15,531	12,525
집행액(B)	18,725	17,085	15,303	11,130	9,520	8,110
불용액(A-B)	2,106	2,704	2,557	5,860	6,011	4,415
집행률(B/A)	89.9	86.3	85.7	65.5	61.3	64.7

주: 예산액은 본예산 기준, 2024년 집행액, 불용액, 집행률은 9월말까지의 집행액(57억 6,500만원)을 기초로 국가보훈부가 추정

자료: 국가보훈부

- 이에 따라 2024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도 수혜자 규모는 매년 감소하는데 보조금 지원액 축소는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아 실행률이 낮으므로, 수혜자 규모와 수혜액을 정밀하게 추계하여 예산 규모를 타당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음.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2024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결과보고서 675p」

- 대상자의 고연령 등으로 수혜자 규모는 매년 감소하는데, 보조금 지원액 축소는 이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여 실행률이 낮음.
 - 수혜자 규모와 수혜액을 좀 더 정밀하게 추계함으로써 보조사업 예산 규모를 좀 더 타당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 그런데 국가보훈부의 2025년 예산안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 상당액(34억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긴 하였으나 지원 대상 규모의 감소 추세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국가보훈부는 내년도에 지원할 차량 대수를 38,000대로 산정하면서 그 근거로 최근 3년 평균 감소율(6.7%)을 적용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2023년 지원 대수인 39,913대에 6.7%의 감소율을 반영하면 37,239대로 국가보훈부가 산출한 것보다 761대 더 낮은 수치가 도출됨.

- 뿐만 아니라, 국가보훈부는 2023년 지원 차량 대수에 연평균 감소율을 1회 적용하였으나, 2024년이 아닌 2025년 지원 차량 대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감소율을 2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⁷¹⁾

<2025년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백만원, %)

구분	산출식
예산안(91억 2,000만원)	38,000대 × 1,500ℓ × 160원
지원 차량대수(38,000대)	최근 3년 LPG차량 평균 감소율(△6.7%) 수준 (‘21) 45,821대, (‘22) 43,295대, (‘23) 39,913대(연평균 △6.7%)
대당 연간 LPG 충전량(1,500ℓ)	‘23년 수준 (‘21) 1,559ℓ, (‘22) 1,534ℓ, (‘23) 1,501ℓ(연평균 △1.9%)
리터당 세금지원액(160원)	‘24년 8월 기준 리터당 지원액

자료: 국가보훈부

-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 차량지원’ 세부사업의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내역사업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 차량 수를 보다 합리적으로 재산출하여 적정 예산 규모로 조정 편성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⁷²⁾

71) 2023년 지원 대수인 39,913대에 국가보훈부가 제시한 연평균 감소율 6.7%를 2회 적용하면, 34,744대가 도출되어 국가보훈부가 제시한 38,000대와 3,256대의 차이가 발생함.

72) LPG 차량대수 감소 추세를 가급적 정확하게 반영하되, 유류세 조정으로 인한 리터당 세금 지원액(단가)이 상향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은 있음.

IV. 보훈기금

1. 기타재산이자외수입 : 88골프장 매각 계획 구체화 이후 매각대금 수입 계상 필요

가. 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기타재산이자외수입’은 기금재산의 처분대금, 임대료, 기타 자산의 소유로 인한 이자와 수입 등을 계상하는 항목으로,⁷³⁾ 2025년 계획안은 전년 대비 72억 4,700만원(5.8%) 증가한 1,320억원이 편성됨.

<2025년도 보훈기금 기타재산이자외수입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백만원, %)

항목명	2023년 결산	2024년 계획(A)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기타재산이자외수입	10,749	124,753	132,000	7,247	5.8

자료: 국가보훈부

나. 검토의견

88골프장 매각대금을 해마다 보훈기금의 수입으로 계상하면서도 실제로 매각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실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기금 수입의 과다계상이 연례적으로 되풀이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명확한 계획 수립을 통해 실현 가능한 기금운용계획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73) 항목명: 기타재산이자외수입(54-547)

□ 이 항목의 2024년 계획안 1,320억원은 전액 88골프장 매각대금으로 계상되었는데, 이는 전체 매각대금 예상액 3,727억원을 3개년 분할 계상한 것임.

□ 그런데 88골프장 매각대금을 해마다 보훈기금의 수입으로 계상하면서도 실제로 매각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실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기금 수입의 과다계상이 연례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임.

○ 동 항목의 최근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2022년의 경우 수입 계획액 1,320억원 중 50억 9,600만원(수납률 3.9%)이 수납되는데 그쳤으며, 2023년에도 계획액 1,190억원 중 107억 4,900만원(수납률 9.1%)이 수납되었음.

<최근연도 보훈기금 기타재산이자외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수납률
2022년	132,000	5,096	5,096	3.9
2023년	118,000	10,749	10,749	9.1
2024년(10월)	124,753	0	0	0
2025년(안)	132,000	-	-	-

주: 2022년부터 기타재산수입(54-545) 목이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 및 기타재이자외수입(54-547) 목으로 분리

자료: 국가보훈부

□ 특히, 2023년까지 일부 수납이 발생했던 수입은 기금의 중장기

여유자금 수익금이었으며, 2024년부터는 여유자금 수익금을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에 계상⁷⁴⁾함에 따라 본 항목에 대한 수납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에도, 내년 수입 계획안으로 재차 큰 규모의 금액(1,320억원)이 계상되었음.

□ 정부가 이와 같이 공공시설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매각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기금운용계획에 대규모 매각수입을 해마다 반영한 채 국회에 제출하여, 기금의 수입·지출 계획을 왜곡시키는 것은 매우 부적정한 편성 사례로 볼 수 있음.

○ 국회는 2020년 결산 심사 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시정요구를 의결한 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유사한 편성이 반복되고 있음.

<88골프장 매각대금 수입계상에 대한 국회 시정요구>

대상연도	지적요지	시정요구사항
2020결산	○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 현재까지 88골프장 매각계획이 유지되고 있어 전년도 골프장 매각대금을 전액 회수하는 것을 전제로 매년 수입을 편성하고 있으나, 사실상 골프장 매각이 추진되지 않아 실제 당해연도 집행에 필요한 사업자금만 회수하고 있어 매년 계획액 대비 수납 실적이 매우 저조함	○ 국가보훈처는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88골프장 매각 여부를 조속히 결정 짓고, 최근 회수 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

74) 보훈기금 중장기여유자금 운용방식인 완전위탁펀드는 ‘유동자산’으로 분류하도록 재정당국이 권고함에 따라, 보유중인 연기금투자펀드 내 자산은 모두 유동자산으로 변경되어 현재 여유자금 수익금은 기타재산이자수입으로 처리되고 있음.

대상연도	지적요지	시정요구사항
	○ 기금 수입의 과다계상은 실제 운용규모에 비해 기금의 추가 지출 여력이 없음에도 기금운용 규모를 과도하게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함	의 수입계획을 편성하여 국가재정이 왜곡되지 않도록 할 것

자료 : 2020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발췌

- 보훈기금 2025년 지출 계획안은 골프장 위탁운영(2362-434) 사업에 176억 4,300만원, 골프장 시설투자(2362-435) 사업에 40억 7,700만원을 함께 편성하였는데, 골프장 매각대금을 수입에 반복적으로 계상하면서 골프장 운영비 및 시설투자 예산 편성을 병행하는 비합리적 편성을 지속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의 반복은 국가보훈부와 재정당국의 입장 차이⁷⁵⁾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명확한 방향성 및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선행한 후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기금운용계획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해야 할 것임.

- 국가보훈부는 88골프장 운영 수입이 보훈기금의 유일한 수입원으로서 안정적인 기금 조성⁷⁶⁾에 기여하고 있으며, 동 골프장은 국가유공자 정지연금⁷⁷⁾으로 건설하여 보훈단체들이 보훈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어 매각 시 큰 반발이 예상된다는 입장임.

75) 국가보훈부는 국회의 반복적인 지적 등에 따라 재정당국에 매년 기금운용계획에서 88골프장 매각대금 계상 제외를 협의하였으나 미반영되고 있다고 밝힘.

76) 2022년 141억원, 2023년 140억원

77) 국가유공자 등이 취업한 경우 보상금 지급을 정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자금

2. 국가유공자 등 노후복지지원 :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합리적 예산 책정 필요

가. 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국가유공자 등 노후복지지원’은 고령 보훈대상자에 대해 재가보훈실무관 등 돌봄인력 및 활동에 필요한 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⁷⁸⁾ 2025년 계획안은 전년 대비 32억 7,600만원(△7.6%) 감소한 397억 7,1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국가유공자 등 노후복지지원 사업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계획(A)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국가유공자 등 노후복지지원	40,627	43,047	39,771	△3,276	△7.6
· 공무원등 인건비	37,946	39,744	35,450	△4,294	△10.8
· 재가복지지원	1,805	2,400	2,385	△15	△0.6
· 노인생활지원용품	876	903	903	-	-
· 재가복지 민간위탁	-	-	557	557	순증
· 여가활동 지원	-	-	300	300	순증
· 법률구조지원	-	-	176	176	순증

주) ‘여가활동지원’과 ‘법률구조지원’은 2024년까지 ‘기타복지지원(2160-442)’ 세부사업에 편성되었으나, 2025년 예산안부터 본 세부사업으로 통합됨.(내역사업별 편성액은 2024년과 동일)

자료: 국가보훈부

78) 세부사업: 국가유공자 등 노후복지지원(2160-441)

나. 검토의견

도서·벽지 지역 등에 대한 보훈복지서비스의 민간위탁 전환이 보훈복지의 위축 및 사각지대 확대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예산 배분의 합리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 사업은 65세 이상의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 보훈대상자의 가정에 재가보훈실무관을 파견하여 재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용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재가보훈실무관 및 사회복지사 등 공무원직근로자 인건비 비중이 계획안의 89.1%(354억 5,000만원)임.
- 사업이 본격 추진되기 시작한 2007년에는 보훈복지사 15명, 재가보훈실무관 250명이 배치되었는데, 점진적으로 인력이 증원되어 2018년 이후로는 보훈복지사 72명, 재가보훈실무관 1,349명이 사업을 수행하다가, 2023년부터는 재가보훈실무관 인력을 감축⁷⁹⁾하는 추세임.

<재가보훈실무관 업무>

- ①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제공
- ② 서비스대상자의 노화, 질병 및 장애 상태와 복지환경 등에 관해 기록 및 사회복지사에게 보고
- ③ 노인생활지원용품의 수요 파악, 전달, 실태점검
- ④ 보훈(지)청장 등의 지시사항이나 사회복지사가 수립한 서비스 계획 이행
- ⑤ 그 밖에 장관 또는 보훈(지)청장이 정한 직무 범위

79) 장기요양(보건복지부 소관) 전환 및 사망 등으로 인한 보훈재가복지대상자 감소에 따라 재가보훈실무관 인력 감축

- 재가보훈실무관 인력은 2018년 1,349명에서 2023년 1,219명, 2024년 1,036명으로 감원되었고, 2025년 계획안에는 전년 대비 150명 추가 감소한 886명을 운영할 계획이 반영됨.

<국가유공자 등 노후복지지원 사업 보훈인력 변동 현황>

구분	인원 수 변동 현황
보훈복지사	15명('07) → 30명('08) → 40명('10) → 50명('13) → 67명('15) → 70명('17) → 72명('18)
재가보훈 실무관	250명('07) → 600명('08) → 1,000명('09) → 1,100명('13) → 1,326명('15) → 1,349명('18) → 1,219명('23) → 1,036명('24) → 886명('25계획안)

자료: 국가보훈부

- 그리고 이러한 인력 감축과 연계하여,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재가복지 민간위탁’ 내역사업을 신설하여 5억 5,7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함.

- ‘재가복지 민간위탁’ 내역사업은 재가보훈실무관 배치에 곤란한 원거리, 시외지 거주 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편성됨.
- 국가보훈부는 일부 재가복지 서비스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이유에 대해, 재가보훈실무관 노동조합이 원거리 배치 지양 및 대중교통 취약지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을 지속 요구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함.

□ 그런데, 2025년 계획안에 반영된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복지사각 지대 해소라는 목적이 충실히 달성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 2025년 계획안에 반영된 재가보훈실무관(886명)의 기본급 및 제수당은 1인당 3,023만원 수준이나, 원거리 및 도서지역 업무를 대체하기 위한 전환대상 민간인력 139명에 대해서는 인력 1인당 400만원의 사업비를 책정함.

○ 인력 1인당 400만원의 사업비는 주 2회, 회당 2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하여 주당 약 8만원(시간당 약 2만원)을 지급액으로 산출하였음.

<‘재가복지 민간위탁’ 계획안 산출 단가>

구분	내용
민간위탁비용 산출 단가	40,280원(2시간) × 주2회 × 49주 + 배상책임보험료

자료: 국가보훈부

□ 거리가 멀고 교통편이 취약하여 재가보훈실무관의 복지서비스가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민간위탁 전환을 하면서, 재가보훈실무관 인력 운영 예산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으로 계획안을 책정한 것은 민간위탁 사업의 실효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재가보훈실무관의 자격 요건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 민간위탁 시에도 이와 같은 자격을 갖춘 자를 채용해야 하는데, 해당 예산이 양질의 인력을 채용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인지, 낮은 급여로 인해 부실한 서비스가 제공될 여지는 없을 것인지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

□ 따라서, 도서·벽지 지역 등에 대한 보훈복지서비스의 민간위탁 전환이 최근연도에 지속된 재가보훈실무관 인력 감축과 함께 보훈복지의 위축 및 사각지대 확대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예산 배분의 합리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